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석사학위논문

고려말-조선전기 寺院 製紙手工業 研究

제주대학교 대학원

사학과

양 주 연

2020년 8월

# 고려말-조선전기 寺院 製紙手工業 研究

지도교수 전 영 준

양 주 연

이 논문을 석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2020년 6월

양주연의 문학 석사학위 논문을 인준함

심사위원장 \_\_\_\_\_ (인)

위 원 \_\_\_\_\_ (인)

위 원 \_\_\_\_\_ (인)

제주대학교 대학원

2020년 6월

A Study on the Temple Paper Handicraft  
Manufacturing from the Late Goryeo Dynasty  
to the Early Joseon Dynasty

YANG JUYEON

(Supervised by Professor JEON, YOUNG-JOON)

A thesis submitted in partial fulfillment of the requirement  
for the degree of Master of Arts

2020년 8월

Department of History  
GRADUATE SCHOOL  
JEJU NATIONAL UNIVERSITY

## Abstract

### A Study on the Temple Paper Handicraft Manufacturing from the Late Goryeo Dynasty to the Early Joseon Dynasty

Since the beginning, Goryeo operated state-led paper handicraft manufacturing sites led by the government office and jiso (紙所, paper manufacturing sites) in response to the increasing demand of paper. However, as the national budget decreased due to the collapse of Jeonsigwa (stipend land law during the Joseon Dynasty) from the 12<sup>th</sup> century, the state-led paper handicraft manufacturing sites began to decay and became obsolete.

Meanwhile, the temple handicraft manufacturing industry originally aimed to supply necessities needed at temples, such as Buddhist implements or other daily tools. However, in the end of the Goryeo Dynasty, the industry grew based on the substantial economic capital that came from temple farms, and by absorbing experts who had left state-led manufacturing sites. Although the state-led sites could not function properly in the late Goryeo Dynasty, the demand of paper from both the government and private sectors increased. As such, temples were actively engaged in paper manufacturing to meet the demand.

The temple paper handicraft manufacturing industry, whose function and scale were expanding in the late Goryeo Dynasty, faced an era of change with the establishment of Joseon. The Joseon government confiscated the wealth and manpower of temples under the ideology of Eokbulsungyu (抑佛崇儒, controlling Buddhism and respecting Confucianism), and aimed to meet the increasing supply of paper by restoring the collapsed system of state-led handicraft manufacturing. With jojiso (造紙所, government

paper manufacturing sites) at the center, gwanyeong jiso (官營紙所, local paper manufacturing sites) was established in each local area. By assigning jijang (紙匠, paper artisans) in each gwanyeong jiso, Joseon was able to develop the Gyeongoe jijang (京外紙匠, paper artisans outside of the capital) system. In the process, some of those who worked at temples were recruited as gwangongjang (官工匠, official artisans). In addition, even after the state-led paper manufacturing industry system was fully established, the Joseon government mobilized Buddhist monks for large-scale national printing, and used temples as paper handicraft manufacturing sites. The government also took great advantages of the paper manufacturing techniques and facilities of temples by imposing paper and paper mulberry as tribute on them and mobilizing monks into gwanyeong jiso.

The temple paper manufacturing industry during the early Joseon Dynasty holds significance as it successfully inherited the traditional paper manufacture industry of Goryeo, and sufficiently met the demand of paper in the country until Gyeongguk Daejeon (經國大典, Great Code of Administration) came into effect. In addition, the temple paper manufacturing industry has great historical significance as it became the cornerstone of the factory system during the Joseon Dynasty, and had a large role in the growth of the handicraft industry.

## < 목 차 >

### Abstract

I. 서론 .....	1
1. 연구목적과 필요성 .....	1
2. 연구사 검토 및 연구방법 .....	4
II. 고려후기 관영수공업의 쇠퇴와 사원수공업의 발달 ....	11
1. 관영수공업의 쇠퇴와 紙所 해체 .....	11
2. 사원 제지수공업의 발달과 배경 .....	18
III. 고려후기 종이 수요처의 증가와 배경 .....	27
1. 국가의 종이 수요처 확대와 배경 .....	27
2. 사원의 종이 수요처 확대와 배경 .....	33
3. 민간의 종이 수요처 확대와 배경 .....	43
IV. 조선전기 사원 제지수공업의 운용 .....	48
1. 조선전기 관영 제지수공업의 정비 .....	48
2. 사원 제지수공업의 국가적 활용 .....	59
V. 결론 .....	68
참고문헌 .....	72

## < 표 목 차 >

<표 1>	고려시기 官署의 간행 서적 목록 .....	30
<표 2>	전국 사원의 불교 경전 간행 현황 .....	37
<표 3>	고려대장경 刻成年代와 經板數 .....	41
<표 4>	고려시대 개인문집 목록 .....	44
<표 5>	각 도별 都會所의 설치 현황 .....	55
<표 6>	京外工匠의 수와 비율 .....	57
<표 7>	『經國大典』의 京外紙匠 분포 .....	58
<표 8>	국가 役事に 동원된 승려 수 .....	60



# I. 서론

## 1. 연구목적과 필요성

2014년 로마에서는 '韓紙를 활용한 문화재 복원 및 보존'이라는 주제의 심포지엄이 열렸고, 오랜 기간 원형을 보존해야 하는 문화재의 특성상 복원 및 보존 처리에 한지가 적합하다는 연구가 발표되어 학계의 관심을 끌었다.<sup>1)</sup> 紙類문화재의 복원에는 대부분 일본의 和紙가 사용되고 있었는데 한지가 복원지로서 주목을 받기 시작하는 요즘, 루브르 박물관이 화지로 예정되어 있던 문화재 복원을 한지로 대체한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하겠다.<sup>2)</sup> 한지가 문화재의 복원 재료로써 세계의 관심을 끌고 있는 것은 한지의 내구성과 채도, 통풍성이 화지보다 우수하기 때문이다.<sup>3)</sup> 이와 같은 한지의 우수성은 8세기 중엽에 제작된 『무구정광대다라니경』이나 『신라백지묵서대방광불화엄경』 등이 1200여 년이 지난 지금까지 전해지는 것으로도 확인된다.

종이는 중국에서 발명된 이후 서기 105년 後漢의 채륜에 의해 그 제작 방법이 개량되었다.<sup>4)</sup> 우리나라에는 삼국시대에 그 기술이 전래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1) "문화재청", 보도/해명, 2014년 10월 15일 수정, 2017년 11월 13일 접속.

[http://www.cha.go.kr/newsBbz/selectNewsBbzList.do?sectionId=all\\_sec\\_1&mn=NS\\_01\\_02](http://www.cha.go.kr/newsBbz/selectNewsBbzList.do?sectionId=all_sec_1&mn=NS_01_02)

2) 루브르 박물관은 2017년 '바이에른의 막시밀리안(Bureau de Maximilien de Baviere)2세 책상'의 서랍을 한지를 이용하여 복원하는 데 성공하였고, 이에 앞서 2016년에 바티칸은 교황 요한 23세의 유물인 지구본을 해체하여 황변하거나 균열이 간 부분을 한지를 이용하여 복원하였다.

3) 최태호, 「한지 제조기술의 독창성」, 『2016 한-이탈리아 한지 학술 심포지엄 자료집』, 국립문화재연구소, 2016, 67쪽-70쪽.

4) 중국의 고대 종이는 1930년대~1990년대까지 여덟 차례에 걸쳐 출토되었으며 출토지는 陝西省, 甘肅省, 新疆省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다. 이 고대 종이들은 채륜이 만든 종이와 달리 종이의 제작 공정을 거치지 않고 마섬유를 압착한 형태가 대부분이었고, 용도 또한 거울이나 세숫대야가 상하로 겹쳐있을 때 그 사이에서 완충 역할을 하였던 것으로, 이것을 종이로 볼 수 있느냐 하는 학자들 간의 논쟁이 있었다. 그러나 1933년에 발굴된 서기전 49년 경에 만들어진 것으로 추정되는 종이가 叩解·漂白·煮熟 등의 종이 제작 공정을 거친 것으로 연구결과 밝혀졌으며, 1990년대에 발굴된 종이인 마방탄지(서기전 179~141 제작 추정)와 현천지(서기전 74~49 제작 추정)에 각각 그림과 글자가 새겨져 있어 서사용으로 사용된 것이 확인되었다. 이로써 채륜이 종이의 발명자인가 아닌가의 논쟁이 종식되었고, 채륜은 종이의 개발자로 자리매김하게 되었다(김철, 『한지의 이해』, 도서출판 한글, 2012, 31쪽-38쪽 참조).

정확한 전래 시기는 알 수 없고, 『일본서기』에 610년 고구려의 승려 담징이 일본에 건너가 오경을 가르치고 채색, 종이와 먹 그리고 맷돌을 전해 주었다는 기록이 있는 것으로 보아,<sup>5)</sup> 적어도 그 이전에 제지법이 전해진 것으로 보고 있다. 제지법이 우리나라에 전래된 이후 그 제조 공정은 한반도의 실정에 맞게 변화되었다. 먼저 원료를 보면 중국에서는 주로 麻나 대나무를 紙料로 사용하였다. 반면 우리나라에서는 닥나무를 사용하였고, 공정의 마지막 단계에서는 搗砧을 하여 상대적으로 높은 밀도와 배색도의 종이를 만들어냈다.<sup>6)</sup>

우리나라의 종이는 만들어진 시기에 따라 鷄林紙, 高麗紙, 朝鮮紙 등으로 불리는데 고려시대에 이르러 종이 수요의 증가와 함께 제지술이 크게 발달하였다. 고려는 국초부터 국가나 왕실에 필요한 서적을 수시로 간행하고 그 판본들을 국가적 차원에서 관리, 활용하고 있었다. 고려시대의 서적 간행 및 보유 수준은 宋 철종이 송에서 없어진 백여 종의 서적을 고려에서 구해보라고 한 기록에서도 알 수 있다.<sup>7)</sup> 또한 불교의 발달로 사원에서는 경전의 간행이 활발하게 이루어졌고, 문인과 학자들 간에는 개인문집의 간행이 성행하였다. 이와 같은 종이의 수요에 대비하여 고려는 국초부터 관청을 중심으로 제지수공업장을 운영하고 있었다. 관영 제지수공업은 관청에 소속되어 田柴科와 工匠別賜를 받는 감독관인 紙匠의 관리 하에 일반 수공업자들이 賦役의 형태로 근무하며 종이를 생산하는 체제로 운영되었다. 그러던 것이 12세기 이후 전시과의 붕괴 등으로 국가 재정이 악화되자 쇠퇴하기 시작하였다. 또 하나의 관영 제지수공업장이었던 紙所는 고려전기에 종이 생산을 활발하게 주도하였으나, 종이 수요의 증가가 과도한 공납으로 이어지면서 급속하게 해체되기 시작하였다.

한편, 사원수공업은 본래 佛具類나 사원 내 생활 용구 등 자체 내의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운영되었다. 그러던 것이 고려후기에는 사원전을 기반으로 한 막대

5) 『일본서기』 권22, 추고 18년, “十八年春三月 高麗王貢上僧曇徵·法定 曇徵 知五經 且能作彩色及紙墨 并造礪磑 蓋造礪磑.”

6) 한지는 닥나무의 장섬유를 紙料로 사용하기 때문에 지질이 평활하지 못하다는 문제점이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종이를 뜨고 건조한 후에 홍두깨나 디딜방아로 끌고루 두드려 주는 작업을 하는데, 이를 도침이라 한다. 도침은 종이의 밀도를 높여 조직을 치밀하게 하고 滲墨 특성을 좋게 하며 광택을 더하여 한지의 품질을 높여준다(정선화, 「전통한지의 제조 기술 및 우수성에 관한 논고」, 『문화재』 48, 국립문화재연구소, 2015, 102쪽-110쪽).

7) 『고려사』 권9, 세가9, 선종 8년 6월, ‘李資義等還自宋 奏云 “帝聞我國書籍多好本 命館伴 書所求書目錄 授之乃曰 雖有卷第不足者 亦須傳寫附來”’

한 경제력과 관영 수공업장에서 이탈한 전문 인력의 흡수를 바탕으로 그 규모가 확대되었다. 사원은 여러 수공업 품목 중에서도 특히 종이에 큰 관심을 가졌는데, 종이를 생산하기에 적합한 자연 조건을 갖추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사원이 경전 간행 및 印經 등에 쓰일 막대한 양의 종이를 필요로 하는 최대 수요처였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사원은 활발히 종이를 생산하여 자체 내의 수요를 해결하는 한편, 관영수공업을 대신하여 국가와 민간의 종이 수요를 감당하였다.

고려 말 그 기능과 규모가 확대되어 가던 사원의 제지수공업은 조선의 건국과 함께 새로운 변화의 시기를 맞게 되었다. 조선은 抑佛崇儒의 국가 이념과 함께 사원의 재산과 인력을 몰수하는 한편, 고려 말 와해된 관영수공업 체제를 복구하여 늘어나는 종이의 수요에 대비하고자 하였다. 중앙에는 造紙所를, 각 군현에는 官營紙所를 두고 이곳에 지장들을 배치하여 京外紙匠 體制를 확립하였고, 倭楮를 도입하고 官楮田을 운영하는 등 종이 원료의 생산에도 직접 관여하며 원활한 종이의 공급을 위해 노력하였다. 이처럼 국가 주도의 관영수공업이 운영되는 가운데 사원의 제지수공업도 지속되고 있었다. 조선전기 수공업제의 운영이 국가 주도로 이루어져 사원 제지수공업의 존재가 크게 드러나지는 않지만, 사원은 官紙匠의 형태로 국가의 관영 제지체제에 소속되거나 또는 사원 자체의 제지수공업을 통하여 종이를 계속 생산해내고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이와 같은 제지수공업장의 변화에 주목하면서 전통지의 계승 과정에 있어 빠질 수 없는 주체인 사원의 제지활동을 검토하고자 한다. 국가의 보호와 지원 속에서 성장하던 사원이 고려후기에 어떻게 제지수공업의 주체로 부상하게 되었는지를 경제적 배경과 인적 자원의 유입을 중심으로 그 요인을 살펴볼 것이다. 이 과정에서 관영수공업의 쇠퇴가 사원 제지수공업의 확대와 연결되는 직접적인 원인이 무엇이었는지를 확인하고자 한다.

또한 역불승유가 국가 이념이었던 조선 초, 관찬 사서에서는 드러나지 않는 조선전기 사원의 제지활동을 검토하겠다. 조선전기의 사원은 자체 내의 수요나 영리를 목적으로 제지 활동을 하였으며 국가의 강제에 의해 종이를 생산하지 않았다는 기존의 연구에 반하여, 국가가 사원의 제지능력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였음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고자 한다. 국가가 사원의 제지 능력을 활용할 수 있었던 것은 사원이 고려시대에 이어 조선전기에도 뛰어난 제지술을 보유하고 있었기 때문이

며, 또한 종이 생산 능력도 갖추고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 따라서 국가의 사원 활용 사례들을 검토하는 것은 곧 조선전기 사원의 제지 능력을 검토하는 과정이 될 것이며, 이와 같은 검토를 통해 그간의 연구에서 조선전기에는 사원의 제지수공업이 다소 미약하게 이루어졌다고 여겨지는 부분을 보완하고자 한다.

## 2. 연구사 검토 및 연구방법

상당한 양이 축적되어 있는 선행 연구사를 고려와 조선으로 시기를 나누어 각각의 수공업 형태를 살펴보겠다. 먼저, 고려의 수공업 형태를 관영수공업과 사원수공업의 둘로 나누어 보겠다.

첫째, 고려시기 관영수공업에 관한 연구이다. 고려시대 관영수공업에 대해서는 많은 연구가 이루어졌다. 관영수공업의 정비 과정과 운영체계, 인적 구성에 대한 검토<sup>8)</sup>와 함께 개별 所에 대한 연구<sup>9)</sup>도 이루어졌다. 고려 초 집권적 지배체제를 수립하는 과정에서 고려의 중앙관제 및 수공업 관청들이 정비되었는데, 총 13개의 수공업 관청에 97명의 상층 수공업자들이 소속되어 각 해당 수공업장의 생산을 기술적으로 지도·통제하고 있었으며, 그들 밑에는 일정한 인원의 수공업자들이 番次制로 근무하고 있었음이 검토되었다. 지방 관청의 제지수공업과 관련해서는 각 지방 군현에 紙田과 紙位田을 지급<sup>10)</sup>한 사실에서 그 존재를 유추해 볼 수

- 
- 8) 홍희유, 『조선중세 수공업사 연구』, 지양사, 1989[복간]; 서성호, 「고려전기 지배체제와 工匠」, 『한국사론』 27, 서울대 국사학과, 1992; 「고려전기 수공업연구」, 서울대 박사학위논문, 1997; 김난옥, 「고려시대 工匠의 신분」, 『사학연구』 58-59, 한국사학회, 1999; 송성안, 「고려시기 관청수공업의 존재양상과 사원수공업」, 『경대사론』 11, 경남대사학회, 1999(a); 「고려후기의 사원수공업 연구」, 영남대 박사학위논문, 1999(b); 서명희, 「수공업」, 『한국사』 14, 국사편찬위원회, 2003; 김동철, 「수공업과 염업」, 『한국사』 19, 국사편찬위원회, 2003.
- 9) 김현영, 「고려시기 所에 대한 재검토」, 『한국사론』 15, 서울대 국사학과, 1986; 박종기, 『고려시대 부곡제 연구』, 서울대출판부, 1990; 서성호, 「고려 수공업소의 몇 가지 문제에 대한 검토」, 『한국사론』 41-42, 서울대 국사학과, 1992; 송성안, 「고려전기 자기수공업에 관한 연구-자기소를 중심으로」, 영남대 석사학위논문, 1994; 이정신, 「고려시대 종이의 생산실태와 지소」, 『한국사학보』 5, 고려사학회, 1998(a); 「고려시대의 어업 실태와 어량소」, 『한국사학보』 3-4, 고려사학회, 1998(b); 「고려시대 차 생산과 차소」, 『한국중세사연구』 6, 한국중세사학회, 1999; 『고려시대 특수 행정구역 소 연구』, 해안, 2013; 홍승기, 『고려사회사 연구』, 일조각, 2001.
- 10) 고려시대에는 각 주·군·현들과 향·부곡 및 역들에 지전이 최고 15결부터 최하 2결까지 배정되어 있었으며, 성황당이나 지방 향교들에 지장위전, 묵척위전 등이 설정되어 있었다. 서경 유수관에는 유수관과 6조, 승록사 등에 최고 272결부터 최하 15결까지 지위전이 배정되어 있었다(『고려사』 권78, 식화1, 전제, 공해전시).

있는데, 지전과 지위전의 용도에 대한 학자들 간의 해석에 따라 의견이 둘로 나뉜다. 먼저, 지방 제지수공업이 존재하지 않았다는 견해이다.<sup>11)</sup> 지전은 관청에 소속된 紙匠에게 주는 토지가 아니라 거기서 나오는 소출로 종이, 붓, 먹 등의 문구류를 구입하게 하는 용도였으며, 지위전 또한 종이를 만들어 공물로 납부하는 家戶에 지급한 토지였다는 것이다. 또 지방관청에서 제지수공업을 운영하지 않은 가장 근본적인 이유로 국가의 중앙집권력이 전국의 군현에 미치지 못하고 있었음을 들고 있다. 이에 반하여 지전의 존재를 통해 지방관청에 제지수공업장이 있었다고 보는 견해가 있다.<sup>12)</sup> 지전과 지위전은 안정적인 종이 생산과 확보를 위해 관청수공업장에 소속된 지장들에게 지급한 토지라는 것이다. 두 가지 견해의 연구자들을 살펴보면 지방관청의 제지수공업장은 존재하지 않았거나 또는 존재하였더라도 종이의 생산량은 미미했을 것으로 보인다.

所수공업과 관련해서는 주로 소의 성립, 소의 규모와 분포, 해체 요인 등에 대한 연구들이 이루어졌다. 신라시기 지방 호족들이 가지고 있던 개별 수공업장인 成이 소로 재편되었으며, 소의 해체 요인을 수탈의 과중, 상품 유통의 발달, 군현제 개편, 권력기구와 사원에 의한 소의 침탈 등으로 보고 있다.

이정신은 『세종실록지리지』의 기록을 바탕으로 전국에 닳나무가 식생하는 지역과 종이를 공급하던 지역을 분석하여 고려시대 지소의 위치를 추적하였다.<sup>13)</sup>

11) 서성호는 지방 관부의 필요 물품은 관부의 재정으로 구입하거나, 所에 대한 수취물 또는 민간 수공업자들에 대한 수취물로 충당하였다고 보았으며, 관부의 재정으로 물품을 구입하는 예로 지전의 소출에 의한 문구류의 구입을 들고 있다(앞의 논문, 1992). 서명희는 지전은 관청의 사무용품 구입비이며, 지방관청이 자체의 수요를 위한 수공업장을 조직, 운영하지 않은 이유로 세가지를 들고 있다. 첫째는 지방관청들이 필요한 물품을 백성들로부터 조·용·조의 형태로 거두어들이거나 강제 징수할 수 있었으며, 둘째는 각 지방에 수공업 생산을 전문적으로 하는 수공업 소들이 설치되어 있어 거기에서 생산되는 생산물의 일부를 징수하여 수요에 충당할 수 있었기 때문이며,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국가의 중앙 집권력이 전국의 여러 군현에까지 침투되지 못하였기 때문이라고 보고 있다(앞의 책, 2003). 홍희유는 각 군현에 배당된 지전은 지방관청에서 소요되는 문구류의 구입비용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었으며 제지수공업의 관리·운영과는 직접적으로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하였다. 또한 지위전은 수공업자들에게 땅을 주어 관청에 집결시켜 수공업장을 운용한 것이 아니며, 종이를 생산하여 공물로 납부할 의무를 지게 한 것이라고 하였다(앞의 책, 1989). 박종기는 지전의 소출로 종이, 먹 등 사무용품을 구입하였으며, 지전이 관청에 지급된 사실은 공납제 방식만으로는 공급이 수요를 따르지 못해 민간에서 생산된 종이를 구입하는 방식으로 수요를 충당한 사정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하였다(『고려시대 종이 생산과 소 생산체제』, 『한국학논총』 35, 국민대 한국학연구소, 2011). 이정신은 지전의 소출로 원료를 구입하여 장인에게 제공하여 만들게 하거나, 물품의 구입비용으로 사용했다고 보고 있다(『고려시대의 특수 행정구역 소 연구』, 해안, 2013).

12) 안병우, 『고려전기의 재정구조』, 서울대출판부, 2002; 송성안, 「고려시대 사원 제지수공업과 그 운영」, 『석당논총』 65, 동아대학교 석당전통문화연구원, 2016.

13) 이정신, 앞의 논문, 1998(a).



연구에 따르면 임실현의 양등량 지소, 하양현의 안심소, 의령현의 저지소, 함양현의 마천소, 전주부의 두모촌소, 남원의 소를 지소로 추정하고 있다. 한편, 송성안은 지소의 해체 이유를 생산력이나 기술력의 문제가 아니라 종이의 수요가 급증하여 공급이 수요를 따라갈 수 없었기 때문이라고 하며, 지소의 해체 이유로 종이 수요의 증가를 강조하였다.<sup>14)</sup>

둘째, 고려시기 사원수공업에 대한 연구이다. 사원수공업과 관련해서는 사원의 경제력 확대와 인적 기반, 관영수공업과 사원수공업의 연관성에 대한 연구들이 이루어졌다.<sup>15)</sup> 사원은 전시과가 붕괴된 고려후기에 이르러 개간·탈점 등의 방법으로 대토지를 소유하였고, 이를 기반으로 한 고리대 및 상업행위를 통해 막대한 경제력을 확보하였는데, 이는 사원수공업 발달의 토대가 되었다. 사원의 인적 기반과 관련해서는 국가의 公役이나 사원 내의 수공업을 담당하는 工匠僧들의 역할과 활동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들이 이루어졌으며, 이들의 조직화된 기술력이 고려 말 관영수공업의 공백을 메우는 역할을 하였다고 보았다.<sup>16)</sup> 한편 송성안은 관영수공업의 쇠퇴와 사원수공업과의 연관성을 밝히고자 하였고, 그 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鑄金匠 韓仲紱의 활동 기록을 검토하였다. 연구에 따르면 한중서는 중앙관청에 소속된 공장으로서, 1214년부터 1252년까지 38년간 靑林寺, 福泉寺 등의 飯子, 銅鐘 등 불구류 제작에 다섯 차례 참여하고 있는데, 관영수공업이 쇠퇴하고 생활이 어려워지자 '급료'를 받고 사원의 불구류 제작에 참여하고 있었던 것이며, 이를 근거로 관속 공장들이 사원으로 흡수되었다고 보고 있다.<sup>17)</sup> 그러나 고려시대 사원은 왕명에 의해 각종 법회나 불교행사가 설행되던 곳으로, 관속 공장들이 불사에 사용될 사원의 불구류 제작에 이미 참여하고 있었으며,<sup>18)</sup> 한중서

14) 송성안, 앞의 논문, 2016.

15) 전영준, 「고려시대 供役僧 연구」, 동국대 박사학위논문, 2005(a); 「고려시대 사원불사와 조력자」, 『역사민속학』 20, 민속원, 2005(b); 「고려후기 供役僧과 사원의 造營組織」, 『한국사학보』 20, 고려사학회, 2005(c); 「고려 江都時代 사원의 기능과 역할」, 『역사민속학』 32, 한국역사민속학회, 2010; 한기문, 「고려시대 사원의 造營基盤과 願堂의 존재양상」, 경북대 박사학위 논문, 1994; 「고려시대 사원의 관리조직과 소속승의 구성」, 『한국중세사연구』 2, 한국중세사학회, 1995; 「고려사원의 구조와 기능」, 민족사, 1998; 송성안, 「고려시기 관청수공업의 존재양상과 사원수공업」, 『경대사론』 11, 경남대 사학회, 1999(a); 「고려후기의 사원수공업 연구」, 영남대 박사학위논문, 1999(b); 「고려후기 사원수공업의 성격」, 『경대사론』 12-13, 경남대 사학회, 2002; 「고려시대 사원 제지수공업과 그 운영」, 『석당논총』 65, 동아대부설 석당전통문화연구원, 2016; 이병희, 「고려후기 사원경제의 연구」, 서울대 박사학위논문, 1991; 「고려시기 사원경제 연구」, 경인문화사, 2009; 최영호, 「고려시대 사원수공업의 발전 기반과 그 운영」, 『국사관논총』 95, 국사편찬위원회, 2001.

16) 전영준, 앞의 논문, 2005(a); 한기문, 앞의 논문, 1995.

17) 송성안, 앞의 논문, 1999(a).

는 사원의 불구류 제작에 참여하는 기간 동안 관청을 이탈하지 않고 오히려 승진을 하고 있었다.<sup>19)</sup> 이와 같은 사실을 볼 때 한중서는 관청수공업이 쇠퇴하는 가운데서도 존재했던 특별한 상층 공장의 사례로 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그의 사원 불구류 제작은 관청수공업의 쇠퇴로 인한 것이라기보다 이전부터 유지되어 오던 관청과 사원과의 관계로 보는 것이 더 적절할 것이라 생각된다.

다음은 조선전기 제지수공업에 대한 연구이다.

조선전기의 제지수공업과 관련해서는 관영수공업 중심으로 연구가 이루어져 있다.<sup>20)</sup> 조선 초 국가체제의 확립과 함께 京外 제지수공업장에 대한 정비가 이루어지는데 造紙所와 都會所, 官營紙所가 그것이다. 연구들은 대부분 조지소와 관영지소의 설립 과정이나 그 기능에 대한 것들이 이루어져 있다. 관영수공업 관련 연구자들의 검토를 통해 본고는 국가가 관제지 체제를 정비하는 과정에서 이전 시기부터 축적되어 온 사원의 제지 기술과 인적 자원을 활용하였을 것이라고 보고, 양자간의 연관성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이혜옥은 태종대에 혁파된 8만의 사원노비들이 관공장으로 편성되었고, 노비층과 함께 상당수의 승려들도 공장으로 충원되었다고 하였다.<sup>21)</sup> 또, 송성안은 고려 말 사원노비들 중에는 수공업 생산에 종사하는 자들이 상당히 많았으며, 이들의 수공업 기술을 활용하기 위해 선초에 국가가 사원노비들을 관공장으로 동원한 것이라고 보았다.<sup>22)</sup>

사원의 제지수공업과 관련해서는 주로 조선후기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져 있고, 전기에 대한 연구는 많지 않다. 조선전기 사원 제지수공업에 대한 연구들은 사원의 제지 생산이 미약하였고, 그 용도는 사원 자체의 수요나 사원의 유지를 위한 영리 활동 정도였으며 국가의 강제에 의한 생산은 없었던 것으로 보고 있다.<sup>24)</sup>

18) 전영준, 앞의 논문, 2005(b), 69쪽 참조.

19) 匠에서 大匠으로 승진하고 있으며, 공장의 유품판 진출이 법제적으로 금지된 상황에서 별장동정이라는 유품직도 갖고 있었다.

20) 김삼기, 「15-16세기 관영제지수공업 연구」, 공주대 석사학위논문, 1998; 「조선전기 종이 공납제 연구」, 『역사민속학』 15, 한국역사민속학회, 2002; 한정수, 「조선전기 제지수공업의 생산체제」, 『역사와 현실』 33, 한국역사연구회, 1999; 이혜옥, 「조선전기 수공업체제의 정비」, 『역사와 현실』 33, 한국역사연구회, 1999; 전영준, 「조선전기 관찬지리지로 본 楮·紙 생산지의 변화와 사찰 제지」, 『지방사와 지방문화』 14, 역사문화학회, 2011; 「조선 전기 제주지역의 제지수공업 존재 확인을 위한 試論」, 『인문학연구』 12, 제주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2012; 하종목, 「제지업」, 『신원한국사』 24, 국사편찬위원회, 2002; 최양임, 「조선시대 한지 제조에 대한 고찰」, 원광대 석사학위논문, 2002.

21) 이혜옥, 앞의 논문, 1999.

22) 송성안, 앞의 논문, 1999(b).

24) 김순규, 「조선후기 사찰紙役의 변화」, 『청람사학』 3, 한국교원대 청람사학회, 2000; 김문경, 「음

김순규는 조선전기에도 사원의 제지업이 존재하고 있었다는 의견을 제시하면서, 사원이 제지 능력을 갖추고 있었기 때문에 후기에 관영 제지수공업이 무너지자 紙役이 부과될 수 있었다고 보았다.<sup>25)</sup> 김인규는 16세기 초에 쓰인 『默齋日記』의 내용 중 사원의 제지활동 기록을 검토하여 조선전기 사원 제지수공업의 존재를 확인하였고, 사대부와 관청 등의 요구로 승려들의 제지 활동이 이루어졌음을 검토하였다.<sup>26)</sup> 전영준은 사원의 제지 활동이 자체 수요나 영리 활동을 위해 이루어 졌다는 기존의 연구들과 달리 조선전기에도 官收用으로 활용되었을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세종실록지리지』와 『신증동국여지승람』에 나타나는 楮·紙 생산지의 변화를 검토하고, 닥과 종이의 생산지가 변화(감소)한 것은 종이 방납의 폐단으로 인한 民戶의 생산지 이탈과 정부 시책의 오류가 원인이 되었다고 하였다. 이와 같이 닥과 종이의 공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에서 국가는 사원을 관수용 종이의 공급처로 인식하고 있었다고 하였다.<sup>27)</sup>

이상 선행 연구의 검토를 통해 고려시기 관영수공업의 성립과 운영 체계, 인력 구성 및 쇠퇴의 원인 등을 파악할 수 있었다. 또한 사원수공업의 발달이 사원전을 기반으로 한 경제력의 확대와 12세기 이후 증가한 유망민들의 흡수를 통한 인적 자원의 확보에 있었음을 알 수 있었다. 조선전기의 제지수공업과 관련해서는, 조지소와 관영지소의 이원적 관제지체제가 정비되는 과정에서 사원의 인력이 지장으로 배속되었으며, 사원 내에서의 제지수공업 또한 이전 시기에 이어 계속 되고 있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사원의 제지수공업에 대한 연구는 고려후기와 조선후기에 집중되어 있고 조선전기에 대해서는 연구가 매우 적어, 고려후기에 확대된 사원의 제지수공업이 조선의 건국과 함께 그 역할과 기능이 상실되거나 미미해진 것처럼 여겨진다.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조선전기의 사원제지수공업의 존재는 김순규의 연구에서 제시되고 있는데, 그 이전의 연구에서는 조선전기 사원의 제지수공업은 거

지로 본 조선후기 사찰 제지의 실상-삼남지방을 중심으로, 동국대 석사학위논문, 2003; 전영준, 「<龍潭寺紙役變通節目>으로 본 안동지역의 寺刹 製紙」, 『역사민속학』 42, 한국역사민속학회, 2013.

25) 김순규, 앞의 논문, 2000.

26) 김인규, 「조선 명종대 성주지역 사찰의 제지활동」, 『한국전통문화연구』 1, 한국전통문화대학교 한국문화연구소, 2003.

27) 전영준, 앞의 논문, 2011.



의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되었다. 이와 같이 사원제지수공업에 대한 연구가 미미했던 것은 선초 강력한 억불책으로 인해 사원에 대한 기록이 사료에 거의 나타나지 않고, 또 관영제지수공업 체제가 잘 정비되어 있어 사원이 덜 중요하게 여겨졌기 때문일 것이다.

본고는 이와 같은 검토 내용을 바탕으로, 오랜 기간 꾸준히 종이를 생산하며 제지술을 축적하고 제지 전승의 주체 역할을 하였던 사원의 제지수공업 실태를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고려후기에 사원의 제지수공업이 발달하게 된 과정을 살펴보고, 불경의 간행이나 寫經 등 자체 내의 수요를 위해 종이를 생산하던 사원이 어떻게 수공업의 규모와 기능을 확대하고 종이 생산의 주체로 부상하게 되었는지를 살펴볼 것이다. 다음으로 왕조가 교체된 후 사원이 통폐합되고 인력이 몰수되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사원의 제지 활동은 단절없이 계속되었으며, 국가가 이러한 사원의 제지 능력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자 하였음을 검토하겠다.

II장에서는 먼저 고려후기 관영수공업장의 변화 양상과 사원수공업의 발달 요인에 대해 살펴볼 것이다. 선행연구와 함께 『고려사』, 『고려사절요』, 금석문 등의 기록을 검토하여 관영 제지수공업장의 존재 형태와 쇠퇴 원인을 살펴보고, 관영수공업의 쇠퇴와 함께 사원이 어떻게 수공업적 기능과 규모를 확대해 나갔는지를 경제적 요인과 인적 요인으로 나누어 검토하도록 하겠다.

III장에서는 고려후기 종이 수요의 규모를 국가·사원·민간의 세 부문으로 나누어 살펴볼 것이다. 고려후기 관영수공업이 해체된 상황에서 종이의 수요는 오히려 증가하였고, 국가는 사원에 의존하여 그 수요를 해결할 수밖에 없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종이 수요의 규모를 살펴보는 것은 고려후기 사원 제지수공업의 기술력 또는 생산력을 가늠해보는 일이 될 것이다.

IV장에서는 조선전기 사원의 제지활동과 국가의 사원 활용 실태를 살펴보고자 하겠다. 먼저 『경국대전』 체제를 완성하는 동안 국가가 필요로 하였던 다양한 분야의 수공업 중 토목, 축성, 기와의 제작 등 사원에서 특화되었던 분야들을 국가가 어떻게 활용하고 있었는지를 살펴보고, 건국 후 수공업 체제를 완비하는 과정에서 고려 말 그 기능과 규모가 확대되었던 사원의 수공업적 능력을 국가가 활용하고자함은 당연한 일이었을 것이다. 다음으로 『경국대전』 공장조의 기록을 통해 관영 제지수공업 체제의 정비 과정을 살펴보고, 국가의 제지체제 운영에 사

원의 인력이 어떻게 활용되고 있었는지를 알아볼 것이다. 이와 같이 고려후기에  
서 조선전기로 이어지는 사원수공업의 전승 또는 활용 과정을 살펴봄으로써 그  
간 직접적인 기록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도외시되었던 사원 제지수공업의  
존재를 명확히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조선왕조실록』에 나타나는 紙匠僧들의 동원 기록과 이문건의 『목재일  
기』에 보이는 사원의 제지활동을 검토하여 조선전기에도 사원에서 제지수공업이  
이루어지고 있었음을 재확인하고, 국가가 다양한 형태로 사원의 제지 능력을 활  
용하고 있었음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 II. 고려 후기 관영수공업의 쇠퇴와 사원수공업의 발달

### 1. 관영수공업의 쇠퇴와 紙所 해체

#### 1) 관영수공업의 쇠퇴

고려시대 관영수공업은 중앙과 지방의 관청이 수공업장을 설치하고 工匠을 징발하여 제품을 만드는 체제로 운영되었고,<sup>28)</sup> 크게 중앙 관청수공업과 지방 관청수공업 둘로 나뉜다. 관영수공업의 관리와 운영을 담당한 최고기관은 工曹(工部)였다. 그 밑으로 직능에 따라 繕工寺, 軍器寺, 供造署, 掌冶署, 都校署, 掌服署, 都染署, 雜織署, 掖庭局, 奉車署, 大府寺, 內弓箭庫, 台岳管絃坊, 太僕寺의 14개의 수공업 관청들이 있었다.<sup>29)</sup> 이들 중 공조서(중상서)는 국왕을 비롯한 귀족들의 옷에서부터 각종 일용 사치품들을 맡아서 제조하는 기관으로<sup>30)</sup> 왕실과 중앙 관청에 필요한 종이 생산을 담당하였다.

1076년(문종 30)에는 여러 관청[衙門]의 工匠에 대한 別賜를 정하였는데, 중상서에 소속되어 종이 생산을 담당하던 紙匠의 경우를 보면 다음과 같다.

- ① 문종 30년에 여러 衙門의 工匠에 대한 別賜를 정하였다. 중상서 … 벼[稻] 12석 花匠 校尉 1명, 紙匠 行首副尉 1명.<sup>31)</sup>

사료 ①에서 중상서의 지장은 행수부위의 지위였으며 벼 12석을 공장별사로 받고 있다.<sup>32)</sup> 또한 이들은 무산계의 직급이 있는 경우 무산계 전시 17결의 수조

28) 홍희유, 앞의 책, 1989, 87쪽.

29) 『고려사』 권80, 식화3, 녹봉, 諸衙門工匠別賜.

30) 서명희, 앞의 책, 2003, 428쪽.

31) 『고려사』 권80, 식화3, 녹봉, “諸衙門工匠別賜, 文宗三十年 定. 中尙署 … 稻 十二石. 花匠校尉一, 紙匠 行首副尉一.”

32) 『고려사』 식화지 諸衙門工匠別賜條에 의하면 중앙의 妃主·종실·백관들과 함께 지방의 동경·서경·남경과 주·부·군·현의 관원들이 다 녹봉을 받지 않는 자가 없었으며, 雜職·胥吏·工匠에 이르기까지 무릇 직무가 있는 자라면 그들에게도 역시 정상적으로 주는 녹봉이 있어서 그들이 농사를

권도 함께 받고 있었다.<sup>33)</sup> 공장별사를 받는 공장들은 1년에 300일 이상 관청수공업에 복무하는 長番匠이었으며,<sup>34)</sup> 그들의 감독 하에 工匠案에 등록된 일반 수공업자들이 番次制로 관청에 근무하며 종이를 생산하고 있었다.<sup>35)</sup> 중앙관청의 종이 생산과 관련하여 다음의 사료를 더 살펴보겠다.

② 현종 14년에 식목도감에서 토의하여 첨사부에 공해전 15결과 供紙戶 1호를 주기로 하였다.<sup>36)</sup>

첨사부는 동궁과 관련된 업무를 보던 기관으로서 여기에 공해전 15결과 공지호 1호를 별도로 지급하고 있다. 즉 중앙 관청에서 조달한 종이가 부족할 때 별도로 공지호를 지정한 사례이며, 여기서 공지호는 종이를 만들어 공납하는 지장을 말한다.<sup>37)</sup> 동궁관인 첨사부에 공지호 1호가 따로 책정된 것은 중상서의 생산량이 동궁에 소용되는 종이마저 조달할 수 없을 정도로 그 수량이 많지 않았기 때문인 듯하고, 이를 통해 중앙관청의 제지수공업은 그리 활발히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sup>38)</sup>

지방 관청의 제지수공업과 관련해서는 각 지방 군현에 紙田과 紙位田을 지급<sup>39)</sup>

지에서 얻을 수 있는 것만큼 보장하여 주었는데 이를 別賜라고 하였다. 그 중 14개의 중앙 관청에 소속된 상층 수공업자들이 받는 별사의 액수는 벼는 최고 20섬에서 최하 6섬까지, 쌀은 최고 15섬부터 최하 7섬까지였다(『고려사』 권80, 식화3, 녹봉, 諸衙門工匠別賜).

33) 『고려사』 권78, 식화1, 전제, 전시과, “文宗三十年 更定兩班田柴科 … 田十七結 大匠, 副匠, 雜匠人, 御前部樂件樂人, 地理業僧人.” 서명희는(앞의 책, 2003, 426쪽) 사료의 대장·부장은 수공업자의 상층이었으며, 잡장인은 일반수공업자라고 하였다. 문종 30년에 제정된 전시과에 의하면 대장·부장·잡장인에게는 무산계를 받은 경우에 17결의 토지에 대한 수조권이 주어졌다.

34) 『고려사』 권80, 식화3, 녹봉, “諸衙門工匠別賜, 並以役三百日以上者, 給之.”

35) 고려시대 관청수공업의 인적 구성에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한 것은 양인 및 노비 신분의 수공업자들과 소 출신의 수공업자들이었다. 지방에 존재하였던 양인 출신의 수공업자는 말할 것도 없고 所 출신의 수공업자들도 관청 수공업장에 징발되었고, 노비 신분의 수공업자와 일부 고려에 귀화한 수공업자들도 있었다. 노비 신분 수공업자들에 대해서 살펴보면, 원래의 노비들과 함께 전쟁 포로로서 노비가 된 수공업자들이 많았다. 신라의 반항세력이나 후백제와의 전쟁 과정에서 붙잡은 포로들을 노비로 만들어 관청수공업의 수공업자로 만들었으며, 통합전쟁 과정에서 지방세력들이 소유하고 있던 노비신분 수공업자들이 고려 관청수공업장의 구성원이 되기도 하였다. 국가는 이들을 工匠案과 都官에 등록한 후 그들 중 상층수공업자들을 각 수공업장에 전속시켜 복무하게 하였으며, 대부분의 일반 수공업자들의 경우에는 수시로 징발하여 복무하게 하였다(서명희, 앞의 책, 2003, 425쪽-426쪽; 홍희유, 앞의 책, 1989, 99쪽-100쪽).

36) 『고려사』 권78, 식화1, 전제, 공해전시, “顯宗十四年六月 式目都監議定, 詹事府公廩田, 給十五結, 供紙一戶.”

37) 송성안, 앞의 논문, 2016, 155쪽.

38) 이정신은 중상서는 왕실에서 소용되는 종이만을 생산하였으며, 이마저도 제대로 충당하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하였다(이정신, 앞의 논문, 1998, 250쪽).

39) 고려시대에는 각 주·군·현들과 향·부곡 및 역들에 지전이 최고 15결부터 최하 2결까지 배

한 사실에서 그 존재를 알 수 있다. 지전이나 지위전을 관청에 소속된 지장들에게 지급한 토지라고 보아 지방관청에도 제지수공업장이 존재했다고 보는 견해가 있다.<sup>40)</sup> 또 지전을 거기에서 나온 소출로 필요한 종이와 먹을 구입했던 문구 구입비로 보아 지방관청에는 제지수공업장이 존재하지 않았다고 보기도 한다.<sup>41)</sup> 당시 지방관청에서 제지수공업장을 직접 운영하지 않은 이유는 민간수공업자들과 지소로부터 종이를 공물로 수취할 수 있었고, 공물로는 부족했던 부분을 민간으로부터 비용을 지불하여 구입할 수 있었기 때문이라고 보고 있다. 또한 가장 근본적인 이유로 국가의 중앙 집권력이 전국의 여러 군현에까지 침투되지 못하고 있었음을 들고 있다. 정확한 자료가 없어 지방에 제지수공업장이 존재하였는지의 여부를 알 수는 없지만 각 군현과 서경에 지전과 지위전이 지급된 것으로 보아 지방에서도 종이의 수요가 많았음을 알 수 있다.

고려사회는 12세기에 이르러 사회·경제적으로 큰 변화를 맞이하게 되었다. 사원을 비롯한 지배층의 탈점에 의한 대토지 소유가 이루어지면서 전시과 제도가 붕괴되기 시작한 것이다. 이런 사정은 대몽항쟁기를 거치고 원간섭기에 접어들면서 더욱 심화되었다. 토지 겸병에 의한 수조지의 감소와 백성들의 유망에 따른 戶口의 감소로 국가의 재정은 악화되었으며 이는 자연히 職役者에 대한 녹봉의 부족으로 이어졌다.<sup>42)</sup> 따라서 공장들에게 토지를 비롯한 工匠別賜의 정상적인 지급은 현실적으로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었고, 역에 대한 대가를 받을 수 없었던 공장들이 소속된 관청에서 이탈함으로써 관청수공업은 전반적으로 쇠퇴할 수밖에 없었다. 다음의 두 사료는 중앙과 지방 관청수공업의 쇠퇴를 보여준다.

- ③ (권단이) 東京留守로 있을 때 오래된 창고가 하나 있었는데 백성들로부터 綾羅를 거두어 저장하는 곳이 있어 甲坊이라고 불렀다. 공납으로 바치는 양을 채우고 남는 것이 매우 많았으므로 모두 留守가 되면 사사로이 소유하고자 하였다. 권단은

당되어 있었으며 성황당이나 지방 향교들에 지장위전, 목척위전 등이 설정되어 있었다. 서경 유수관에는 유수관과 6조, 승록사 등에 최고 272결부터 최하 15결까지 지위전이 배정되어 있었다(『고려사』 권78, 식화1, 전제, 공해전시).

- 40) 송성안, 앞의 논문, 2016, 156쪽-157쪽, 175쪽-176쪽; 안병우, 앞의 책, 2002, 292쪽-293쪽.  
 41) 서성호, 앞의 논문, 1992, 122쪽-123쪽; 서명희, 앞의 책, 2003, 422쪽; 홍희유, 앞의 책, 1989, 97쪽; 박종기, 앞의 논문, 2011, 65쪽-66쪽; 이정신, 앞의 책, 2013, 52쪽.  
 42) 『고려사』 권78, 식화1, 전제, 녹과전, 원종 12년 2월, ‘元宗十二年二月 都兵馬使言, “近因兵興, 倉庫虛竭, 百官祿俸不給, 無以勸士, 請於京畿八縣隨品, 給祿科田.” 時, 諸王及左右嬖寵, 廣占腴田, 多方沮毀, 王頗惑之, 右承宣許珙等屢言之, 王勉從之.’

갑방을 철폐하고 1년간 거두어들인 것으로 3년간의 공납을 지불하였다.<sup>43)</sup>

- ④ 中贊 洪子藩이 便民의 일을 조목별로 올리기를, “근래에 鑄銅匠이 많이 외방에 살고 있는데, 무릇 州縣의 관리와 使命을 받은 인원이 다투어 낫쇠를 거두어들여 그릇을 만들고 있습니다. 때문에 民戶의 그릇은 날이 갈수록 닳아 없어지고 있으니 마땅히 工匠으로 하여금 기한을 두고 서울로 돌아오게 하소서.”라고 하였다.<sup>44)</sup>

사료 ③은 권단이 동경(경주)에 유수로 있을 때 갑방이 백성들로부터 綾羅를 수탈·저장하는 창고로 쓰이고 있음을 지적한 것이다. 갑방은 원래 견직물을 생산하던 지방 관청 수공업장이었는데, 능라 생산의 기능을 상실하고 능라를 수탈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사료 ④는 중앙 관청수공업장 소속의 공장이 지방에 내려가 군현 관리들의 사적인 작업에 동원되고 있음을 지적한 홍자번의 상소로서, 중앙 관청 소속의 공장들이 효과적으로 관리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한편 1249년(고종 36) 정부가 개경으로 환도할 때 궁궐 복구공사에 종사한 공장들에 대하여 은 20근, 포 200필을 하사하였고,<sup>45)</sup> 1260년(원종 15) 원의 요청에 의하여 일본 원정을 위한 전함 300艘를 건조할 때에 동원된 공장과 인부 30,500 명에게 3개월분 급료로 34,312석 5두를 지급한 기록이 있다.<sup>46)</sup> 이는 공장들에게 전시과를 비롯한 공장별사를 정상적으로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일시적인 급료를 지불했던 것으로,<sup>47)</sup> 이를 통해서도 관청수공업이 제대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공장 관리 업무를 담당하던 工部에도 많은 변화가 있었다. 982년(성종 원년)에 설치된 공부(공관)는 1275년(충렬왕 원년)에 폐지되어 1356년(공민왕 5)까지 약 80년 동안 공백 상태로 있었으며, 공민왕 5년에 공부를 다시 설치하고 1389년(공양왕 원년)에 다시 공조로 고쳤다.<sup>48)</sup> 이처럼 공부에 많은 변화가 생기고 충렬왕대에 공부가 폐지된 것은 이미 그 이전부터 공장 관리 업무 등 공부의 기능이 중

43) 『고려사』 권107, 열전 20, 제신, 권단, “留守東京, 舊有一庫, 賦民綾羅貯之, 名甲坊. 充貢獻, 贏餘甚多, 皆爲留守所私. 詔撤甲坊, 以一年所收, 支三年貢.”

44) 『고려사』 권84, 형법1, 직제, 충렬왕 22년 5월, “中贊洪子藩, 條上便民事, 一, 近有鑄銅匠, 多居外方, 凡州縣官吏及使命人員, 爭斂鑄銅, 以爲器皿. 故民戶之器, 日以耗損, 宜令工匠, 立限還京.”

45) 『고려사』 권23, 세가, 고종 36년 4월 병진.

46) 『고려사』 권27, 세가, 원종 15년 2월 갑자.

47) 송성안, 앞의 논문, 1999(a), 22쪽.

48) 『고려사』 권76, 지30, 백관1, 공조.



양관청 내에서 상당히 축소되고 있었기 때문이다.<sup>49)</sup>

## 2) 紙所의 해체

고려시대의 지방제도는 주·부·군·현이 있고 그 아래에 속군과 속현, 향·부곡·소가 있었다. 所의 기원을 볼 수 있는 것으로 다음의 사료가 있다.

- ⑤ 이제 살펴 보건대, 신라에서 州·郡을 설치할 때, 그 田丁·戶口가 縣이 되지 못할 것은 鄉이나 부곡을 두어 그곳에 있는 읍에 속하게 하였다. 고려 때에 또 所라고 칭하는 것이 있었는데 金所·銀所·銅所·鐵所·絲所·紬所·紙所·瓦所·炭所·鹽所·墨所·藿所·瓷器所·魚梁所·薑所의 구별이 있어 각각 그 물건을 공급하였다. 또 處와 莊이 있어 각 宮殿·寺院 및 內莊宅에 분속되어 그 세를 바쳤다. 위 여러 所에는 다 土姓의 아전과 백성이 있었다.<sup>50)</sup>

사료를 보면 향과 부곡은 신라시대부터 존재하였고, 소는 고려시대에 처음 나타난 것임을 알 수 있다.<sup>51)</sup> 소는 금·은·동·철 등의 광산물과 뿔감·소금·미역·생선·생강 등의 농수산물, 그리고 직물류·종이·기와·떡·자기 등의 수공업품을 전문적으로 생산하는 수공업장이었다. 지소는 이들 중 종이 생산을 담당했던 수공업장으로 고려시대 가장 활발히 종이를 생산하였다. 한편 소에는 토박이 성을 가진 아전이 있어 소가 완전히 해체되는 15세기 초까지 소를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었는데, 이들을 所吏라 하였다. 소리는 所民을 감독하여 공물을 생산하도록 하며 동시에 그곳에서 생산된 공물을 모아 공납하는 의무를 지고 있었다.<sup>52)</sup>

지소의 경우 그 분포를 정확히 알 수는 없다. 기록상으로 확실히 밝힐 수 있는

49) 송성안, 앞의 논문, 1999(a), 17쪽.

50) 『신증동국여지승람』, 권7, 여주목, 고적조, “今按新羅建置州郡時 其田丁戶口未堪爲縣者 或置鄉或置部曲 屬于所在之邑 高麗時又 有稱所者 有金所·銀所·銅所·鐵所·絲所·紬所·紙所·瓦所·炭素·鹽素·墨所·藿所·瓷器所·魚梁所·薑所之別 而各供其物 又有稱處者 又有稱莊者 分隸于各宮院寺院及內莊宅 以輸其稅 右諸所皆有土姓吏民焉.”

51) 소의 형성과 관련해서는 신라에 소속되었던 수공업장이거나 신라말기 개별 세력가들이 가지고 있던 수공업장들이 고려에 흡수되어 所수공업으로 편성된 것으로 보고 있다. 성이나 개별 세력가들에 속하였던 신라의 수공업자들이 고려에 흡수되어 일부는 소로 개편되고 일부는 금기방, 잡직방, 갑방 등의 지방 관청수공업장으로 편성되었다고 보았다(홍희유, 앞의 책, 1989, 120쪽-121쪽; 이정신, 앞의 책, 2013, 16쪽; 서명희, 앞의 책, 2003, 429쪽; 김현영, 앞의 논문, 1986, 99쪽-100쪽; 송성안, 앞의 논문, 1999(a), 6쪽).

52) 서명희, 앞의 책, 2003, 432쪽.

지소는 任實縣의 楊等良紙所 뿐이다.<sup>53)</sup> 최근에 河陽縣의 安心所, 宜寧縣의 楮旨所, 咸陽郡의 馬川所, 全州府의 豆毛村所 등을 지소로 추정할 바 있다.<sup>54)</sup> 그러나 고려시대에는 종이의 수요가 급증하였고 양계를 제외한 전역에서 종이의 원료인 닥나무가 잘 자랐으므로 더 많은 지소가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sup>55)</sup>

고려후기에 이르러 문화의 발달로 더 많은 종이가 소요되고 있었음에도 오히려 지소는 12세기 초부터 과도한 벌공이 원인이 되어 해체되기 시작하였다.

- ⑥ 睿宗 3년 2월에 判하기를, “銅所·鐵所·瓷器所·紙所·墨所 등의 여러 所에서 別貢으로 바치는 물건들을 너무 과중하게 징수하여 匠人들이 괴로워하고 고통스러워하여 도피하고 있으니, 담당 관청으로 하여금 각 소에서 벌공과 상공으로 바치는 공물의 많고 적음을 참작하여 다시 정하여 아뢰어 재가를 받도록 하라”고 하였다.<sup>56)</sup>

사료에서는 동소·철소·자기소·지소·목소 등에 대한 벌공 수탈이 심하여 장인들이 도망하므로 각 소의 벌공과 상공을 다시 작성할 것을 논하고 있다. 상공 외에 벌공이 과도한 것은 종이의 수요가 급증했기 때문이었다. 지소에서 이 수요를 감당할 수 없어 소민들이 지소를 이탈하고 있었던 것이다. 또 지소에서 이루어지는 작업과정은 종이 생산에 필요한 닥나무를 채취하여 껍질을 다듬고 삶고 도침을 하는 등 다른 소들에 비해 고역이었다.<sup>57)</sup> 종이의 제작은 가을부터 봄까지 농한기에 이루어지지만 한겨울 내내 종이생산에 매달려야 했고, 그 시기를 제외하면 농사를 지어서 자기 경리를 하였다.<sup>58)</sup> 그렇지만 국가의 필요에 따라 수시로 부과되는 벌공의 과다가 지소 해체의 원인이 되고 있는 것은 농한기에 생산할 수 있는 양에 비하여 감당할 수 있는 범위가 제한되어 있음을 의미한다.

53) 홍희유, 앞의 책, 1989, 126쪽.

54) 이정신, 앞의 책, 2013, 47-49쪽; 박종기, 앞의 논문, 2011, 70쪽.

55) 『세종실록지리지』에 기록된 전체 군현 가운데 닥나무의 식생조건을 갖춘 군현은 102개, 종이를 생산하여 공납한 군현은 84개이며 이를 합하면 174개의 군현(닥나무의 식생조건을 갖추면서 동시에 종이를 공납하던 중복된 군현 12개를 제외함)이 닥나무의 식생에 적합한 곳이 된다. 이 기록은 조선 초의 것으로서 고려시대 지소의 분포를 파악하기에는 정확하지 않지만 닥나무의 식생은 고려시대와 비슷할 것이고, 조선 초에 종이를 공납하던 군현의 역할을 고려시대에는 지소가 상당부분 담당했을 것이므로 지소는 전국적으로 적지 않게 분포되어 있었을 것임을 추정해 볼 수 있다(박종기, 앞의 논문, 2011, 55쪽 참조).

56) 『고려사』 권78, 식화1, 전제, 공부, 예종 3년 2월, “睿宗三年二月 判, “銅·鐵·瓷器·紙墨雜所, 別貢物色, 徵求過極, 匠人艱苦, 而逃避, 仰所司, 以其各所別常貢物, 多少酌定, 奏裁.”

57) 『고려사』 권105, 열진, 정가신, ‘王謂可臣曰, “楮生於地, 紙有何弊?” 可臣曰, “臣嘗管記全州, 知造紙甚苦. 今官高用紙亦多, 不能無愧.” 王只許除名表紙.’

58) 이정신, 앞의 논문, 1998, 238쪽.



지소의 匠人들은 국가의 수취 외에도 소속 군현과 실질적으로 지소를 지배하던 所吏, 즉 호장들로부터 3중의 착취를 당하였다. 또한 군역의 의무도 지고 있었는데, 서북지방 41개 城에 배치된 4만 396명의 장병들 속에는 1,268명의 잡척과 所丁이 포함되어 있었다.<sup>59)</sup>

이와 같이 고려시대 전문 제지 수공업장으로서 종이를 생산하던 지소는 가혹한 착취를 견디지 못한 장인들이 생산지를 이탈하면서 서서히 해체되어 갔다. 뿐만 아니라 지소가 권력기관 및 사원에 의해 사유화되어 중앙의 통제에서 벗어나면서 해체 속도는 더욱 빨라졌다.

⑦ 가림현 사람들이 다루가치에게 말하기를 “현의 촌락들이 각각 元成殿, 貞和院, 將軍房, 忽赤과 巡軍에 분속되어 오직 금소 한 촌락뿐이었는데, 이제 鷹坊의 미자리가 또 빼앗으니 우리들이 어찌 홀로 부역을 감당하겠습니까?” 하니 다루가치가 말하기를 “비단 너의 현만 그런 것이 아니고 이런 일이 많을 것이다. 장차 각 도에 관원을 보내어 순찰하여 그 폐단을 제거하도록 하겠다.”고 하였다.<sup>60)</sup>

사료 ⑦을 보면 당시 가림현에는 금소가 유일하게 남아 군현의 공납을 책임지고 있었는데, 응방의 미자리가 금소를 탈취하자, 가림현의 군현민들이 이를 다루가치에게 호소하고 있다. 소는 권력기관 또는 사원에 의해 장악되고 있었으며 사료에서 다루가치가 판단한 내용으로 보아도 권력기관에 의해 소가 침탈되는 것은 일부 소에만 해당되는 일이 아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소의 해체는 국가의 중앙집권력이 강화되어 속군, 속현, 임내가 폐지되는 과정에서도 진행되었다. 1106년에는 서해도의 유주, 안악, 장연을 비롯한 27개의 속군들과 속현들에 감무관을 파견하여 그 지역을 지배하였다.<sup>61)</sup> 감무관을 파견하는 조치는 12세기 말에 대대적으로 진행되어 1172년에는 여러 주의 임내 53현에 각각 감무를 배치하는 조치가 취해졌다.<sup>62)</sup> 감무관이 수많은 지역에 파견되는 과정

59) 『문종실록』 권4, 문종 즉위년 10월 10일 경진.

60) 『고려사』 권89, 열전2, 후비2, 제국대장공주, ‘嘉林縣人告達魯花赤曰, “縣之村落, 分屬元成殿及貞和院, 將軍房, 忽赤, 巡軍, 唯金所一村在. 今鷹坊迷刺里, 又奪而有之, 我等何以獨供賦役?” 達魯花赤曰, “非獨汝縣, 若此者多矣, 將使巡審諸道, 以蠲其弊”’

61) 『고려사』 권12, 세가, 예종 원년 4월, “頃因所司奏以西海道儒州·安岳·長淵等縣, 人物流亡, 始差監務官, 使之安撫, 遂致流民漸還, 產業日盛. 今牛峯·兎山·積城·坡平·沙川·朔寧·安峽·僧嶺·洞陰·安州·永康·嘉禾·青松·仁義·金城·堤州·保寧·餘尾·唐津·定安·萬頃·富閔·楊口·狼川等郡縣, 人物亦有流亡之勢, 宜准儒州例, 置監務招撫.”

은 국가의 중앙집권적 지배가 실현되어가는 과정인 동시에 지방 토착세력이 소멸되어가는 과정이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수공업 소들도 향, 부곡이나 속군, 속현과 함께 해체되어 갔다.

한편 소의 해체는 소 지역 밖 수공업 발전의 요인이 되기도 하였다.<sup>63)</sup> 소를 이탈한 수공업자들은 독립수공업자가 되거나 권세가, 사원에 의탁하여 생산 활동을 계속하였다. 지소의 紙匠들은 당시 인경이나 불경 간행 등 많은 종이의 수요로 자체 내에서 제지 수공업이 이루어지고 있던 사원으로 흡수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 2. 사원 제지수공업의 발달과 배경

### 1) 사원 제지수공업의 발달

고려시대 사원수공업은 僧匠과 隨院僧徒 및 사원노비와 같은 사원 예속 인력이 사원의 재원을 바탕으로 사원 수공업장에서 생산 활동을 하는 경우로 정의할 수 있다.<sup>64)</sup> 사원수공업은 본래 상업적 이익을 고려한 물품의 생산보다 불법 연구 및 신앙 보급과 관련된 물품, 사원 자체의 수요품, 승려의 생활 용구 등을 조성하는 데 그 목적이 있었다.<sup>65)</sup> 고려는 불교국가로서 고려 말 사원의 규모를 보자면 그 수가 전국적으로 2000~3000개에 이르렀다. 경제의 기반이 되는 사원전도 10만 결로 전국 토지의 1/6에 해당하는 수준이었다.<sup>66)</sup> 또, 고려 인구 210만 가운데 1/3이 승려라는 『송사』의 기록<sup>67)</sup>을 통해 사원에 소속된 수많은 인력의 존재를 짐작할 수 있다. 사원이 창건된 뒤에는 그 위상에 맞는 공양구나 장엄구 등이 조성·안치되기 마련이었다. 이와 더불어 빈번하게 이루어졌던 각종 佛事의 선행<sup>68)</sup>

62) 『고려사』 권19, 세가, 명종 2년 6월, ‘左承宣李俊儀奏, “諸州任內五十三縣, 各置監務, 安東任內甫州, 以太子胎藏, 陞爲縣令, 固城縣加置尉一員.” 王命群臣議之, 以俊儀勢位既重, 性且猜險, 莫敢是非.’

63) 김동철, 앞의 책, 2003, 353쪽.

64) 전영준, 앞의 논문, 2005(c), 94쪽.

65) 최영호, 앞의 논문, 2001, 156쪽-157쪽.

66) 한기문, 앞의 책, 1998, 12쪽.

67) 『宋史』 권487, 열전 246, 외국3, 고려, “男女二百十萬口 兵民僧各居其一”

68) 『고려사』 세가에 기록된 불교행사는 그 종류가 80여 종이며 개설된 총 횟수는 1,000회가 넘는 다(김형우, 「고려전기 국가적 불교행사의 전개양상」, 『가산이지관스님 화갑기념논총』(上), 한국불

에 필요한 의식구나 의례복 등의 물품 마련은 사원수공업의 발전에 영향을 끼쳤을 것이다.<sup>70)</sup>

고려후기 사원수공업이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었던 것은 사원전을 토대로 한 경제력의 확대 및 인적 자원의 확보와 더불어, 사원이 다양한 수공업 기술을 보유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⑧ 나는 말하기를, “불교도들이 幻化를 잘하고 기능이 많기 때문에 그 건축 기공 등은 草芥를 줍는 것보다도 쉽게 하여 허다한 사찰과 빛나는 영적을 남긴 것을 이룬다 기록할 수 없으니 寶蓋山の 지장보살 석상도 또한 그의 하나이다.”라고 하였다.<sup>71)</sup>

⑨ 승려 六然을 강화에 파견하여 琉璃瓦를 구워내게 하였다. 그 제조법이 黃丹을 많이 쓰게 되는 까닭에 황주 의안의 흙을 가져다가 구워서 만들었는데, 그 품질이나 색채가 南商들이 파는 것보다도 우수하였다.<sup>72)</sup>

⑩ 전영보는 원래 帝釋院의 노비로서 金薄 제작이 생업이었다. 처음으로 충렬왕이 전영보에게 낭장을 제수하였으나 간관이 告身에 서명하지 않았다가, 충선왕이 복위 2년에 대호군을 내리니 곧 서명하였다.<sup>73)</sup>

⑪ 한 여승이 있어 백저포를 헌상하였는데 가늘기가 매미 날개와 같았고, 꽃무늬를 섞어서 짠 것이었다. 제국대장 공주가 시전 상인에게 보이니 모두 말하기를 전에 보지 못한 것이라 하므로 여승에게 어디에서 이것을 얻었느냐고 물으니 대답하기를 “나에게 한 여종이 있어 이것을 잘 짜나이다”라고 하거늘 공주가 말하기를 이 여종을 나에게 보내는 것이 어떠한가 하므로 여승이 깜짝 놀랐으나 부득이 바치지 않을 수 없었다.<sup>74)</sup>

교문화사상사, 1992, 871쪽).

70) 전영준, 앞의 논문, 2005(c), 98쪽-99쪽.

71) 이색, 「보개산석대암지장전기」, 『동문선』 권75, ‘予曰. “浮圖氏善幻多技能. 故其興作易於拾芥. 梵刹之相望. 靈跡之有赫. 不可勝紀. 寶蓋山地藏石像. 亦其一也.”’

72) 『고려사』 권28, 세가 충렬왕 3년 5월 임진, “遣僧六然于江華, 燔琉璃瓦, 其法多用黃丹, 乃取廣州義安土, 燒作之, 品色愈於南商所賣者.”

73) 『고려사』 권124, 열전37, 璧辛2, 전영보, “全英甫, 本帝釋院奴, 治金箔爲生. 元嬖宦李淑之妻兄也, 淑嘗黨於王惟紹, 謀廢忠宣, 及忠宣誅惟紹, 乃籍英甫家, 流遠島. 初忠烈授英甫郎將, 諫官不署告身, 及忠宣復位二年, 拜大護軍, 卽署之.”

74) 『고려사』 권89, 열전2, 후비2, 제국공주전, ‘有一尼, 獻白苧布, 細如蟬翼, 雜以花紋. 公主以示市商, 皆云前所未親也, 問尼, “何從得此?” 對曰, “吾有一婢, 能織之.” 公主曰, “以婢遺我如何?” 尼愕然不得已納焉.’

사료 ⑧~⑩을 통해 사원은 건축, 불상 및 기와의 제작, 금박, 직조 등 다양한 분야의 수공업 기술을 보유하고, 그 수준 또한 매우 뛰어났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수공업 기술은 사원의 유지와 각종 불사의 설행을 위해 꼭 필요한 것이었다. 그러던 것이 고려 후기 관영수공업이 해체된 후 국가의 생산을 사원이 대신 하게 되면서 그 규모가 더욱 확대되고, 기술 또한 발전하였을 것이다.

사원에서 제지수공업장을 운영했다는 직접적인 사료는 없지만 다음의 사료를 통해 사원 제지수공업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다.

⑫ 무급, 수봉 두 승려가 그 제자 종유와 함께 경신년 2월부터 시주를 모집하는데 각 참은 순흥, 각잡은 안동, 각홍은 영해, 도혜는 청주, 각연은 충주, 각운은 평양, 범응은 봉조, 지보는 아주에서 했다. 닥으로 종이를 만들고 검은 것을 녹여 먹을 만들었다. 신유년 4월부터 경·울·론 즉 대장경을 찍어내어 9월에 장정을 끝냈으며, 10월에는 각주가 금박으로 책 제목을 쓰고 각봉은 황복을 만들었으며, 12월에 성공이 函을 마련하였다.<sup>75)</sup>

⑬ 都下[서울안] 楮生價가 또한 비싸서 글을 지을 때는 저절로 剡溪 곁으로 간다오. 몇 년 동안 肝腎에 새겨 둔 것 마음에 들어 시험 삼아 글 지어 선사께 청했지요. 멀리서 보내주신 鼠鬚(筆)끝이 날카로우며 함께 나누어 주신 繭紙 색깔 어찌 그리 고울까<sup>76)</sup>

사료 ⑫는 1380년(우왕 6) 2월부터 12월까지 신록사 대장각에 봉안할 대장경의 인경 과정을 기록한 글로 사원의 제지수공업을 엿볼 수 있는 기록이다. 사료 ⑬은 임춘이 범주사 당두에게 부탁했던 종이를 받아보고 고마움을 표현하며 쓴 시이다. 이를 통해 사원에서 종이를 생산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고,<sup>77)</sup> 시의 내용에 서 종이의 질도 뛰어났음을 알 수 있다. 사원의 제지수공업에 대한 직접적인 사료는 많지 않지만, 조선 초 국가가 관영 체지체제를 확립하는 과정에서 대규모의

75) 이승인, 「여흥군신록사대장각기」, 『동문선』 권76, 「驪興郡神勒寺大藏閣記, “有號無及 琇奉二浮屠者 率其徒從與 始自 庚申二月 募緣覺昂於順興 覺峯於安東 覺洪於 寧海 道惠於清州 覺連於忠州 覺雲於平壤 梵雄 於鳳州 志寶於牙州 化楮爲紙 釋幻造墨 至辛酉 四月 印出經律論 九月粧褙 十月覺珠泥金題目 覺峯造黃復 十二月 性空造函”

76) 『西河集』 권3, “都下楮生價亦貴. 爲文自弔剡溪邊 年來未厭彫肝腎 試爲貽書乞老禪 遠寄鼠鬚鋒正利 兼分繭紙色何鮮.”

77) 사료에 보이는 剡溪는 중국 절강 지방의 종이 생산지이며, 이를 언급한 것은 임춘이 받은 종이가 범주사에서 생산한 것임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보인다(송성안, 앞의 논문, 1999(b), 123 쪽).

사원 인력을 官紙匠으로 충원하거나, 다음 IV장에서 확인될 조선전기 사원들의 제지 활동 모습은 고려시기 제지수공업의 발달이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었다.

이처럼 사원의 자체 수요를 충당하기 위해 시작된 사원수공업은 고려후기에 이르러 전문적인 수공업장으로 발전해갔다. 중앙집권력이 약화되자 국가에서 필요로 하는 수공업 관련 생산활동, 즉 관영수공업의 운영이 어려워졌는데, 사원이 이를 대신해서 각종 수공업 활동을 전개했다. 사원수공업은 독자적인 조직을 바탕으로 하는 僧匠制的·徒弟的인 특징과 아울러 고려후기 중앙집권력의 붕괴기에 半官匠制 혹은 準官匠制적인 생산활동으로 관영수공업을 대신하였다.<sup>78)</sup> 특히 관영 제지수공업이 와해되어가던 상황에서 종이의 수요는 오히려 증가하였고, 국가는 사원에 의존하여 그 수요를 해결할 수밖에 없었다. 고려후기 사원 제지수공업은 관영 제지수공업이 쇠퇴하고 지소가 해체되어 국가가 더 이상 종이를 생산할 수 없는 상황에 대신하여 국가 및 민간의 종이 수요를 감당하였다.

## 2) 경제력의 확대

사원은 고려 초부터 종교적 기능뿐만 아니라 아직 제도적으로 완성되지 않은 공궐을 보완하는 관청 기능, 군대 주둔지나 훈련 장소로서의 군사적 기능, 정치적 회합 장소 및 離宮의 기능을 갖춘 국가의 공적 기관으로<sup>79)</sup> 왕실과 귀족들의 후원을 받고 있었다. 사원은 국가로부터 많은 토지와 노비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고려후기에 와서는 施納이나 매입, 奪占 등의 방법으로 대토지를 소유하게 되는데, 이는 각종 수공업이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이 되었다. 고려말 사원이 점유한 토지는 10만결로 전농토의 1/6에 해당될 정도였다.<sup>80)</sup> 그에 따라 사원은 토지를 매개로 한 경작 농민 지배도 한층 강화하여 갔다.

- ⑭ 하지하기를, “제왕·재추 및 호종신료들과 여러 궁원과 寺社에서 閑田을 차지하기를 바랐고, 국가에서도 또한 농사에 힘쓰고 곡식을 소중하게 여기는 뜻으로 賜牌를 지급하였다. 그런데 사패를 빙자하여, 주인이 있어 문적에 등재 되어있는 전토라 할지라도 모두 빼앗아 그 폐해가 적지 않으니, 사람을 골라 파견하여 끝까지

78) 송성안, 앞의 논문, 2002, 73쪽.

79) 전영준, 앞의 논문, 2010, 134쪽-140쪽.

80) 강진철, 『고려토지제도사 연구』, 고려대출판부, 1980, 142쪽; 한기문, 앞의 책, 1998, 12쪽.

조사하고 판별할 것이다 ... "하였다.<sup>81)</sup>

- ⑮ 사원 및 齋醮의 여러 곳에서 양반의 전지를 탈점하고 사패를 받아서 농장으로 삼고 있다.<sup>82)</sup>

사료 ⑭와 ⑮는 賜牌를 매개로 한 사원의 토지 확대를 보여준다. 몽골과의 전란 이후 전국이 황폐해진 가운데 국가는 사패를 지급하여 개간을 장려하였다. 개간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었지만 상당한 노동력과 재력을 필요로 하는 것이었기에 소농민이 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쉽지 않았다.<sup>83)</sup> 사원은 제왕, 재추 및 호종신료 등과 함께 사패를 통해 전토를 확장하였는데, 이와 같은 과정에서 奪占이 이루어졌다. 사패를 빙자하여 주인이 있는 땅을 빼고, 사료 ⑮에서와 같이 양반의 전지까지도 차지하고 있는 것이다. 사패는 원래 주인이 없는 陳荒田을 지급하는 것인데, 이미 주인이 있는 토지가 사패전 내에 포함되어 문제가 되기도 하였다.<sup>84)</sup>

사원의 토지 확대는 施納를 통해서도 이루어졌다. 고려시기 불교는 종교적·사회적 역할이 컸고 이를 신봉하는 계층도 왕실과 귀족·농민 등으로 다양하였다. 이들에 의한 토지 시납이 빈번하게 이루어졌다.<sup>85)</sup>

- ⑯ 요물고에 소속된 360곳의 莊과 處의 토지 중에서 선대에 사원에 시납한 것은 모두 요물고에 반환하게 하라.<sup>86)</sup>

시납은 고려후기에 더욱 성행하였다. 사료 ⑯은 우왕이 토지 검병을 금지하는 교서를 내리면서, 선대에 사원에 시납한 토지들을 다시 국고로 환수하라고 조치

81) 『고려사』 권78, 식화1, 전제, 경리, 충렬왕 11년 3월, '下旨, "諸王·宰樞·及扈從臣僚, 諸宮院·寺社, 望占閑田, 國家亦以務農重穀之意, 賜牌. 然憑藉賜牌, 雖有主付籍之田, 並皆奪之, 其弊不貲, 擇人差遣, 窮推辨覈."'

82) 『고려사』 권84, 형법1, 직제, 충렬왕 24년 충선왕 즉위년 정월, "寺院及齋醮諸處所, 據執兩班田地, 冒受賜牌, 以爲農場."

83) 이병희, 앞의 논문, 1991, 27쪽.

84) 『고려사』 권78, 식화1, 전제, 경리, 공민왕 2년 11월.

85) 사원에 토지를 시납하는 예는 특히 고려후기에 많이 찾아지는데 시납을 받은 사원으로는 龍寶院, 水巖寺, 看藏寺, 神福寺, 普光寺, 上院寺, 報法寺 등이 보인다(이병희, 앞의 책, 2009, 18쪽-21쪽).

86) 『고려사』 권78, 식화1, 전제 녹과전, "其料物庫屬三百六十莊·處之田, 先代施納寺院者, 悉還其庫."



를 내리고 있는 모습이다. 이와 같이 확대된 사원전의 규모는 막대하였고, 토지를 경영하는 과정에서 농민들을 예속하여 사원의 자원으로 활용하기도 하였다.

한편 사원은 농장을 통해 확보한 미곡과 국왕이 시납하는 米·布를 본으로 하여 고리대를 시행하였다.

- ⑰ 宥旨하기를,公私의 이자는 비록 기한이 오래되었어도 一本一利를 갚는 것에 그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사원의 常住息錢은 이자를 취하는 것이 같지 않아, 혹 2푼을 초과하기도 하는데, 담당 관청에서는 적절하게 법을 정하여 임의로 이자를 받는 일이 없게 할 것이며 가난한 자가 자녀를 팔았을 경우, 3년이 지나도 풀어주지 않으면 감찰사와 안렴사가 엄격하게 죄를 다스리도록 하라.”라고 하였다.<sup>87)</sup>

공사의 利息행위는 이자가 모곡을 초과하면 그 이상 이자를 징수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는데, 사원이 이를 어기고 2푼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사료를 통해 사원이 고리대를 행하고 있으며, 기한 내에 변제를 하지 못할 경우 농민들이 사원으로 예속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2세기 이후 전시과의 붕괴로 국가의 부세제 운영이 동요되어 농민들의 田租 부담은 커져갔다.<sup>88)</sup> 농민들은 전조를 납부하기 위해 고리대를 빌려 썼는데, 갚지 못할 경우 토지로 변제하거나 노비가 되기도 하였다. 사원은 이와 같이 고리대를 이용하여 농민들의 토지를 빼고, 그들을 사원의 인력으로 예속하기도 하였다.

고려시기 사원수공업도 사원의 경제력을 확대하는 중요한 수단이 되었다. 사원에서는 사원 건축과 각종 불구의 제조뿐만 아니라 釀酒·製油·造茶·製鹽 등 농수산물의 가공과 관련된 수공업도 행하였다. 특히 술과 소금의 생산·판매를 통해 막대한 상업적 이익을 얻었다.

- ⑱ 승려가 노비와 다투고 또 승니가 술을 빚는 것을 금지하였다.<sup>89)</sup>

87) 『고려사』 권79, 식화2, 차대, 공민왕 원년 2월, ‘宥旨, “公私息錢, 雖積年月, 止還一本一利. 其寺院, 常住息錢, 取利不等, 或過二分, 有司量宜定法, 毋使任意取息, 貧民鬻子女, 如過三年不放者, 監察司·按廉使, 痛加理罪.”’

88) 고려후기에는 토지제도의 붕괴와 부세제의 동요로 한 토지에 私田主가 3, 4인 혹은 7, 8인이 지정되는 경우도 있어 농민들의 전조 부담은 가혹하였다(『고려사』 권115, 열전28, 재신, 이색).

89) 『고려사』 권85, 형법2, 금령, 현종 원년, “禁僧人奴婢相爭, 又禁僧尼釀酒.”

①9 전지하기를, “옛날 각염법은 국용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여러 궁원과 寺社 및 권세가가 사사로이 염분을 두어 그 이익을 독점하고 있으니, 국용이 무엇으로 넉넉해질 것인가? 지금 內庫·常積倉·都塩院·安國社 및 여러 궁원과 내외의 사사가 소유한 염분은 모두 官에 들이도록 하라.”하였다.<sup>90)</sup>

사료 ①8은 사원의 양주를 금하고 있는 내용인데, 양주 행위가 금지되는 경우는 이후에도 자주 있었다.<sup>91)</sup> 이와 같이 국가의 금지령에도 사원이 양주업을 계속했던 것은 양주업이 경쟁력 있는 수공업 부문이었기 때문일 것이다.<sup>92)</sup> 사료 ①9는 궁원, 사사, 권세가들이 차지한 염분을 국유화시키고 있는 내용이다. 충선왕 당시 염분은 양광도에 126개소, 경상도에 174개소, 전라도에 126개소 등 전국에 616개소를 두었고, 여러 도의 염분에서 거둬들이는 세가 한 해 4만 필이었다.<sup>93)</sup> 소금은 생필품으로 수요가 많았는데, 사원은 풍부한 노동력을 이용하여 염분을 운영함으로써 막대한 이익을 얻었을 것이다.

이와 같이 사원은 토지 경영이나 고리대 운영, 상업 활동 등의 다양한 경제 행위를 통해 재정 수입을 확보할 수 있었다. 특히 토지 경영이나 고리대 운영 과정에서는 다수의 농민들을 사원 인력으로 흡수하였고, 비정상적인 물적·인적 자원의 확보는 사원 수공업 발전의 토대가 되었을 것이다.

### 3) 인적 자원의 지속적 확보

고려시대에는 원칙적으로 戒壇사원에서 具足戒를 수계하고, 經과 律의 시험을 통과하여야 승려가 될 수 있었다.

②0 무릇 아들이 4명 있는 자는 1명의 출가를 허락한다. 靈通寺, 嵩法寺, 普願寺, 桐華

90) 『고려사』 권79, 식화2, 염법, 충선왕 원년 2월, ‘傳旨曰, “古者, 榷塩之法, 所以備國用也, 本國諸宮院·寺社, 及權勢之家, 私置塩盆, 以專其利, 國用何由可贍? 今將內庫·常積倉·都塩院·安國社, 及諸宮院·內外寺社, 所有塩盆, 盡行入官.”’

91) 『고려사절요』 권3, 현종 12년 7월; 『고려사』 권5, 세가5, 현종 18년 6월.

92) 송성안, 앞의 논문, 1999(b), 91쪽.

93) 『고려사』 권79, 식화2, 염법, 충선왕 원년 2월, “楊廣道, 塩盆一百二十六, 塩戶二百三十一, 慶尙道, 塩盆一百七十四, 塩戶一百九十五, 全羅道, 塩盆一百二十六, 塩戶二百二十, 平壤道, 塩盆九十八, 塩戶一百二十二, 江陵道, 塩盆四十三, 塩戶七十五, 西海道, 塩盆塩戶, 并四十九. 諸道塩價布, 歲入四萬匹.”



寺 등의 戒壇에서 각자 業으로 하는 經과 律을 시험보게 하라.<sup>94)</sup>

정식 승계를 받은 승려들이 수도에 정진할 수 있도록 사원의 제반 잡역에 종사할 인력이 필요하였는데, 이를 담당할 하급 승도는 정식 수계가 아닌 사원 자체의 수계를 통해 초치하였던 것으로 보인다.<sup>95)</sup> 이와 같은 이원적인 수계 방식은 12세기 초 유망민들이 避役을 위해 사원에 投託하거나, 또는 사원이 막대한 경제력을 이용하여 민들을 사원인력으로 예속하는 방법이 되었다.

12세기 이후 전시과가 붕괴되고 관영수공업 체제 또한 약화되면서 토지와 관영수공업장에서 이탈한 유망민들이 증가하였다. 다음은 고려 후기 유망민들의 사원 유입이 심각하여 국가가 이를 금지하는 내용의 기사이다.

① 향, 부곡, 津, 驛과 양계, 주진의 편호인은 승려가 되는 것을 금한다.<sup>96)</sup>

② 京市の 工匠과 商人을 장부에 등재하였는데, 다른 집에 임시로 붙어살면서 숨거나 빠져 장부에 올라가지 않은 자는 집 주인과 당사자를 모두 처벌하게 하였다.<sup>97)</sup>

사료 ①은 유망민의 사원 유입을 막기 위해 승려가 되는 것을 국가가 법으로 금지하고 있는 내용이다. 사료에 언급된 향·부곡·진·역, 양계와 주진 등의 편호인 외에 향리<sup>98)</sup>나 농민들<sup>99)</sup>의 사원 유입도 문제가 되고 있었다. 사료 ②는 공장 상인에 대한 장적을 작성하면서 세가에 몸을 숨기고 있는 자는 그 집주인과 당사자를 모두 처벌하겠다는 내용으로, 공장들의 관영수공업장 이탈이 문제가 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유망민과 전문수공업 인력들이 투탁 등의 형태로 사원에 예속됨으로써 사원수공업의 인적 자원이 확대되었는데, 특히 지장들의 경우 제지수공업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던 사원으로 유입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었을 것이다.

94) 『고려사』 권6, 세가6, 정종 2년 5월 14일 신묘, “凡有四子者, 許一子出家. 於靈通·嵩法·普願·桐華等寺戒壇, 試所業經律.”

95) 전영준, 앞의 논문, 2005(a), 28쪽-29쪽 참조.

96) 『고려사』 권85, 형법2, 금령, 무편년 금령, “禁鄉部曲·津·驛·兩界州鎮編戶人爲僧.”

97) 『고려사』 권85, 형법2, 금령, 공양왕 2년 4월, “籍京市工商, 其寓居隱漏, 不付籍者, 主客論罪.”

98) 『고려사절요』 권27, 공민왕 10년 5월.

99) 『고려사』 권85, 형법2, 금령, 명종 8년 3월.

고려 후기 사원은 관영수공업장에서 이탈한 전문 수공업자들과 유망민들을 사원의 인력으로 흡수하였을 뿐만 아니라 수공업 소 자체를 소유하기도 하였다. 관련된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㉓ 旆州牧에 華開와 薩川 두 부곡이 있는데 그 우두머리는 모두 머리를 깎았으며, 僧首라고 부른다.<sup>100)</sup>

㉔ 亡伊 등이 다시 반란을 일으켜 伽耶寺를 노략질하였다<sup>101)</sup>

사료 ㉓은 旆州牧에 있는 화개와 살천 두 부곡을 승려, 즉 사원이 지배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는 부곡에 국한되지 않고 소도 마찬가지였을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사료 ㉔를 통해 이를 살펴볼 수 있다. 명종 6년에 공주 명학소에서 가혹한 수탈에 반발하여 망이·망소이 등이 난을 일으켰고, 그 과정에서 가야사와 흥경원<sup>102)</sup> 등 사원을 공격하였다. 이와 같이 명학소민이 사원을 공격 대상으로 삼은 것은 당시 사원과 소의 지배·예속 관계에서 기인된 것으로 보인다.<sup>103)</sup>

사원이 소를 소유하고 있던 기록은 통도사비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통도사의 사령지배 상황을 기록했던 「通度寺 舍利袈裟事蹟略錄」의 「寺之西方山川裨補」에 의하면 사찰이 茶所를 소유하고 있었다.<sup>104)</sup> 이처럼 사찰에 소속된 소는 차소에 국한되지 않았을 것이며, 사원이 소유하고자 했던 소들 중의 하나가 지소였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각종 불서의 제작과 대장경을 비롯한 경전의 인경이 끊임없이 이루어지고 있던 사원에서 종이는 필수품이었고, 그 수요 또한 막대했을 것이기 때문이다.

100) 『고려사』 권57, 지리2, 경상도, 진주목, “有花開·薩川兩部曲 其長皆剃頭 稱爲僧首.”

101) 『고려사』 권19, 세가, 명종 7년 2월, “亡伊等復叛, 寇伽耶寺.”

102) 『고려사』 권19, 세가19, 명종 7년 3월.

103) 나광동, 『所에 관한 一研究—鳴鶴所를 중심으로』, 강원대 석사학위논문, 1995, 37쪽-42쪽.

104) 『通度寺 舍利袈裟事蹟略錄』, 寺之西方山川裨補, 서울대학교 규장각연구원, 古1740-5(영인본).

### Ⅲ. 고려후기 종이 수요처의 증가와 배경

#### 1. 국가의 종이 수요처 확대와 배경

고려후기 종이 수요의 증가 요인을 국가·사원·민간의 세 부문으로 나누어 살펴 보도록 하겠다.<sup>119)</sup> 종이 수요의 규모를 살펴보는 것은 고려후기 사원제지수공업의 기술력 또는 생산력을 가늠해보는 일이 될 것이다.<sup>120)</sup>

##### 1) 공납물의 증가

119) 고려의 시대구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견해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먼저 무신난(1170)을 기준으로 하여 건국(918)~무신난까지의 시기를 전기, 무신난~왕조의 몰락(1392)까지의 시기를 후기로 보는 견해이다. 학자들에 따라 전기와 후기를 다시 세분화하여 보기도 하는데, 전기를 귀족사회가 성립되는 시기와 그 이후의 시기로, 후기를 무신집권기(1170~1270)와 그 이후의 시기로 나누는 방법이 그것이다. 국사편찬위원회에서 발간한 『한국사』(2003)의 경우 고려시기를 전기, 무신집권기, 후기의 셋으로 나누어 정치·경제·사회상을 서술하고 있고, 무신집권기를 따로 구분하여 설명하면서도 시기상으로는 후기에 포함시키고 있다.

고려시대를 구분하는 두 번째 방법은 12세기에 발생한 지배체제의 동요와 사회·경제적 변화 등을 중시하자는 입장에서 '중기'를 설정하자는 견해이다. 12세기는 이자겸·묘청의 난과 무신난, 민의 유망 등과 같이 전기의 질서가 급격하게 변동하는 특성을 가진 시기로, 고려사에 있어 시기 구분의 한 단위가 된다고 보았다. 이 견해에 따르면 건국~제도가 정착되어가는 시기인 11세기 말까지가 전기, 12세기~무신집권기가 끝나는 13세기 중반까지가 중기, 13세기 중반~원간섭기를 거쳐 왕조 몰락까지의 시기가 후기이다(박용운, 『고려시대사』, 일지사, 2011, 13쪽~17쪽; 박종기, 『새로 쓴 5백년 고려사』, 푸른역사, 2014, 47쪽~59쪽;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20·21, 탐구당, 2003).

본고는 두 가지의 시대 구분 방법 중 어느 것이 더 적절한가에 대한 논의를 뒤로 하고 첫 번째의 시대 구분 방법을 따르고자 한다. 12세기는 관영수공업이 와해되고 토지제도의 붕괴로 인한 민의 유망이 대대적으로 이루어지기 시작한 시기로서, 사원수공업의 변화 양상을 살펴보는 데 있어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시기이다. 따라서 본고에서 언급하는 '고려후기'는 12세기 중후반 이후부터의 시기임을 밝힌다.

120) 본고는 고려후기 종이 수요의 규모를 서적 간행 위주로 살펴보았다. 서적들의 간행시기가 명확하여 고려전기와 후기의 간행 규모를 비교할 수 있고, 대부분 간행본이어서 인출을 통한 종이 수요의 규모가 컸을 것이라고 보았기 때문이다. 본고에서 다루지는 않았지만 고려시기에는 서적 간행 외에도 다양한 용도로 종이 활용되고 있었다. 『동국이상국집』과 『고려사』에는 종이를 만든 모기장[紙帳](『동국이상국집』 전집, 권5)과 창호지를 바른 창(『동국이상국집』 후집, 권8), 종이를 만든 부채(『동국이상국집』 전집, 권15)에 대한 기록이 있고, 아이들이 종이를 연을 만들어 노는 모습에 대한 기록(『고려사』 권33, 충선왕 총서)도 보인다. 이 외에 기름을 먹인 종이인 油菴紙로 군대용 천막을 만들거나 우산을 만들어 쓰기도 하였다(이승철, 『아름다운 우리 종이한지』, 현암사, 2012, 54쪽). 이와 같이 종이는 일상생활에 두루 활용되어 그 쓰임이 다양하였는데, 이로 인한 종이의 수요 또한 적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공납지의 수탈은 宋代에서 元代에 이르기까지 고려 전 시기에 걸쳐 이루어졌는데, 요구하는 양이 많아 종이 수요 증가의 큰 원인이 되었다. 宋代의 공납지 수탈의 기록을 보면 다음과 같다.

- ㉕ 송 황제가 勅書 8통을 보내왔다 ... 두 번째 통에서 이르기를 “진상한 사은품을 살펴보니, 御衣 2령, 金腰帶 2조, 金斯羅 1면, 金花銀器 2,000냥, 色羅 100필, 色綾 100필, 生羅 300필, 生綾 300필, 幙頭紗 40매, 帽子紗 20매, 闕屏 1합, 畫龍帳 2대, 大紙 2,000폭, 墨 400정, 금은으로 도금하여 가죽으로 싼 병기[器仗] 2부, 細弓 4장, 哮子箭 24개, 細箭 80개, 안장과 고삐 2부, 細馬 2필, 散馬 6필 등을 잘 받았다” 라고 하였다.<sup>121)</sup>

원간섭기에 들어서면서 몽골에 의한 공물 수탈이 심해졌는데, 사료를 보면 막대한 양의 종이 공물로 반출되었음을 알 수 있다.

- ㉖ 의견이 오고 갔으나 결정을 하지 못한 채 날이 장차 저물려고 하였으므로 8명이 전에 오르도록 허락하자, 몽골 皇太弟의 鈞旨를 전하고, 수달피 10,000장, 가는 명주 3,000필, 가는 모시 2,000필, 솜 10,000근, 龍團墨 1,000정, 붓 200자루, 종이 100,000장, 紫草 5근, 荳花·藍筍·朱紅 각 50근, 雌黃·光漆·桐油 각 10근을 요구하였다.<sup>122)</sup>

이외에도 여러 차례에 걸쳐 원에 종이를 공납한 기록이 있어,<sup>123)</sup> 종이 수탈이 심각하게 이루어지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 2) 서적간행

고려는 전기부터 국가적 차원에서 유학서, 과학서, 사서 등 다양한 서적을 간

121) 『고려사』 권9, 세가, 문종 34년 7월, ‘帝附勅八道 ... 二曰, “省所進謝恩, 御衣二領·金腰帶二條·金鏤羅一面·金花銀器二千兩·色羅一百匹·色綾一百匹·生羅三百匹·生綾三百匹·幙頭紗四十枚·帽子紗二十枚·闕屏一合·畫龍帳二對·大紙二千幅·墨四百挺·金鍍銀粧皮器仗二副·細弓四張·哮子箭二十四隻·細箭八十隻·鞍轡二副·細馬二匹·散馬六匹事具悉.”’;

122) 『고려사』 권22, 세가, 고종 8년 8월, “往復未決, 日將昃, 乃許八人升殿, 傳蒙古皇太弟鈞旨, 索獮皮一萬領, 細紬三千匹, 細苧二千匹, 綿子一萬觔, 龍團墨一千丁, 筆二百管·紙十萬張, 紫草五觔, 荳花·藍筍·朱紅, 各五十觔, 雌黃·光漆·桐油, 各十觔.”

123) 『고려사』 권25, 세가, 원종 3년 9월(黃紙·白紙 각 100장씩 요구); 『고려사』 권25, 원종 4년 5월(表紙 300장, 奏紙 1000장 요구); 『고려사』 권33, 세가, 충선왕 원년 4월(佛經紙 요구); 『고려사』 권35, 세가, 충숙왕 8년 5월(藏經紙 요구); 『고려사』 권35, 세가, 충숙왕 복위7년 7월(불경지 요구) 등의 기록이 있다.

행하였고, 이를 담당할 기구로 중앙에 秘書省을 두었다.

㉗ 비서성에서 새로 간행한 『禮記正義』 70질과 『毛詩正義』 40질을 왕에게 바치자, 이 중 1본은 御書閣에 보관하고 나머지는 문신들에게 나누어 주라고 하였다.<sup>137)</sup>

㉘ 서경유수가 보고하기를, “서경내[京內]의 진사과와 명경과 등 여러 과거 시험에 응시할 사람이 공부하는 서적이 대개 사본으로 된 것이므로 글자가 많이 틀립니다. 비서각에 소장된 9경·『한서』·『진서』·『당서』·『논어』·『효경』·제자의 책과 역사서, 여러 학자들의 문집과 의서, 복서, 지리, 율력, 산수 등 서적을 여러 학원에 나누어 주어 비치하기를 요청합니다.”라고 하였다. 왕이 명령하여 각 1본씩 인쇄하여 보내도록 하였다.<sup>138)</sup>

사료에서 비서성에서는 필요한 서적을 간행하고 그 판본을 보관하는 한편, 필요에 따라 수시로 인출하여 유포하였음을 알 수 있다. 문종대에는 과거시험을 위한 經史와 詩文, 그리고 醫·律·算學 등 교학이 성행하여 관련된 서적의 판각이 활기를 띠었다.<sup>139)</sup> 사료 ㉘는 비서성에서 서경 유수의 요청으로 학원에 비치할 교육용 서책들을 인쇄하여 유통시키고 있는 모습이다. 사료를 통해 비서성은 서적의 분포 요청에 따라 서적을 인쇄·유통시킬 수 있을 정도로 다양한 책들을 보유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사료에서 각 1본씩을 인쇄하여 보내도록 한 것은 인쇄본을 模本으로 지방에서 판각하고, 필요한 수만큼 다시 인쇄하여 쓰도록 한 것으로 보인다.

지방에는 修書院을 설치하여 각종 서적의 출간을 담당하도록 하였다.<sup>140)</sup> 그런데 지방에서의 서적 간행은 수서원보다는 주로 지방 관서에서 이루어졌던 것으로 보인다.

㉙ 충주목에서 새로 조성한 『황제팔십일난경』·『천옥집』·『상한론』·『본초괄요』·『소아소씨병원』·『소아약증병원』·『일십팔론』·『장중경오장론』 등 99판板을 바

137) 『고려사』 권6, 세가6, 경종 11년 4월, “秘書省進新刊禮記正義七十本, 毛詩正義四十本, 命藏一本於御書閣, 餘賜文臣.”

138) 『고려사』 권7, 세가7, 문종 10년 8월, “西京留守報, “京內進士明經等諸業舉人, 所業書籍, 率皆傳寫, 字多乖錯. 請分賜秘閣所藏九經·漢·晉·唐書·論語·孝經·子·史, 諸家文集, 醫·卜·地理·律·算諸書, 置於諸學院.” 命有司, 各印一本, 送之.’

139) 남권희, 『고려시대 기록문화 연구』, 청주 고인쇄박물관, 2002, 21쪽.

140) 『고려사』 권3, 세가3, 성종 9년 12월, “於西京 開置修書院.”

치니, 조서를 내려 비각에 비치하게 하였다.<sup>141)</sup>

- ⑩ 안서도호부사 도관원의랑 이선정 등이 새로 조성한 『주후방』 73판, 『의옥집』 11판, 『천옥집』 10판을 바쳤다. 지경산부사 전중내급사 이성미가 새로 조성한 『수서』 680판을 바쳤다. 왕이 조서를 내려 비서각에 비치하게 하고, 각각 의복을 하사하였다.<sup>142)</sup>

위 사료는 충주목과 안서도호부에서 서적을 판각하여 비서각에 비치하고 있는 내용이다. 서적의 간행은 중앙의 주도하에 지방관서의 협조로 이루어졌는데, 중요한 서적들은 중앙에서 橋勘을 하고 각 관서로 보내어 판각하였다.<sup>143)</sup>

이와 같이 고려는 비서성과 같은 중앙기구의 주도하에서 중앙과 지방의 유기적 협조 아래 서적을 간행하였다.<sup>144)</sup> 이러한 체계는 고려후기에도 이어져 서경, 경주, 진주, 안동, 전주 등 계수관이 파견된 대읍을 중심으로 유학서, 의서, 사서 등 서적의 간행이 전국적으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었다. 다음의 표는 고려시기에 간행된 서적 중 간행처가 명시된 목록들을 정리한 것이다.

<표 1> 고려시기 官署의 간행 서적 목록<sup>145)</sup>

연번	간행처	서명	간행시기	규모
1	비서성	禮記正義	1045	70本
2		毛詩正義		40本
3	경주	前漢書	1042	120권
4		後漢書		120권
5		唐書		200권
6		三國史記	예종연간 고려후기	
7		玉川先生詩集	1301	

141) 『고려사』 권8, 세가8, 문종 12년 9월 1일 기사, “忠州牧進新雕『黃帝八十一難經』·『川玉集』·『傷寒論』·『本草括要』·『小兒巢氏病源』·『小兒藥證病源』·『一十八論』·『張仲卿五臟論』, 九十九板, 詔置秘閣.”

142) 『고려사』 권8, 세가8, 문종 13년 2월 9일 갑술, “安西都護府使都官員外郎異善貞等進新雕『肘后方』七十三板, 『疑獄集』一十一板, 『川玉集』一十板. 知京山府事殿中內給事李成美進新雕『隋書』六百八十板. 詔置秘閣, 各賜衣襪.”

143) 『고려사』 권20, 명종 22년 4월 임자; 권17, 의종 5년 6월 임신.

144) 최연주, 『고려대장경 연구』, 경인문화사, 2011, 18쪽.

145) <표 1> 고려시기 官署의 간행 서적 목록은 다음의 논저를 참고하여 작성하였다. 천혜봉, 『한국전적인쇄사』, 범우사, 1990, 132쪽-136쪽; 허홍식, 『고려시대의 서적간행』, 『국사관논총』 71, 국사편찬위원회, 1996, 17쪽-20쪽; 최연주, 앞의 책, 2011, 22쪽.

연번	간행처	서명	간행시기	규모
8		白花道場發願文略解	1334	
9		帝王韻紀	1360	
10	충주	黃帝八十一難經	1058	
11		川玉集		
12		傷寒論		
13		本草括要		
14		小兒巢氏病源		
15		小兒藥證病源		
16	성주	隋書	1059	680板
17	남원	三禮圖	1059	54板
18		孫卿子書		92板
19		金剛般若婆羅蜜經	1363	
20	전주	十二國史	1200	
21		東坡文集	고종연간	
22		拙藁千百	1349	
23		東人之文	1349	
24	나주	龍龕手鏡	12~13세기	
25	평양	西河先生集	1222	
26		新集御醫撮要方	1226	
27	남해분사도감	東國李相國集	1251	
28	진주	帝王韻紀	1295/1296	
29		拙藁千百	1354	
30		東人之文四六		
31		中庸朱子或問	1371	
32	안동	夾注名賢十抄詩	1337	
33		東人之文四六	1355	
34		東人之文五七		
35		歐蘇手簡	1381	
36	청도	春秋經左氏傳句解	1376	
37	상주	禮記集說	1391	



<표 1>을 통해 경주, 충주, 남원, 전주, 청도 등 전국 대부분의 지방 관서에서 서적을 간행하였음을 알 수 있다. 경주에서는 가장 많은 서적을 간행하였다. 1042년(정종 8)에 왕명에 의해 『후한서』, 『전한서』, 『당서』를 간행한 것을 시작으로 1360년(공민왕 9) 『제왕운기』의 간행에 이르기까지<sup>146)</sup> 고려 전시기에 걸쳐 서적의 간행이 이루어졌다.

충주에서는 문종 연간에 많은 책이 간행되었다. 1058년(문종 12)에 『황제팔십일난경』, 『천옥집』, 『본초팔요』 등 99板을 판각하여 祕閣에 입고시켰다.<sup>147)</sup> 또 성주에서는 이듬해인 1059년(문종 13)에 『수서』 680板을 판각 후 祕閣에 입고하였다.<sup>148)</sup>

무신집권기에는 문신과 유학자들의 세력이 약화되어 학문과 교육이 위축되었고,<sup>149)</sup> 그로 인해 서적의 간행도 뜸해졌다. 이 시기의 서적으로는 전주에서 간행된 『12국사』·『동파문집』과, 서경에서 간행된 임춘의 『서하선생집』, 의학서인 『신집어의촬요방』, 그리고 남해분사도감에서 간행한 이규보의 『동국이상국집』 등이 있다. 최씨정권기에는 이전 무신집권기와는 달리 문신을 우대하는 정책이 취해졌는데 『서하집』과 『동국이상국집』은 이 시기에 발간된 몇 안되는 문집들의 사례이다.

고려시대는 국가의 기본이념을 불교에 두면서도 治世는 유교를 바탕으로 하였다.<sup>150)</sup> 유학서 분야는 안향이 1289년(충렬왕 15년)에 주자학을 도입한 이후의 것에 해당하는 관판본이 몇 종 보인다. 진주에서 1371년(공민왕 20)에 『중용주자훈문』이 간행되었고,<sup>151)</sup> 청도에서는 1376년(우왕 2)에 『춘추경좌씨전구해』가 간행되었다. <표 1>에서 확인되는 바와 같이 전국의 지방 관서에서도 서적 간행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었으며, 그 범위도 역사서나 유교서, 문집 등에 이르기까지 다양하였다. 또, <표>의 목록은 간행처가 확실한 서적만을 모은 것으로 실제의 간행 규모는 이보다 더 클 것임을 알 수 있다.

146) 『고려사』 권6, 정종 8년 2월 기해.  
 147) 『고려사』 권8, 문종 12년 9월 을사.  
 148) 『고려사』 권8, 문종 13년 2월 정묘.  
 149) 천혜봉, 앞의 책, 1990, 124쪽.  
 150) 천혜봉, 앞의 책, 1990, 124쪽.  
 151) 허홍식, 앞의 논문, 1996, 19쪽.



## 2. 사원의 종이 수요처 확대와 배경

### 1) 寫經의 유행

사경은 손으로 불교 경전을 옮겨 적는 행위나 옮겨 쓴 경전을 말한다. 사경의 목적은 인쇄술이 발달하기 전 불교경전을 베껴 써서 여러 사람이 나누어 보는 것으로, 베껴 쓴 필사 경전은 완성된 후 그것을 模本으로 다시 옮겨 쓰는 일이 반복되었다. 이후 板經이 등장하면서 사경의 필요성은 점차 줄어들게 되었지만 사경은 수행의 방편으로 여겨지며 여전히 성행하였다.<sup>152)</sup> 고려시대에는 어느 시기보다도 사경이 많이 이루어졌으며, 당시 제작된 다수의 작품들이 현전한다.<sup>153)</sup>

사경은 發願의 주체가 누구냐에 따라 국왕 발원사경과 개인 발원사경으로 나뉜다. 국왕 발원사경은 국가나 왕실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국왕의 발원으로 이루어졌는데, 元의 지배가 가장 심했던 충렬왕대에 가장 많이 寫成되었다.<sup>154)</sup> 국왕 발원사경은 전문 사경원인 金字院과 銀字院에서 맡았다. 그 내용은 주로 국가안전, 국민평안에 관련된 것이었다. 개인 발원사경은 발원자나 그의 가족들의 만수무강과 소원성취를 기원하는 내용들이 주를 이루었는데, 직접 사성하거나 사경승에게 맡기는 형태였다.

- ㉓ 집안의 재화와 보물을 기울여 승려를 청하여 『圓頓經典』을 사경했는데, 금과 은을 섞어 글자를 꾸몄다.<sup>155)</sup>

사료 ㉓은 남편의 명복을 빌기 위한 허씨 부인의 개인 발원사경이다. 개인 발원사경은 주로 귀족들에 의해 이루어지다가 고려후기에는 在家信徒들의 경제력이 중시되면서 호족과 같은 지방 행정관료와 여성 등 다양한 계층으로 확대되었다.<sup>156)</sup>

152) 국립중앙박물관, 『사경, 변상도의 세계』, ㈜지앤커뮤니케이션, 2007, 11쪽.

153) 국왕발원사경 9점을 비롯하여 제작연대가 확실한 사경만도 70여 건이며, 개인 소장 사경본까지 합하면 수백 편이 현존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남권희, 『고려시대 기록문화 연구』, 청주고인쇄박물관, 2002, 345쪽).

154) 조길제, 「고려후기 발원 사경연구」, 원광대 석사학위논문, 2013, 10쪽.

155) 『金甌妻許氏墓誌』, 『한국금석전문』 中世 下, 아세아문화사, 1984, 1128쪽.

156) 국립중앙박물관, 『발원, 간절한 바람을 담다』, ㈜지앤커뮤니케이션, 2015, 56쪽.

② 一上人이 나를 위하여 詩稿를 淨書하고 있는데, 이윽고 그가 『大藏經』을 쓸 書員으로 被選되었으니, 玄陵께 追福하기 위한 것이다. 내가 提調 諸公에게 청하여 일상인을 얻어서 내 시고의 정서를 끝내려고 했다가 이윽고 스스로 생각하기를, 현릉께 추복하는 일은 내가 밤낮으로 바라던 것인데, 도와주지는 못하면서 도리어 방해를 놓는 것은 나의 뜻이 아니다. 서원을 각 宗派에서 차출하는데, 일상인이 나가지 않으면 南山宗에는 사람이 없는 셈이 되는 것이다.<sup>157)</sup>

사료 ②는 이색이 자신이 쓴 시의 필사를 일상인이라는 승려에게 청탁하였는데, 그 당시 공민왕의 追福을 위해 대장경을 사경할 사경승을 종파별로 차출하던 중 일상인이 남산종의 사경승으로 차출되자 돌려보낸다는 내용이다. 사료를 통해 사경은 국가적 차원의 대규모 사업으로도 진행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sup>158)</sup>

사경은 또한 서적 간행의 과정에서도 이루어진다. 서적을 간행하기 위한 板下本의 작성이 사경에 의해 이루어졌다. 각종 서적과 불경의 간행, 그리고 대규모의 국가적 사업이었던 대장경의 판각 때 이루어진 판하본의 수를 생각하면 당시 사경이 얼마나 대규모로 이루어졌는지 알 수 있다.

## 2) 불교경전의 발간[印經]과 보급

사원에서 간행한 경전 중에서 현전하는 사찰 판본과 현전하지는 않지만 비문 등의 사료를 통해 간행 기록이 확인되는 경전을 살펴봄으로써 고려시기 사원에서 이루어진 경전 간행의 규모를 알아보도록 하겠다.

사원에서의 서적 유포는 筆寫에 의해서 이루어지다가 학법자의 양성과 신도수의 증가에 따른 경전 수요의 확대에 점차 목판에 의한 인쇄가 이루어지기 시작하였다. 고려시기 최초의 목판은 1007년(목종 7) 충지사에서 간행된 『보협인다라니경』이다. 이 경전을 시작으로 경전과 章疏의 유포가 목판을 통한 인쇄로 바뀌기 시작하였다.<sup>164)</sup>

157) 이색, 『牧隱詩藁』, 권22, “一上人爲僕淨書 亂道間被選書大藏 追福玄陵也 僕欲請於提調諸公 得一上人 以畢吾稿 而既自念曰 追福玄陵 稽日夜望之者也 不能助之 而反擾之 非稽之志也 書員出於各宗 一上人不 出 則南山無人矣.”

158) 이 외에도 승려 현목이 발원하여 나라의 행복을 위해 金字로 5,048권의 대장경을 사경하여 김천 직지사(直指寺)에 보관한 기록이 있다(『金泉直指寺大藏殿碑』, 『한국금석전문』 中世 下, 아세아문화사, 1984, 878쪽).

164) 同書 刊記(남권희, 앞의 책, 2002, 4쪽-7쪽).

고려전기에는 주로 왕실이나 귀족들의 후원으로 사원에서의 서적 간행이 이루어졌다. 왕실이 창건한 고려전기의 사원으로는 개경의 현화사와 흥왕사가 있다. 현화사는 현종의 願刹로 경전 간행의 재원 마련을 위해 般若經寶를 두고 1020년(현종 11)에 『대반야바라밀다경』 600권을 비롯하여 같은 해에 『금광명경』과 『묘법연화경』을 간행하였다.<sup>165)</sup>

흥왕사는 문종의 원찰이자 화엄종의 本刹로서 1086(선종 3)에 敎藏都監을 두고 여러 章疏를 간행·유포하였다. 1102년(숙종 7)에 교장의 간행을 주도하던 의천이 병이 나자 그 치유를 위해 교장도감에서 『약사유리광여래본원공덕경』을 간행하였고,<sup>166)</sup> 1207년(희종 3)에는 『대승아비달마잡집론소』를 간행하였다.<sup>167)</sup>

현화사·흥왕사와 함께 대규모의 서적 간행이 이루어진 사원으로 전라도의 금산사가 있다. 1079년(문종 33)에 혜덕왕사가 금산사의 주지로 부임하여 서적 간행 기구인 廣敎院을 두었다. 이곳에서 1097년(숙종 2)에 『법화현찬』, 『유식술기』 등 장소 32부 353권을 矯勸하여 간행하였고, 이듬해인 1098년(숙종 3)에도 倂本 『화엄경』 권45를 판각하는 등 대규모의 간행이 이루어졌다.<sup>168)</sup>

한편 12세기 후반에 시작된 結社운동은 지방 불교의 발달을 촉진하는 계기가 되었다. 그와 함께 각 지방 사원들의 서적 간행 능력 및 규모가 확대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신앙 결사는 다양하게 전개되었으나 불교 개혁 운동의 차원으로 승화시킨 것은 지눌의 定慧結社와 요세의 白蓮結社라 할 수 있다.<sup>169)</sup> 전라도의 수선사는 정혜결사의 본원으로 선종 계열의 경전을 다수 간행하였다. 1207년(희종 3)에는 지눌이 跋文을 쓴 『육조대사법보단경』이 간행되었고,<sup>170)</sup> 같은 해에 지눌이 저술한 『화엄론절요』가 간행되었다.<sup>171)</sup> 또 1215년(고종 24)에는 지눌이 입적한 후 제자인 혜심이 유고를 모아 『간화결의론』을 간행하였다.<sup>172)</sup>

전라도 강진의 백련사는 원묘국사 요세가 개창한 백련결사의 본원으로서 1237년(고종 24)에 천태종의 3대 典籍인 『법화경』·『법화현의』·『마하지관』의 주요

165) 「開豐玄化寺碑」, 『한국금석전문』 中世 上, 아세아문화사, 1984, 441쪽.

166) 「元景國師碑」, 『한국금석전문』 中世 上, 아세아문화사, 1984, 570쪽.

167) 남권희, 앞의 책, 2002, 49쪽.

168) 「慧德王師眞應塔碑」, 『한국금석전문』 中世 上, 아세아문화사, 1984, 544쪽.

169) 채상식, 『고려후기 불교사연구』, 일조각, 1996, 24쪽.

170) 천혜봉, 앞의 책, 1990, 90쪽.

171) 남권희, 앞의 책, 2002, 49쪽.

172) 한기문, 앞의 논문, 1994, 9쪽.

내용을 모은 『삼대부절요』를 간행하였다.<sup>173)</sup> 또 백련사의 영향권역에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는 제주도 묘련사에서 1296년(충렬왕 22)에 『금광명경』의 論疏인 『금광명경문구』가 간행되었다.<sup>174)</sup>

고종 연간에는 해인사에서 많은 경전이 간행되었다. 1223년(고종 10)에는 『천태사교의』, 1230년(고종 17)에 『과분금강경』을 간행하였고, 1235년(고종 22)에는 『수능엄경언해』를, 1236년(고종 23)에는 『불설다라니경』과 『사천왕주경』등에서 내용을 발췌한 『불설범석사천왕다라니경』을 간행하였다.<sup>175)</sup>

몽골과의 강화가 이루어지고 왕정이 복구되던 13세기 중후반대에는 불교계의 중추적인 인물로 迦智山門의 일연이 부각되었다.<sup>176)</sup> 1256년(고종 43)에 길상암에서 일연이 『속통오위』를 重編하여 『중편속통오위』를 간행하였다.<sup>177)</sup> 1290년(충렬왕 16) 인흥사에서 일연의 주관 하에 『인천보감』을, 1293년(충렬왕 19)에는 인흥사에서 일연의 문도들이 『대비심다라니경』을 간행하였다.<sup>178)</sup> 또한 1275년(충렬왕 즉위년)에 인흥사에서 현실구원적 성격이 강한 『묘법연화경관세음보살보문품』이 간행되었다.<sup>179)</sup>

14세기에는 원간섭기의 불안한 사회상을 반영하여 실천신앙적인 측면과 功德신앙을 강조하거나 신비적인 靈驗을 강조하는 경전들을 비롯한 선종계열의 경전들이 다수 간행되었다.<sup>180)</sup> 1340년(충혜왕 복위 원년)에 경기도의 만의사에서는 『법화경』을 암송하거나 필사함으로써 생기는 영험의 실례를 담은 『법화영험전』이 간행되었고,<sup>181)</sup> 여주의 취암사에서는 앞서 1년 전 흥덕사에서 鑄字로 인출한 『백운화상초록불조직지심체요절』을 증보하여 1378년(우왕 4)에 목판으로 다시 간행하였다.<sup>182)</sup> 충주의 청룡선사에서도 다양한 선종계열의 경전이 간행되었다. 1378년(우왕 4)에 『금강반야경소론찬요조현록』과 『선림보훈』이, 1381년(우왕 7)에는 선종

173) 최자, 「만덕산백련사원묘국사비명」, 『동문선』 권117.

174) 윤봉택, 「13세기 제주 묘련사관 <金光明經文句>의 사실조명」, 『탐라문화』 29,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2006, 205쪽, 208쪽, 214쪽.

175) 남권희, 앞의 책, 2002, 52쪽.

176) 채상식, 앞의 책, 1996, 231쪽.

177) 한기문, 앞의 논문, 1994, 35쪽.

178) 천혜봉, 앞의 책, 1990, 91쪽.

179) 남권희, 앞의 책, 2002, 58쪽.

180) 채상식, 앞의 책, 1996, 232쪽-233쪽.

181) 남권희, 앞의 책, 2002, 95쪽.

182) 남권희, 앞의 책, 2002, 99쪽.

의 중요 경전인 『선종영가집』이 간행되었다.<sup>183)</sup>

이상의 경전들을 포함하여 고려시기에 간행된 경전의 목록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2> 전국 사원의 경전 간행 현황<sup>184)</sup>

연번	지역	간행처	간행년도	간행경전	비고
1	개경	攄持寺	1007 (목종 7)	一切如來心秘密全身舍利寶篋印陀羅尼經	1축(전장40cm)
2		彌勒寺	1042 (정종 8)	佛說續命經	
3		玄化寺	1020 (현종 11)	大般若波羅蜜多經	1권1축
4				三本 大方廣佛華嚴經	4권 4첩
5				金光明經	
6				妙法蓮華經	7권2책
7		眞觀寺	1051 (문종 5)	華嚴經	1권1축
8				般若經	1축(10장연결)
9	전라도	金山寺	1088 (선종 5)	阿彌陀經通贊疏	1권
10	개경	普濟寺	1089 (선종 6)	永嘉眞覺大師證道歌	1권1책
11	경상도	海印寺		天台四教義	1책
12	전라도	金山寺	1097 (숙종 2)	法華玄贊, 唯識述記등의 유식법상 계통의 草疏32부	
13	경상도	海印寺	1098 (숙종 3)	晋本華嚴經 권45	21장
14	개경	興王寺	1102 (숙종 7)	藥師琉璃光如來本願功德經	1권 1책
15			1125 (의종 6)	一切如來心秘密全身舍利寶篋印陀羅尼經	
16			1200 (신종 3)	定慧結社文	
17			1207 (희종 3)	大乘阿毗達磨雜集論疏	

183) 천혜봉, 앞의 책, 1990, 96쪽.

184) <표 2> 전국 사원의 경전간행 현황은 다음의 논저를 참고하여 재구성 하였다. 남권희, 『고려시대 기록문화 연구』, 청주고인쇄박물관, 2002, 25쪽-29쪽, 47쪽-59쪽, 92쪽-103쪽; 전해인, 『고려시대 사원의 서적 간행과 그 기반』, 한국고원대 석사학위논문, 5쪽-13쪽, 81쪽-85쪽; 천혜봉, 『한국전적인쇄사』, 범우사, 1990, 82쪽-105쪽; 한기문, 『고려시대 사원의 출판 인쇄 배경과 성격』, 『석당논총』 61, 동아대 석당학술원, 2015, 11쪽-31쪽.

연번	지역	간행처	간행년도	간행경전	비고
18	전라도	修禪寺	1207 (희종 3)	六祖大師法寶檀經	1책
19				華嚴論節要	3권
20	개경	普濟寺	1209 (희종 5)	永嘉眞覺大師證道歌	1권1책
21	전라도	修禪寺	1213 (강종 2)	宗鏡撮要(板)	목판 17매
22				正法眼藏	
23	경기도	群生寺	1214 (고종 1)	金剛般若波羅蜜經	1권6판12장
24	전라도	修禪寺	1215 (고종 2)	看話決疑論	1권
25				圓頓成佛論	
26	전라도	金山寺	1218 (고종 5)	梵書摠持集	47장중 현존39장
27	경기도	華藏寺	1219 (고종 6)	宗門圓相集	1권1책
28	경상도	浮石寺		吉凶逐月橫看高麗木板(板)	1판 (목판)
29		海印寺	1223 (고종 10)	天台四教義	1책
30			1230 (고종 17)	科分金剛經	
31			1235 (고종 22)	首楞嚴經諺解	10권 1책
32			1236 (고종 23)	佛說梵釋四天王陀羅尼經(板)	1판(목판)
33	전라도	白蓮社	1237 (고종 24)	三大部節要	
34	경상도	下鋸寺	1241 (고종 2)	大方廣佛華嚴經疏	
35				大方廣佛華嚴經隨疏演義鈔	
36	경상도	浮石寺	1250 (고종 37)	佛說阿彌陀經	
37			1256 (고종 43)	重編曹洞五位	
38			1275 (충렬왕 즉위년)	妙法蓮華經觀世音菩薩普門品	
39	경상도	新荷寺	1278 (충렬왕 4)	佛說長壽滅罪護諸童子陀羅尼經	1권 1책
40	경상도	仁興社		歷代年表(板)	2판 4장
41			1290 (충렬왕 16)	人天寶鑑	

연번	지역	간행처	간행년도	간행경전	비고
42			1293 (충렬왕 19)	大悲心陀羅尼經	
43	제주도	妙蓮寺	1296 (충렬왕 22)	金光明經文句	3권
44	충청도	元興寺	1305 (충렬왕 31)	金剛般若陀羅密經	1책
45	경기도	寶城寺	1330 (충숙왕 17)	正本一切如來大佛頂白傘蓋摠持	
46	개경	靈通寺	1331 (충혜왕 원년)	大方廣佛華嚴經觀音知識	
47	경기도	萬義寺	1340 (충혜왕 복위 원년)	法華靈驗傳	2권1책
48	충청도	東學社		地裝菩薩本願經	1첩
49	경상도	正覺社	1341 (충혜왕 복위 2)	佛祖三經	1권 1책
50	전라도	德雲寺	1357 (공민왕 6)	金剛般若陀羅密經	1축
51		圓巖寺	1361 (공민왕 10)	佛祖三經	1권1책
52	경상도	見岩寺	1365 (공민왕14)	正本一切如來大佛頂白傘蓋摠持	54권 71책
53	전라도	歸正(禪)寺	1370 (공민왕 19)	六祖大師法寶壇經	1책
54	개경	靈通寺	1372 (공민왕 21)	大方廣佛華嚴經疏變相	120권 중 41권이 현존
55	경기도	靑龍寺		大佛頂如來密因修證了義諸菩薩萬 行首楞嚴經	10권 10책
56	그 외 (공동 개관)	廣明寺,開 天寺,堀山 寺,伏巖寺		傳燈錄	30권
57	경기도	鷲巖寺	1378 (우왕 4)	白雲和尚抄錄佛祖直指心體要節 (板)	2권 1책
58	충청도	靈巖寺		法華三昧懺助宣講義	3권중 권(下)가 현존
59		靑龍禪寺		金剛般若經疏論纂要助顯錄	2권 1책
60	충청도	靑龍禪寺	1378 (우왕 4)	禪林寶訓	2권 1책
61			1379 (우왕 5)	護法論	1책
62	경기도	神勒寺	1380 (우왕 6)	經·律·論	



연번	지역	간행처	간행년도	간행경전	비고
63	충청도	靑龍禪寺	1381 (우왕 7)	禪宗永嘉集	1책
64	평양	法弘山 白蓮庵	1383 (우왕 9)	妙法蓮華經	7권 2책
65	경기도	通度寺	1386 (우왕 12)	文殊師利菩薩最上乘無生戒經	3권 1책
66		高達寺	1387 (우왕 13)	大慧普覺禪師書	1책
67	황해도	金沙寺			大方廣佛華嚴經普賢行願品別行疏

<표 2>는 개경에서 제주도에 이르기까지 전국의 사원이 발간한 경전을 시대 순으로 나열한 것이며, 경전은 인쇄본이거나 목판이다. <표>에서 경전을 보유한 사원은 개경 일곱 곳, 경기도 아홉 곳, 충청도 네 곳, 전라도 여섯 곳, 경상도 일곱 곳, 제주도 한 곳, 황해도 한 곳 등으로 수도인 개경뿐만 아니라 전국에 분포한 많은 사원이 다양한 경전을 간행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사원들은 자체적으로 경전 간행 능력을 보유하고 있었다. 흥왕사가 금산사의 도움으로 『아미타경통찬소』를 간행한 것이나(연번 9)<sup>185)</sup> 광명사, 개천사 등 여러 사원들이 『전등록』을 공동으로 간행한 사실을 볼 때(연번 56), 경전은 사원들 간의 긴밀한 협조 하에서 이루어지기도 했던 것으로 보인다.

12세기 후반에 기존의 보수적·귀족적 불교계에 대한 비판으로 시작된 결사운동은 개경 중심의 불교를 지방으로 확산시키는 한편 세속인의 대규모 참여로 다양한 경전이 간행·유포되는 계기가 되기도 하였다. 수선사는 수선결사의 중심사원으로서 결사운동을 널리 알리고 확산시키기 위해 각종 서적을 간행하였는데,<sup>186)</sup> 본격적인 결사가 시작된 1205년을 전후하여 『육조대사법보단경』, 『화엄론절요』, 『종경촬요』, 『정법안장』 등의 경전을 간행하였음을 알 수 있다.

고려후기에는 원의 지배와 정치·사회 등 국가 전반적으로 혼란하였던 시대상을 반영하여 호국신앙의 성격을 띤 경전이나 護身과 壽福無疆을 위한 불경 간행이 성행하였다.<sup>187)</sup> 경전들은 折帖本이나 小字本의 형태로 간행되어 몸에 지니고

185) 전혜인, 앞의 논문, 2016, 19쪽.

186) 최연주, 앞의 책, 2006, 35쪽-38쪽.

187) 남권희, 앞의 책, 2002, 54쪽.

다니기 쉽도록 하였다. 『범서총지집』(연번 26), 『대방광불화엄경관음지식』(연번 46), 『지장보살본원경』(연번 48), 『금강반야바라밀경』(연번 50), 『정본일체여래대불정백산개총지』(연번 52), 『수능엄경』(연번 55) 등이 그러한 예이다.

이상에서 전국의 사원들이 불경 간행 능력을 보유하고 다양한 경전들을 간행하고 있었음을 살펴보았다. 목판의 조성 목적이 불서의 보급이었으므로 경전의 인경 및 유포는 자주 이루어졌다.

- ③ 장인들에게 명령하여 『大般若經』 600권과 3종류의 『華嚴經』 『金光明經』 『妙法蓮華經』 등의 목판을 새겨 이 절에 비치하고 별도로 반야경보를 두어 널리 이들을 인쇄하여 나누어주게 하였다.<sup>188)</sup>

사료 ③은 현화사에서 『대반야경』과 『화엄경』, 『금광명경』, 『묘법연화경』 등을 판각하고 대규모로 인출하여 이를 유포하는 내용이다. 사원에서는 이와 같이 불경을 직접 간행하여 인출·유포하거나 각기 다른 경전을 보유하고 있어 필요한 경전이 있으면 그것을 보유한 사원을 찾아가 인출하기도 하였다.<sup>189)</sup> 이와 같은 방법으로 경전의 간행과 유포는 전국적으로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었다.

사원별 서적 간행 외에도 고려시대에는 대규모의 국가적 사업이었던 대장경의 조성이 이루어졌다. 고려대장경은 전체 1,513종의 경전 6,813권을 약 3,600명의 각수가 14년에 걸쳐 조판하여 완성하였다.<sup>190)</sup> 대장경을 한 번 인출하는 데 드는 종이 수요량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3> 고려대장경 刻成年代와 經板數<sup>191)</sup>

연번	年度	都 監			合計	備考 (1회 소요종이)
		大藏	分司大藏	未詳		
①	1237	2,931	-	26	2,957	2,957
②	1238	12,583	-	24	12,607	15,564
③	1239	6,411	-	-	6,411	21,975
④	1240	7,241	-	-	7,241	29,216

188) 『개풍현화사비』, 『한국금석전문』 中世 上, 아세아문화사, 1984, 441쪽, “命工人彫造 大般若經六 百卷 并三本華嚴經 金光明經 妙法蓮華經等 印板着於此寺 仍別立號 爲般若經寶 永令印施十方.”

189) 전혜인, 앞의 논문, 2016, 25쪽.

190) 송성안, 앞의 논문, 1999(b), 129쪽.

191) 최연주, 앞의 책, 2006, 143쪽에서 발췌.

연번	年度	都 監			合計	備考 (1회 소요종이)
		大藏	分司大藏	未詳		
⑤	1241	7,047	-	-	7,047	36,263
⑥	1242	8,964	-	-	8,964	45,227
⑦	1243	25,480	6,095	262	31,837	77,064
⑧	1244	31,911	7,543	159	39,613	116,677
⑨	1245	15,293	1,310	-	16,603	133,280
⑩	1246	9,732	844	60	10,636	143,916
⑪	1247	2,335	609	-	2,944	146,860
⑫	1248	38	723	-	761	147,621
⑬	1249	-	-	30	30	147,651
⑭	1250	-	-	22	22	147,673
⑮	1251	-	-	12,810	12,810	160,483
합 계		129,966	17,124	13,393	160,483張 (80,242)	

<표 3>은 고려대장경의 조성이 시작된 1237년부터 조성이 완료되는 1251년까지 14년 동안의 연도별 판각 매수를 보여준다. 대장경의 인경에 소요되는 종이는 표를 통해 알 수 있듯이 16만 여 장이다. 대장경을 인출하기 위해서는 이처럼 막대한 양의 종지와 인력이 소요되어 조선 세종대에는 대장경의 인경이 금지되기도 하였다.<sup>192)</sup> 대장경의 각성 후에는 바로 인경 작업이 이루어졌고, 인출된 경전은 사원을 비롯한 각 처의 소장본이 되었다.<sup>193)</sup> 대장경의 인경과 관련하여 다음의 사료를 살펴보겠다.

⑭ 대장경을 보충함에는 지난번의 염장 별감 이공과 방공이 별도로 임금의 명령을 받아 雪牋紙 3만여 장과 漆을 담은 1백 40여 개를 만들어 도왔다. 대사의 제자인 대선사 承淑·中德·日生 등이 강화 藏板한 집에 가서 빠진 函·卷·張을 찍어 와서 新本과 舊本을 합하여 도합 6백여 함을 만들었는데, 모두 누런 비단으로 책갑을 만들어서 새 전당과 새 창고 안에 안치하였다.<sup>194)</sup>

192) 『세종실록』 권85, 21년4월 22일 기해; 권85, 21년 4월 24일 신축.

193) 송성안, 앞의 논문, 1999(b), 129쪽.

194) 『동문선』 권68, 記, 靈鳳山 龍岩寺重創記, “其大藏之補也 向之塩場李公方公 別受上命 造雪牋三萬餘張 漆函一百四十副以助之 師之門人 大禪師承淑中德日生等 就江華板堂 印出闕函闕卷闕張而來 新舊并六百餘函 皆衣以黃紙幅以黃絹 合安于新殿新藏之中.”

㉔ 경신년 2월부터 인연을 따라 喜捨를 모으기 시작하였다. 覺昂은 順興에서, 覺峯은 安東에서, 覺洪은 寧海에서, 道惠는 淸州에서, 覺連은 忠州에서, 覺雲은 平壤에서, 梵雄은 鳳州에서, 志寶는 牙州에서 선행을 권장하였다. 닥나무로 종이를 만들고 검은 것을 녹여 먹을 만들었다. 신유년 4월에 이르러 『經律論』을 인쇄하여, 9월에 表紙를 꾸미고, 10월에 覺珠가 泥金으로 제목을 쓰고 覺峯이 누런 책가위를 만들었으며, 12월에 性空이 函을 만들었다. 아침저녁으로 몇 되, 몇 말의 곡식을 빌어다가 여러 중들을 밥 먹이는 일을 처음부터 끝까지 게을리하지 않은 사람은 國驢里에 사는 노파 妙安이었다. 임술년 정월에 화엄종 靈通寺에서 거듭 교열하고 4월에 배에 싣고 驪興郡 신록사에 이르니 懶翁이 입적한 곳이다. 花山君 權公僖가 題目을 주관하여 다시 여러 施主들과 더불어 施財하고, 同庵 順公이 공사를 감독하여 드디어 절의 남쪽에 2층 집을 세우고 覺脩가 단청을 장식하였다. 준공하자 (인쇄한 『經律論』을) 그 안에 넣어 간직하였다.<sup>195)</sup>

사료 ㉔는 1318년(충숙왕 5) 영봉산 용암사를 중창하기 위해 무외국통이 제자들을 강화관당으로 보내어 누락된 경을 인쇄하여 가져왔다는 내용이다. 사료를 통해 대장경이 부분 인출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사료 ㉕는 이색이 아버지인 이곡의 뜻을 받들어 대장경 전체를 1부 인출하여 여흥군 신록사에 봉안하는 과정에 대한 기록이다. 대장경을 판본으로 만든 것은 인쇄하여 널리 읽히기 위함이었다. 대장경의 정확한 인경 횟수는 알 수 없지만 『大般若經』 등 일부 경판이 심하게 마모된 것으로 보아 필요에 따라 부분적으로, 자주 인경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sup>196)</sup>

### 3. 민간의 종이 수요처 확대와 배경 - 개인문집의 발간

고려시대에 편찬되거나 목판으로 간행된 개인문집의 규모를 살펴보도록 하겠다. 고려시기의 문인들은 시나 산문 등의 문집을 많이 남겼는데, 전기에는 저술

195) 李穡, 「驪興郡神勒寺大藏閣記」, 『東文選』 권76, “始自庚申二月募緣 覺昂於順興 覺峯於安東 覺洪於寧海 道惠於淸州 覺連於忠州 覺雲於平壤 梵雄於鳳州 志寶於牙州 化楮爲紙 釋幻造墨 至辛酉四月印出經律論 九月粧楷 十月覺珠泥金題目 覺峯造黃復 十二月性空造函 朝莫勺升斗以飯 諸化士終始不怠者 國驢里之老嫗妙安也 壬戌正月於華嚴靈通寺轉閱 四月舟載至于驪興之神勒寺 懶翁示寂之地也 花山君權公僖主盟題目 復與諸檀施財 同庵順公董役 遂於寺之南 起閣二層 覺脩丹雘旣畢 皮而藏之.”

196) 남재우, 「대장경, 천년의 이야기」, 『경남발전』 116, 경남발전연구원, 2011, 34쪽.

이나 간행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적었고, 고려후기에 간행이 활발히 이루어져 13세기 이후의 작품들이 다수 전한다. 고려후기에 작품들이 다수 간행된 것은 전기에는 관찬사업이 발달하여 개인의 창작적인 문학 활동이 위축되었기 때문이기도 하며,<sup>202)</sup> 후기에 이르러 교육과 문화의 발달로 문인이나 학자층이 더욱 두터워지고 그와 함께 작자나 독자층 또한 폭넓게 형성되었기 때문이기도 할 것이다.

문집은 저술된 후 저자의 사후에 후손들이 간행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이곡의 문집인 『가정집』은 아들 이색이 20권으로 편찬하고, 이것을 1364년에 사위인 박상충이 20권 4책으로 간행하였다. 문집은 목판으로 간행된 후 훼손이나 소실이 되는 경우 재간행이 이루어지기도 하였다. 이규보의 시문집인 『동국이상국집』은 아들 이함이 1241년에 총 54권 14책으로 간행하였고, 이후 1251년에 손자 이익배가 재간행 하였으며, 조선시대에도 몇 차례의 간행이 이루어졌다.<sup>203)</sup>

한편, 무신집권기에는 최씨 정권에 의해 문집의 간행이 이루어지기도 하였다. 임춘의 『서하집』은 교우인 이인로가 殘稿를 모아 6권으로 편집·교정한 것을 최이가 1222년에 목판으로 간행하였다. 최씨정권은 문집을 간행함으로써 문인들의 지지를 얻기 위해 노력하였는데, 이 시기에 간행된 문집으로 『서하집』을 비롯하여 이인로의 『쌍명재집』, 김극기의 『동안거사집』, 임유정의 『백가의집』, 이규보의 『동국이상국집』, 최자의 『보한집』 등이 있다.<sup>204)</sup>

여기서는 우선 현전하는 문집들을 중심으로 간행이 얼마나 이루어지고 있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다.

<표 4> 고려시대 개인문집 목록<sup>205)</sup>

연번	저자	문집명	구성	현존본 간행연도
1	권근 (1352~1409)	陽村集	40권10책	1674
2	길재 (1353~1419)	治隱集	3권2책	1858
3	김구 (1211~1278)	止浦集	3권2책	1801
4	김구용 (1338~1384)	惕若齋學吟集	1책	1400

202) 남권희, 앞의 책, 2002, 25쪽.

203) 민족문화추진회, 『한국문집총간 해제1』, (재)민족문화추진회, 1991, 11쪽.

204) 권영규, 「고려 최씨정권의 문집 간행과 지원」, 한림대 석사학위논문, 2008, 3쪽-26쪽.

205) <표 3>은 한국문집총간 해제편을 참고하여 만든 현전하는 개인문집의 저자와 書名 목록이다.

연번	저자	문집명	구성	현존본 간행연도
5	남재 (1351~1419)	龜亭遺稿	2권1책	1869
6	민사평 (1295~1359)	及菴詩集	5권1책	1370
7	박의중 (1337~1403)	貞齋逸稿	3권1책	1924
8	박익 (1332~1398)	松隱集	4권1책	1839
9	백문보 (1303~1374)	淡庵逸集	4권1책	1900
10	백분화 (1180~1224)	南陽詩集	2권1책	1249
11	변계량 (1369~1430)	春亭集	3권1책	1825
12	성석린 (1338~1423)	獨谷集	2권1책	1460
13	안축 (1282~1348)	謹齋集	4권2책	1910
14	원전석 (1330~?)	耘谷行錄	5권3책	1858
15	이곡 (1298~1351)	稼亭集	20권4책	1662
16	이규보 (1168~1241)	東國李相國集	53권14책	?
17	이달충 (1309~1385)	霽亭集	4권1책	1836
18	이색 (1328~1396)	牧隱藁	58권25책	1626
19	이승인 (1347~1392)	陶隱集	5권2책	1406
20	이승휴 (1224~1300)	動安居士集	5권1책	1359
21	이원 (1368~1429)	容軒集	4권2책	1957
22	이제현 (1287~1367)	益齋亂藁	10권3책	1698
23	이존오 (1341~1371)	石灘集	2권1책	1726
24	이종학 (1361~1392)	麟齋遺稿	1책	1650
25	이집 (1327~1387)	遁村遺稿	1책	1846

연번	저자	문집명	구성	현존본 간행연도
26	이침 (1345~1405)	雙梅堂篋藏集	6권3책	?
27	이행 (1352~1432)	騎牛集	3권1책	1872
28	임춘 (?~1181)	西河集	6권2책	1713
29	전녹생 (1318~1375)	壑隱逸稿	6권2책	1738
30	정도전 (?~1398)	三峯集	14권7책	1791
31	정몽주 (1337~1392)	圃隱集	3권4책	1607
32	정충 (1358~1397)	復齋集	2권2책	1585
33	정추 (1333~1382)	圓齋稟	3권1책	1418
34	정포 (1309~1345)	雪谷集	2권1책	1607
35	조준 (1346~1405)	松堂集	4권2책	1901
36	진화 (?~12??)	梅湖遺稿	1책	1784
37	최해 (1287~1340)	拙藁千百	2권2책	1354
38	탁광무 (1330~1410)	景濂亭集	5권3책	1850
39	하륜 (1347~1416)	浩亭集	20권	1940
40	한수 (1333~1384)	柳巷詩集	1책	1602
41	홍간 (?~1304)	洪崖遺稿	1책	1688

<표 4>는 고려시대에 활동했던 인물들 중 작자의 生沒과 관직 입문 시기 등을 고려하여 고려시대에 간행되었을 가능성이 높은 문집들을 목록으로 만든 것이며, 목록 모두 현전하는 문집들이다.

<표>에 따르면, 만사평의 『급암시집』, 백분화의 『남양시집』, 이승휴의 『동안거사집』, 최해의 『졸고천백』이 고려시대의 간행본으로 현전하고 있다. 또한 안축의 근재집』(1364), 이곡의 『가정집』(1364), 이규보의 『동국이상국집』(1241/1251), 이달



충의 『제정집』(1384), 이제현의 『익재난고』(1363), 임춘의 『서하집』(1222), 정포의 『설곡집』(1376), 한수의 『유항시집』(1384) 등이 조선시대의 간행본으로 현전하지만, 초간이 고려시대에 이루어졌음이 기록에 의해 확인된다.<sup>206)</sup> 이 외에도 문집총간의 기록에는 없지만 현전하거나 또는 현전하지 않더라도 기록상 고려시대에 간행이 이루어졌음이 확인되는 문집으로, 이인로의 『은대집』(1260)과 『파한집』(1260),<sup>207)</sup> 최자의 『가집』(1260),<sup>208)</sup> 최해의 『동인지문사륙』(1355)<sup>209)</sup> 등이 있다. 한편 『慵齋叢話』에 의하면 <표 4>의 목록들 외에 21개의 고려문집이 추가로 확인된다.<sup>210)</sup>

개인문집을 간행한 것은 사원의 경전 간행과 마찬가지로 사람들에게 유포하여 널리 읽히기 위함이었을 것이다. <표 4>를 보면 고려시대의 문집은 후손들에 의해 조선시대에 주로 간행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고려시대에도 적지 않게 간행되었고, <표 4>와 『용재총화』의 기록을 통해서 편찬의 규모도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06) 이달충의 『제정집』, 한수의 『유항시집』의 간행 연도는 남권희, 앞의 책, 2002, 68쪽, 이제현의 『익재난고』, 정포의 『설곡집』의 간행 연도는 옥영정, 「여말선초 문인들의 개인문집 간행」, 『포은학연구』19, 포은학회, 2017, 16쪽에서, 나머지는 한국문집총간 해제편에서 확인하였다.

207) 『고려사』 권102, 열전 15, 제신, 이인로.

208) 『고려사』 권102, 열전 15, 제신, 최자.

209) 천혜봉, 앞의 책, 1990, 128쪽.

210) 다음은 『용재총화』에 나오는 고려의 문집들 중 <표 4>와 중복되는 것을 뺀 문집 목록이다 (옥영정, 앞의 논문, 2017, 10쪽-11쪽; 김남이 옮김, 『용재총화』, 휴머니스트 출판그룹, 2015, 402-404쪽 참조).

연번	저자	문집명	연번	저자	문집명
1	승려 둔우(1352~?)	千峯集	12	염홍방(?~1388)	東亭集
2	류숙(1316~1368)	思庵集	13	염정수(?~1388)	萱庭集
3	안축(1282~1348)	關東瓦注	14	설손(?~1360)	近思齋集
4	예종(1079~1122) 곽여(1058~1130)	睿宗唱和集	15	설장수(1341~1399)	芸齋集
5	이방직(?~1384)	義谷集	16	정이오(1347~1376)	郊隱集
6	이암(1927~1364)外	鐵城聯芳集	17	정포(1309~1345)	雲谷集
7	이인로(1152~1220)	銀臺集	18	정해(1254~1305)	八溪集
8	이인로(1152~1220)	雙明齋	19	최해(1287~1340)	東人文
9	이인로(1152~1220)	破間集	20	최해(1287~1340)	三韓龜鑑
10	이인복(1308~1374)	樵隱集	21	최해(1287~1340)	農隱集
11	이제현(1287~1367)	樸翁稗說			

## IV. 조선전기 사원 제지수공업의 운용

### 1. 조선전기 관영 제지수공업의 정비

#### 1) 조선전기 종이 수요의 증가와 국가의 대처

조선의 건국과 함께 종이 수요는 비약적으로 늘어났는데, 그 가장 큰 요인은 官收用의 증가라고 할 수 있다.<sup>211)</sup> 태종대에 명과의 관계가 개선되면서 사대용 진현지의 공납이 자주 있었고,<sup>212)</sup> 유교정치와 문치주의의 실현을 위한 서적 간행이 활발히 이루어졌다.<sup>213)</sup> 또한 역불송유가 국가이념이었지만 세조대에는 간경도감이 신설되어 불경의 국역 및 간행이 이루어졌고, 상당한 경비와 인력이 소요되는 대규모의 대장경 인경 사업도 행해졌다. 이 외에도 저화 발행,<sup>214)</sup> 부의용,<sup>215)</sup> 군수용<sup>216)</sup> 등으로 종이의 쓰임은 다양하였고 그 수요량도 많았다. 그 중 막대한

211) 한정수, 「조선전기 제지수공업의 생산체제」, 『역사와 현실』 33, 한국역사연구회, 1999, 85쪽.

212) 태종~세종대에 중국으로부터 공납지의 요구가 자주 있었는데, 처음 사료에 나타나는 것은 태종대이다. 태종 7년에 7천장의 종이를 공납한 것을 시작으로(『태종실록』 권13, 태종 7년 6월), 태종 8년 4월에 1만장(『태종실록』 권15, 태종 8년 4월), 같은 해 11월에 2만 1천장(『태종실록』 권16, 태종 8년 11월), 태종 17년에 1만 장(『태종실록』 권34, 태종 17년 8월)의 종이를 바쳤고, 세종 1년에 純白厚紙 1만 8천장과 純白次厚紙 7천장(『세종실록』 권3, 세종 1년 2월), 세종 2년에 厚紙 3만 5천장(『세종실록』 권7, 세종 2년 1월), 세종 6년에 2만 5천장(『세종실록』 권25, 세종 6년 8월)의 종이를 공납하였음이 기록으로 확인된다.

213) 세종은 활자로 많은 책을 찍어 냈는데 인쇄본 가운데 많은 부수를 찍은 것으로는 『집성소학』 1만부, 농서 1천부, 『용비어천가』 550부 등을 들 수 있다(손보기, 『세종시대의 인쇄출판』, 세종대왕기념사업회, 1986, 47쪽-55쪽). 또한 손보기의 연구에 의하면 세종 연간에 간행된 서적은 21개 분야 341가지에 이르는데, 소리·글자가 7, 의례 6, 문학 16, 외국어 5, 외국문학 38, 농사·사냥 6, 의학 17, 법의학 6, 역사 13, 외국 역사 27, 유학 41, 불교 22, 교육 23, 법전 19, 천문 52가지 등이다(손보기, 앞의 책, 1986, 42쪽-43쪽).

214) 조선은 1417년에 제정된 명의 寶鈔를 기준으로 화폐의 크기를 축소하는 정책을 시행하였다. 기존의 구화폐는 보초에 크기를 맞춰서 작아진 신화폐에 의해 조금씩 대체되어 갔다. 이 때 신저화와 구저화의 현황을 조사한 기록이 있는데, 당시 司贍寺에서 보관하고 있던 신저화는 101,078장, 구저화는 3,722,903장으로(『조선 전기 紙料와 配合紙 생산』, 『동양학』 66, 단국대 동양학연구원, 2017, 116쪽), 저화 제작에 들어가는 종이의 양이 적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215) 국가에서는 왕족과 문무백관 및 그 부모나 처자가 사망했을 때, 신분과 지위의 고하에 따라 쌀·콩·油菴과 더불어 종이를 차등있게 지급하였다. 이들에게 지급된 종이는 『조선왕조실록』의 기사들에 의하면 1회에 대략 70권~200권 사이가 보통이었다(하종목, 앞의 글, 국사편찬위원회, 2002, 299쪽).

216) 紙甲·神機箭·화약심지 등의 군수용으로 종이가 다양하게 이용되었다. 『세종실록』에 의하면

양의 종이 소모되었던 것은 서적 간행과 불경의 인경 사업이었다.

③ 『자치통감』을 인쇄할 종이를 각처에 나누어 만들게 하되, 5만 권은 조지소에서 만들고, 10만 5천 권은 경상도, 7만 8천 권은 전라도, 3만 3천 5백 권은 충청도, 3만 3천 5백 권은 강원도에서, 합하여 30만 권을 만들라고 명하고 傳旨하기를, “닥은 국고의 쌀로써 교환하여 확보하고, 경내의 僧人들에게 役을 시키되 의복과 음식을 주고, 箬대[篙節]와 밀·보릿짚[麩麥節], 대껍질[竹皮], 삼대[麻骨] 등은 준비하기가 쉬운 물건이므로, 이를 5分마다 닥 1分을 섞어서 종이를 만들면 지력이 강해질 뿐만 아니라 책을 인출하기에 적합하고, 닥도 많이 필요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하셨다.<sup>217)</sup>

④ 『性理大全』·『五經』·『四書』 등을 인쇄하려고 하니, 그 책에 쓸 종이를 값을 주고 닥으로 바꾸어 충청도는 3천 첩, 전라도는 4천 첩, 경상도는 6천 첩을 만들어 진상하라.<sup>218)</sup>

사료 ③과 ④은 서적 간행에 얼마나 많은 종이 소모되었는지를 알 수 있는 기록이다. 『자치통감』 인쇄를 위해 제작하여야 하는 종이에 전통의 닥피(속닥)만을 원료로 사용할 수가 없어서 다양한 재료를 혼합하여 제지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사료 ④은 세종대 『자치통감』을 인출하는 과정에 대한 기록이다. 세종은 그 즈음에 새로 주조한 갑인자로 『자치통감』 500~600帙을 인쇄하여 반포하고자 하였고,<sup>219)</sup> 그에 필요한 30만 권의 종이를 각 도에서 나누어 만들어 바칠 것을 명하고 있다.

조선시대에 이르러 금속활자의 주조는 목판 인쇄와 함께 인쇄량을 증대하는데 크게 기여하였을 것으로 보인다.<sup>220)</sup> 태종은 즉위 후 3년에 주자소를 설치하고 계미자를 완성하는 등<sup>221)</sup> 서적 간행에 필요한 인쇄 여건을 갖추기 위해 노력하였

---

세종 때 각 도에서 매년 균기감에 상납하는 종이는 원래 수량과 추가로 정한 수량이 함께 1천 7백 50권과 1천 20근이라고 한다(『세종실록』 권29, 세종 7년 8월 무자). 1권이 종이 20장임을 고려하면 균기감에 매년 상납하는 종이가 적지 않음을 알 수 있다.

217) 『세종실록』 권65, 16년 7월 17일, ‘命造印資治通鑑紙 五萬卷于造紙所 十萬五千卷于慶尙道 七萬八千卷于全羅道 三萬三千五百卷于忠淸道 三萬三千五百卷于江原道, 共三十萬卷 仍傳旨 “楮以國庫米換易 役境內僧人給與衣糧 如蒿節 麩麥 節竹皮麻骨等物 因其易備 每五分交楮一分造之 非惟紙力稍強 合於印冊 用楮亦不多矣.”’

218) 『세종실록』 권30, 7년 10월 15일, “欲印性理大全五經四書 其冊紙給價換楮 忠淸道三千帖 全羅道四千帖 慶尙道六千帖 造作以進.”

219) 『세종실록』 권 65, 16년 7월 16일.

220) 김삼기, 앞의 논문, 1998, 44쪽.

다. 태종의 뒤를 이어 세종은 활자 주조에 더욱 주력하였는데, 경자자와 갑인자 등을 주조하고 이를 이용하여 『집성소학』 1만부, 농서 1천부, 『용비어천가』 550부 등을 찍어 내기도 하였다.<sup>222)</sup> 이 외에도 인쇄 효율의 증대로 편찬사업은 활발히 이루어졌다. 사료 ⑳에서 『성리대전』과 사서오경과 같은 巨帙의 책을 인출하기 위해 많은 양의 종이가 지방에 분정·생산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다음의 사료 ㉔과 ㉕은 대장경의 인경과 관련된 기록이다.

㉔ 『大藏經』을 해인사에서 印行하게 하였다. 풍해·경기·충청도 관찰사에게 전지하여, 그 도에서 만든 經紙 2백 60束을 경상도에 遞輸하게 하고, 또 경상도 관찰사에게 전지하기를, “지금 채수한 경지를 해인사로 轉輸하여 대장경을 인행함이 옳으나, 그 인출할 때에 諸緣과 僧 2백 명에게도 畧料를 모두 지급토록 하라.”고 하였다.<sup>223)</sup>

㉕ 승정원에 전지하기를, “『大藏經』 50벌을 인출할 종이 40만 6천 2백 권을, 여러 도에 나누어 諭示하여 중국 삼[漢麻]을 쓰고 닥나무 껍질과 섞어서 製造하여 바치게 하라.”고 하였다.<sup>224)</sup>

대장경의 인경은 많은 인력과 경비가 요구되는 대규모의 국가적 사업으로 여기에 소요되는 종이의 양은 막대하였다. 조선은 억불숭유를 국가 이념으로 삼고 있으면서도 왕실 위주의 불교가 숭신되었다. 국왕의 개인적인 신앙 행위에 더하여 일본·대마도·유구의 불경 요청 등 대외적인 요인이 함께 작용하여 수십 차례의 불경 인경사업이 이루어졌다.<sup>225)</sup>

이와 같이 책지와 불경지를 비롯한 다양한 용도로서의 종이 수요의 증가로 종이 부족 문제는 심각하였다. 교서관에서는 책지가 부족하여 개인문집의 인출을 정지하자는 논의가 제기되었고,<sup>226)</sup> 종이 공급이 어려워 流離하는 백성들이 있으므로 책지 貢賦를 삭감하자는 건의가 있기도 하였다.<sup>227)</sup>

221) 『정조실록』 권39, 18년 1월 24일.

222) 손보기, 앞의 책, 1986, 47쪽~55쪽.

223) 『태종실록』 권25, 13년 3월 11일, ‘命大藏經于海印寺 傳旨于豐海京畿忠淸道觀察使 遞輸其道所造經紙二百六十七束于慶尙道 又傳旨于慶尙道觀察使曰 “今遞輸經紙 宜轉輸于海印寺 印大藏經其印出時諸緣及僧二百朔料, 竝皆給之.”’

224) 『세조실록』 권8, 3년 6월 20일, ‘傳于承政院曰 “大藏經五十件印出紙 四十萬六千二百卷 分諭諸道 用漢麻雜以楮皮造進.”’

225) 전영준, 앞의 논문, 2011, 54쪽 참조.

226) 『성종실록』 권235, 20년 12월 2일.

종이 부족 문제에 직면한 국가는 원활한 종이의 공급을 위하여 국초부터 종이의 원료인 닥의 植栽를 위해 노력하였다. 다음의 사료는 닥의 생산이 불안정하여 종이 제작에 문제가 생기자 국가가 이에 대한 대책을 논의하는 내용이다.

④⑩ 사간원 좌사간 대부 유백순 등이 상소하기를, “종이는 쓰이는 데가 넓어서, 무릇公私書啓와 大小喪葬에 쓰이지 않는 데가 없습니다. 하물며, 지금 국가에서 닥나무로 화폐를 만드는 데이겠습니까? 신 등이 가만히 보건대, 대소 민가에 닥나무 밭이 있는 자는 백에 하나 둘도 없고, 간혹 있는 자도 소재지의 官司에 빼앗겨, 이익은 자기에게 미치지 않고 도리어 해가 따릅니다. 그러므로 심지 않을 뿐만 아니라 혹 베어버리는 자가 있으니, 이것이 한탄할 일입니다. 또 중국에서 본조의 종이를 좋다고 하여 간혹 와서 구하기도 하니 이것도 또한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신 등은 원컨대, 각도로 하여금 大戶는 2백 주, 中戶는 1백 주, 小戶는 50주를 내년 2월까지 한하여 일체 심게 하고, 監司로 하여금 사람을 보내어 고찰하여, 만약 법대로 하지 않는 자가 있으면 楮貨로 收贖하고 수령을 죄주되, 일찍이 닥나무 밭이 있는 자는 이 한계에 들지 않게 하소서”라고 하였다.<sup>228)</sup>

④⑪ 중군 총제 이징 등이 진언하기를, “저화를 만드는 닥을 민간에서 수납하니 그 폐단이 적지 아니합니다. 원컨대, 저화로써 還給하고 교역하여 민폐를 제거하소서”라고 하였는데 위 조항을 의논하여 결론을 얻기를, “관가에서 심은 닥밭의 소출로써 저화를 만드소서.”라고 하였다.<sup>229)</sup>

사료 ④⑩은 태종 10년의 기록으로, 당시 닥을 재배하는 민가의 수가 턱없이 부족하였고 닥을 재배하는 민가들조차 과도한 공납을 피하기 위해 닥나무를 베어버리고 있으므로, 대중소호로 하여금 의무적으로 닥나무를 심게 하여 닥의 부족에 대비하자는 상서 내용이다. 사료 ④⑪은 그 5년 뒤의 기록으로, 민가로부터 닥을 거둬들임에 있어 폐단이 심하므로 관에서 직접 닥나무 밭을 운영하자는 내용이다. 두 사료를 통해 당시 닥의 부족 현상이 심각하였고, 이에 대비하여 국가가

227) 『명종실록』 권6, 2년 7월 28일.

228) 『태종실록』 권20, 10년 10월 29일, ‘司諫院左司諫大夫柳伯淳等上疏 “紙之爲用廣矣 凡公私書啓 大小喪葬 莫不用之 況今國家又以楮爲貨乎. 臣等竊見 大小民家有楮田者百無一二 而其僅有者又爲所在官司所奪 利不及己而害且隨之. 故非惟不種 或有斬刈而去之者 是可歎也. 且上國以本朝之紙爲美 或來求之 是亦不可不慮也. 臣等願令各道 大戶則二百條 中戶一百條 小戶五十條限來年二月 一皆種之 令監司差人考察 有不如法者 贖徵楮貨 罪及守令 曾有楮田 不在此限.”’

229) 『태종실록』 권29, 15년 6월 25일, ‘中軍摠制李澄等陳言 “楮貨造作之楮 民間收合 其弊不小 願以楮貨還給交易 以除民弊.” 右條以官種楮田所出造作.’

닥의 식재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당시 종이 수요의 증가와 더불어 닥의 부족 문제는 더 심각해진 것으로 보인다. 국가는 이와 같은 상황에서 전국 군현의 土宜와 土貢을 파악하여 닥 생산지와 종이 공납지에 대한 지배를 강화하는 한편,<sup>230)</sup> 倭楮의 도입과 새로운 紙料의 개발에도 주력하였다. 다음의 사료는 왜저의 식재와 관련된 기록이다.

④2 예조에서 진지하기를, “경상도 동래현과 경기 강화에 倭楮를 재배하였으나, 가꾸는 것을 고찰하는 조문이 없어서 장차 절종이 될까 두려우니, 감사로 하여금 매년 여름과 가을에 잘되고 못된 상황을 갖추어 아뢰게 하라.”고 하였다.<sup>231)</sup>

④3 의정부에서 또 호조의 정문에 의거하여 아뢰기를, “일찍이 여러 고을에 명령하여 왜중 닥나무를 심어 기르게 하였습니다. 근래 수령들이 전혀 힘쓰지 않거나 조그마한 밭땀기에 줄을 세워서 배양케 하니, 불편합니다. 연변의 여러 고을로 하여금 빈 넓은 땅을 골라서 배양하게 하되, 牧官·大都護府는 1結 50負를, 都護府·知官은 1結을, 縣官은 50負를 각각 배양하게 하고, 관찰사로 하여금 그 실적을 상세히 검토하여 黜陟하게 하소서.”하니, 모두 그대로 따랐다.<sup>232)</sup>

세종은 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왜저에 특별한 관심을 기울였다. 사료 ④2는 왜저를 동래와 강화에 나누어 심어 생육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살피는 내용이다. 세종대에는 이외에도 왜저의 씨를 충청도 태안·전라도 진도·경상도 남해와 하동 등에 나누어 심게 하였다.<sup>233)</sup> 또한 연변에 심은 왜저의 성장 상황이 좋지 않음을 두고 관리자를 질책하는 등<sup>234)</sup> 왜저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관리가 이루어졌다. 사료 ④3은 왜저를 키우는 관저전의 운영과 관련된 기록으로 세종대의 왜저의 식재에 대한 노력이 어느 정도 성공을 거두었던 것이라 생각된다

230) 세종대에 전국 각 군현의 土宜와 土貢 등이 파악되어 『세종실록지리지』가 완성되었다. 이 책에 의하면 토의로 닥이 생산되는 곳이 경기도 1, 충청도 13, 경상도 4, 강원도 17, 전라도 35, 황해도 4, 평안도 33으로 총 107 지역이었고, 토공으로 종이 생산되는 곳은 충청도 35, 경상도 48, 전라도 3, 황해도 5로 총 91 지역이었다.

231) 『세종실록』 권65, 16년 8월 3일, ‘傳旨禮曹 “慶尙道東萊縣及京畿江華 栽植倭楮 未有考察培養之條 恐將絕種令監司每年夏秋開具榮枯之狀以聞.”’

232) 『단종실록』 권4, 즉위년 12월 24일, ‘議政府 又據戶曹呈啓 “曾令諸邑種養倭楮 近來守令 全不致意 或於崎零之地 計條培養不便. 令沿邊諸邑 擇閑曠地培養 牧官大都護府一結五十負 都護府知官一結 縣官五十負 令觀察使憑考黜陟.” 皆從之.’

233) 『세종실록』 권84, 21년 1월 13일.

234) 『세종실록』 권118, 29년 10월 20일.



다. 이와 같이 닥의 생산에 대한 국가의 관심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졌는데, 성종 대 완성된 『경국대전』에서는 닥나무가 생산되는 곳을 3년마다 장적을 작성하여 本曹와 本道, 本邑에 두고 닥나무를 재식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국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닥 부족 문제는 계속되었다.<sup>235)</sup> 이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은 다양한 지료의 개발로도 이어졌다.

④ 신득재에게 쌀과 면포를 내려 주었다. 신득재는 遼人인데, 華紙를 만들어 바치매, 주자소에 내려 『17史』를 인쇄했으므로 득재에게 쌀 5석, 면포 3필을 내려 주고 紙工에게 傳習하게 하였다.<sup>236)</sup>

④ 박원형이 종이 만드는 법을 물으니, 正使가 대답하기를, “보통 쓰는 黃紙는 어린 竹葉과 桑皮를 섞어서 만들며, 詔勅을 쓰는 백지는 순전히 상피만을 사용합니다.” 하니, 임금에 조지소에 명하여 이것에 의거하여 시험해 보게 하였다.<sup>237)</sup>

사료 ④는 遼 출신 귀화인인 신득재로 하여금 華紙를 만들게 하여 『17史』를 인쇄하고, 지장에게 그 제조 기술을 습득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화지는 닥나무를 재료로 하는 우리나라 종이와 달리 주로 마를 이용하여 만드는데, 이와 같은 중국의 제지술을 배워 닥의 소비를 줄이고자 한 것이다. 사료 ④ 또한 중국 사신으로부터 대나무 잎이나 뽕나무 껍질을 이용하여 종이를 만드는 법을 배우고, 조지

235) 닥의 식재에 대한 국가의 관심은 선초부터 조선후기에 이르기까지 계속되었다. 국가는 倭楮의 도입과 官楮田의 운영에 주력하는 외에도 전국의 닥나무 산지를 명확히 파악하고 있었는데, 『세종실록지리지』 土宜條와 『신증동국여지승람』 土產條의 기록을 통해 이를 확인할 수 있다. 『세종실록지리지』에 의하면 전국의 닥나무 산지는 108곳이고, 그로부터 약 100년 후의 기록인 『신증동국여지승람』에 의하면 닥나무 산지는 왜지 생산지 4곳을 포함하여 36곳이었다.

국가는 이와 같이 전국 각 지역의 닥 생산지에 관심을 가졌고, 제주도도 예외는 아니었다. 1434년(세종 16)에 제주 선위별감의 닥피 120근을 진상하자 세종이 직접 닥나무가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주변 잡목을 제거할 것을 지시한 기록이 있고(『세종실록』 권63, 16년 2월 3일), 『신증동국여지승람』에도 우도에 닥나무가 많다는 기록이 있어(『신증동국여지승람』 권38, 전라도 제주목) 닥나무 식재에 대한 국가의 관심이 컸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닥의 식재를 위한 국가의 노력은 조선후기에도 계속되었다. 1653년에 간행된 『耽羅誌』에는 제주목 20여 개 마을의 닥나무 분포 현황과 함께 여러 마을에 새로이 닥을 식재하는 기록들이 전한다(『탐라지』, 제주대 탐라문화연구소, 1991, 78쪽-80쪽). 또, 더 후대의 기록인 『정조실록』을 보면 민가나 마을에 닥나무를 심게 할 것을 논의하고 있으며, 수령 7事에도 닥나무 심는 것을 포함시키고 있었다(『정조실록』 권38, 17년 12월 18일). 이와 같이 닥나무 식재에 관한 국가의 관심이 지속적으로 이어진 것은 조선전기에 이어 후기에도 여전히 닥이 부족하였기 때문일 것이다.

236) 『태종실록』 권24, 12년 7월 9일, “賜申得財米及絁布 得財遼人也 造華紙以進 下鑄字所印『十七史』 賜得財米五石綿布三匹 令紙工傳習.”

237) 『세조실록』 권33, 10년 5월 22일, 朴元亨問造紙法 正使答曰 “常用黃紙以嫩竹葉及桑皮和造 書詔粉白紙純用桑皮.” 命造紙所 依此試之.”



소에서 시험 제작을 하게 했다는 내용이다. 이와 같이 만들어진 배합지는 대체지로서 폭넓게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앞의 사료 ㉔에서 확인되는 바와 같이 『자치통감』을 인쇄할 때 사용한 종이는 쑥대와 보릿짚, 대나무 껍질, 麻 등을 닥나무 껍질과 5:1로 섞어 만든 배합지였다. 사료 ㉕에서 대장경을 인쇄할 때 사용한 종이도 닥나무 껍질에 중국 麻를 섞어서 만든 것이었다. 때문에 닥나무만을 원료로 하는 제지술에서 다양한 제지 방법의 적극적인 수용은 막대한 양의 종이 수요를 담당하기 위한 방편으로 볼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조선초 급증하는 종이의 수요로 인하여 심각한 종이 부족 문제에 직면한 국가는 닥나무의 식재와 배합지의 개발 등 생산 원료의 확보에 주력하는 한편, 국초부터 京外 工匠을 갖춘 관영 제지수공업 체제의 정비를 위해 노력하였다. 이를 다음에서 살펴보도록 하겠다.

## 2) 관영 제지수공업 체제의 정비

조선은 건국 후 국가체제의 정비와 함께 고려 말 해체된 제지수공업을 국가 주도의 관영수공업 체제로 복구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紙匠들을 확보하는 한편 중앙에는 造紙所, 지방에는 都會所를 두어 京外의 이원적인 생산체제를 갖추었다.

조지소는 태종 15년에 楮貨紙를 제작하기 위해 설치되었다.<sup>238)</sup> 세종 2년에 진현지와 책지 제작을 위한 것으로 그 용도가 변경되었으며,<sup>239)</sup> 세조 12년에 造紙署로 명칭을 바꾸고 기능도 확대되었다.<sup>240)</sup> 조지소는 진현지나 책지 등의 제작을 담당하였는데, 조지서의 생산량만으로는 수요를 감당할 수 없어 지방의 도회소에서 이를 分定하여 생산하고 있었다.

- ㉔ 『자치통감』을 인쇄할 때 종이 5만 권은 조지소에서 만들고, 10만 5천 권은 경상도에서, 7만 8천 권은 전라도에서, 3만 3천 5백 권은 충청도에서, 3만 3천 5백 권은 강원도에서, 합하여 30만 권을 만들라고 명하였다.<sup>241)</sup>

238) 『태종실록』 30권, 15년 7월 25일.

239) 『세종실록』지리지, 경도 한성부, 조지소.

240) 『세조실록』 38권, 12년 1월 15일.

241) 『세종실록』 65권, 세종 16년 7월 17일, “命造印『資治通鑑』紙五萬卷于造紙所 十萬五千卷于慶尙道 七萬八千卷于全羅道 三萬三千五百卷于忠淸道 三萬三千五百卷于江原道 共三十萬卷.”

사료 ④6은 『자치통감』을 인쇄하기 위해 대량의 종이가 필요하였는데 이를 각 처에 분정하고 있는 내용이다. 조지소에서 5만권을 나머지의 종이는 경상도, 전라도, 충청도, 강원도에서 나누어 생산할 것을 지시하고 있다. 이때 지방에 분정된 종이는 도회소를 통해서 생산된 것으로 파악된다.<sup>242)</sup>

도회소의 설치시기는 정확하지 않으나 태종 2년에 지방의 각 도에 도회소를 설치할 것을 논의하였고,<sup>243)</sup> 세종 30년에는 도회소가 운영되고 있었다.<sup>244)</sup> 도회소는 관영지소의 운영이 있기 전까지 지장이나 승려, 擣砮軍 등의 인력을 모아 몇몇 군현단위 행정 구역에 하나씩 설치·운영되었던 집단 생산 시설이다.<sup>245)</sup> 도회소의 도별 설치 현황은 <표 5>와 같다.

<표 5> 각 도별 都會所의 설치 현황<sup>246)</sup>

구 분	도회소 수
경상도	내상, 경주, 상주, 성주, 영해, 동래, 안동, 진주 도회소 외 10
충청도	충주, 공주, 옥천 도회소 외 6
전라도	전주, 남원, 나주 도회소 외 8
강원도	원주, 강릉 춘천 도회소 외 5
	총 29개소

위 표에서 전라, 경상, 충청, 강원 등 4개도에 29개의 도회소가 설치·운영되었음을 알 수 있다. 도회소에 종이가 분정된 기록은 태종~세종대에 자주 보이는데,<sup>247)</sup> 많은 양의 종이를 마련하기 위해 지장이나 보조 인력들의 무리한 力役을 강요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다음의 사료는 도회소의 종이 제작 방식과 운영상의 문제점을 살펴볼 수 있는 기록이다.

242) 김삼기, 앞의 논문, 1997, 35쪽.

243) 『태종실록』 3권, 태종 2년 6월 18일.

244) 『세종실록』 122권, 30년 10월 28일.

245) 한정수, 앞의 논문, 1999, 84쪽과 김삼기, 앞의 논문, 1997, 36쪽 참조.

246) <표 5>는 김삼기, 앞의 논문, 1997, 36쪽-37쪽의 내용과 『단종실록』 권6, 1년 6월 9일 갑오조의 내용을 정리하여 표로 작성한 것이다.

247) 『태종실록』 권25, 13년 3월 11일(『대장경』인쇄); 『세종실록』 권19, 5년 2월 5일(『강목속편』 인쇄); 권27, 7년 1월 24일(『사기』인쇄); 권30, 7년 10월 15일(『성리대전』, 사서오경 인쇄); 권65, 16년 7월 16일(『자치통감』인쇄).

④ 전 현감 이운경이 상서하기를, “외방에서 진상하는 책지는 도회소를 설치하여 만드는데, 그 닥나무와 군인을 각 고을에 나누어 정하여 도회소에 모아서 여러 달立體시키니, 부자 형제가 糧食을 가지고 대신 입역하므로 왕래하는 데 매우 곤란합니다.”하였다.<sup>248)</sup>

④ 참찬관 이계전이 대답하기를, “... 그러나 신이 듣건대 승문원에서 전주·남원의 貢紙를 납입할 때에 조그마한 하자가 있어도 으레 모두 물리치고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하는데, 그 물리쳐서 되돌려 보내는 종이는 公用에 쓰이지 못하므로 다시 만드는 비용이 실로 백성의 고향에서 나오니, 폐단이 또한 작지 않습니다...”고 하였다.<sup>249)</sup>

사료 ④은 도회소에 입역하는 役夫들의 어려움이 많으므로 책지 분정을 감면해 줄 것을 건의하는 상서 내용이다. 사료를 통해 도회소에서는 원료인 닥나무를 주고 근처 고을의 인력을 여러 달 입역시켜 종이를 만들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급증하는 종이 수요로 인해 도회소에 종이 생산이 분정되는 경우는 자주 있었고 그 생산량 또한 막대하였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지장들은 정해진 근무 일수 외에도 자주 동원되었을 것이라 생각된다. 또한 사료에서 도회소가 몇몇 고을을 한데 묶어 운영하는 형태였으므로 왕래에 어려움이 컸던 것을 알 수 있다. 사료 ④은 도회소에서 만들어지는 종이의 품질이 수요처와 맞지 않아 이를 다시 만드는데 드는 비용이 적지 않음을 지적하고 있는 내용이다. 조지소의 경우 중앙 관리 체제 하에 있기 때문에 관리 감독이 수월한 반면, 도회소의 경우는 관리 감독이 그와 같을 수 없어 품질상의 문제가 발생했던 것으로 보인다.<sup>250)</sup>

조지소와 도회소의 이원적 생산체제로 운영되던 제지수공업은 군현제가 완성되고 지장의 거주지나 지역별 분포 등에 대한 정확한 파악이 이루어지면서 새롭게 정비되었다. 즉, 도회소 대신 각 지방 관사 소속 하에 관영지소가 설치·운영되어 지방의 종이 생산을 담당하게 된 것이다. 관영지소는 해당 관사의 감독 하

248) 『문종실록』 권4, 문종 즉위년 10월 10일, ‘前縣監李云卿上書曰 “外方進上冊紙 設都會所造之 分定各官 聚於都會所 累月立役 父子兄弟齋糧代立 往來艱甚.”’

249) 『문종실록』 권5, 문종 즉위년 12월 4일, ‘參贊官李季旬啓曰 “... 然臣聞 承文院納全州南原貢紙之時 或有微瑕 例皆却而不納 其還退之紙 不爲公用 而改造之費 實出民膏 弊亦不貲.”’

250) 한정수, 앞의 논문, 1999, 91쪽 참조.

에 그 지역에 소속된 外紙匠들이 동원되어 종이를 생산하였다. 여기서 생산된 종이는 중앙에 官備貢物로 보내지거나 지방 관사 내의 용도로 사용되었다.

이와 같이 국가는 중앙에는 조지소를, 지방에는 관영지소를 두고 여기에 경외 지장들을 배속시켰으며, 군현제를 통해 이들을 직접 지배하는 형태로 관영 제지수공업 체제를 확립해갔다. 국가는 경외공장들을 모두 帳籍을 작성하여 本曹·本司·本道·本邑에 보관하도록 하였다.<sup>251)</sup> 『經國大典』 工典 工匠條에 의하면 공장의 분포는 다음과 같다.

<표 6> 京外工匠의 수와 비율<sup>252)</sup>

京工匠數 및 그 비율			外工匠數 및 그 비율		
匠人名	인원수	비율(%)	匠人名	인원수	비율(%)
沙器匠	386	13.8	<b>紙匠</b>	705	18.7
治匠	192	6.9	治匠	493	13.1
矢人	171	6.1	席匠	408	10.8
鍊匠	170	6.1	矢人	377	10.0
紡織匠	110	3.9	木匠	356	9.5
弓人	108	3.9	漆匠	311	8.3
綾羅匠	105	3.8	皮匠	297	7.9
瓦匠	104	3.7	弓人	294	7.5
<b>紙匠</b>	<b>85</b>	<b>3</b>	油具匠	182	4.8
∴	∴	∴	∴	∴	∴
기 타	1,364	48.8	기 타	351	9.4
계	2,795	100	계	3,764	100

京工匠은 총 2,795명으로 30개 관청에 129종의 일을 담당하고 있었다. 그 중 지장의 수가 85명으로 총 경공장의 3퍼센트에 해당하며, 외공장은 총 3,764명인데 이 중 지장이 705명으로 총 외공장의 18.7퍼센트에 해당한다. 경지장은 전체 경공장에서 큰 비율을 차지하지는 않지만 경외지장을 모두 합하면 790명으로 전체

251) 『경국대전』 공전, 공장조.

252) <표 6>은 하종목, 앞의 논문, 2002, 295쪽의 표를 인용하여 재구성하였다.

공장 중 가장 많은 수의 장인이 제지수공업에 배정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외지장의 수가 많은 것은 종이 생산에 있어 각 지역에 분포된 관영지소의 역할  
이 컸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들 경외지장은 함경도와 평안도를 제  
외한 전국에 배속되어 국가의 종이 생산을 담당하고 있었다. 『경국대전』에 기록  
된 지장의 분포를 보면 다음과 같다.

<표 7> 『經國大典』의 京外紙匠 분포<sup>253)</sup>

지역	州郡縣數(紙匠數)	기타
서울	조지서(81) 교서관(4)	
충청도	54(131)	
경상도	67(265)	
전라도	54(237)	대정, 정의
강원도	25(33)	정선
황해도	24(39)	
계	총 군현수 : 224개 京紙匠 : 85명 外紙匠 : 705명	※기타는 주군현 가운데 소 속 지장이 없는 곳임

<표 7>을 보면 서울 조지소와 교서관에 경지장 85명, 그리고 함경도와 평안도  
를 제외한 전국 224개의 군현에 외지장 705명이 배속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에서는 생략되어 있지만 『경국대전』 공장조에는 각 군현마다 소속된 지장  
의 수가 다시 세분화되어 기록이 되어있다. 국가는 이와 같이 경외지장들의 수나  
거주지 등을 정확히 파악하고 이를 成籍하여 보관하도록 하였으며,<sup>254)</sup> 소속된 관  
청에서는 교대 근무제 규정에 따라 종이를 생산하였다.

국가가 종이의 원료인 닥나무의 식재에 적극적으로 관여하거나 배합지의 개발  
에 주력하고, 경외지장체제의 확립을 통해 해체된 제지수공업을 복구하고자 하는  
일련의 노력들은 건국과 함께 이루어지는 체제 정비의 일환이었다. 더불어 종이  
부족 문제가 심각하여 시급하게 대책을 마련해야 했던 당시의 상황이 반영된 것

253) 한정수, 앞의 논문, 1999, 93쪽의 표를 요약하여 재구성하였다.

254) 『경국대전』 공전, 공장조.

이기도 할 것이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국가는 제지 인력의 충원과정이나 대규모의 간행 사업 등에 사원이 가진 제지능력을 적극 활용하려고 하였다.

## 2. 사원 제지수공업의 국가적 활용

조선은 건국 후 많은 사원을 혁파하고 사원의 경제적·인적 기반을 축소하는 정책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확보된 물적·인적 자원을 국가의 체제 정비 과정에 활용하였으며, 신도 건설에 수반되는 궁궐 조성이나 도로 건설 등 대규모의 役事에도 승려들을 동원하여 그들의 기술력과 조직력을 활용하고자 하였다.<sup>255)</sup>

- ④ 사헌 박경 등이 상서하기를, “宮室의 제도는 임금이 거처하는 殿이 있어야 하고, 백관들이 집무하는 방이 있어야 하므로, 크고 작은 건물의 수가 1천보다 적지 않을 것이요, 수만 명의 工匠과 卒徒를 써야 될 것인데, 농민으로 그 수를 채우면 반드시 농사 때를 놓칠 것이니 염려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사대부가 집 한 채를 경영하는 데에도 반드시 승려를 청해서 일을 시키는 것은 솜씨가 능숙하고 또 살림살이가 없어서 일에 전력할 수 있기 때문이며, 승려들도 일하기를 좋아하는 것은 衣食을 얻기 때문입니다. 하물며 궁궐을 처음으로 짓는 데에 어찌 익숙지 못한 사람을 쓰겠습니까? 다만 농사만 폐하고 공사가 늦어질 뿐입니다 …” 하였다.<sup>256)</sup>

사료 ④는 궁궐을 짓는 役使에 각 도의 농민들이 동원되었는데, 이들을 돌려보내고 승려들로 대신할 것을 건의하는 상서 내용이다. 이때 승려들로 대신하는 이유로 농사의 때를 지키는 것과 승려들의 기술이 뛰어난을 들고 있다. 조선전기에 국가가 신도를 건설하는 과정에서 이와 같이 사원의 기술력을 활용하고자 하는 경우는 자주 있었는데, 『조선왕조실록』에 보이는 役僧의 기록은 다음과 같다.

255) 전영준, 「여말선초 도첩제의 운용과 승도의 성격」, 『백산학보』 70, 백산학회, 2004, 551쪽과 560쪽 참조.

256) 『태조실록』 권7, 4년 2월 19일, ‘大司憲朴經等上書曰 “宮室之制 燕寢有殿 而百官供奉 各有所止 間閣之數 不下於千 其工匠卒徒 當用數萬人矣. 必用農民 以充其數 農必失時 不可不慮也. 士大夫營一家 必請僧以役者 手段熟習 且無家計而用工專也. 僧亦樂於趨事者 以其有資於衣食也. 況創立宮闕 豈可容拙手於其間哉 徒廢農業 而緩於工役.”’

<표 8> 국가 役事에 동원된 승려 수<sup>257)</sup>

	시 기	役事 내용	동원된 승려 수
태조	2년 11월 경신	신도건설	
	3년 12월 을사	종묘와 궁궐 터 조성	
	4년 2월 계미	궁궐조성	수만명
태종	1년 5월 을유	궁궐조성	
	1년 7월 무신	궁궐 조성	각 도에서 150명
	5년 3월 계해	漢都 이궁 조성	
	6년 8월 신묘	풍저창 · 광흥창 영조	600명
	7년 4월 임진	社稷壇場, 館舍 경영	
	12년 2월 을축	시전행랑 터 조성	500명(전체2,035명)
	12년 2월 경오	시전행랑 조성	
	13년 2월 을묘	시전행랑 조성	500명(전체2,641명)
	14년 7월 임진	別寮役	600명
세종	8년 2월 계사	별요역	340명
	10년 1월 기유	장서각 영조	
	10년 윤4월 무술	院宇 영선	
	11년 3월 무진	태평관 역사	1,000명
	15년 2월 기해	태평관 역사	1,000명
	20년 4월 계유	동평관, 북평관 등 역사	
	22년 11월 계축	평안도 熙州-閔廷간 도로 건설, 院館 영조	
	24년 7월 병인	관내 院館 수리	
28년 3월 을미	산릉역		
문종	즉위년 3월 정미	별요역	500명(경상·전라 각 각 150명, 경기·황 해 각각 50명, 개성 부 100명)
세조	4년 윤2월 계유	평안도 諸邑의 院·館 조성	
	8년 4월 기사	懿墓 역사	

257) <표 8>은 배명애, 「조선전기의 승려 통제책과 역승」, 부산대 석사학위논문, 2005, 25쪽 <표 1>과 27쪽 <표 2>, 37쪽 <표 6>을 정리하여 재구성하였다.



시 기		役事 내용	동원된 승려 수
성종	14년 8월 갑술	壽康宮 영조	2,000명
연산군	10년 7월 병진	이궁 영조	
	10년 10월 기사	후원의 연못 조성	
중종	30년 8월 기해	安行梁 역사	
	31년 2월 신묘	犬項津 역사	
명종	10년 8월 기축	兵船 제조	
	11년 2월 경자	築城	

<표 8>은 태조에서 명종대에 이르는 시기에 신도의 건설과 관련하여 승도들이 역사에 동원된 사례를 정리한 것이다. 이를 통해 궁궐과 관청·도로 등의 건설, 兵船과 기와의 제작 등 역사의 내용이 다양하였으며, 동원되는 승려도 수백명~수만 명에 이르는 등 그 규모가 작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빈번하게 이루어진 국가의 승도 동원은 사원이 고려시대부터 축적해 온 탄탄한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아울러 총체적인 설계를 담당하는 승장과 공장승 및 사역승 등으로 구성된 조직력이 있다는 점이 고려되었을 것이다.<sup>258)</sup>

국가가 사원의 뛰어난 기술력을 활용하고자 함은 제지수공업 분야에서도 이루어졌다. 건국 초에 이루어진 수공업 관청의 재편 과정에서 장인의 확보는 필수적이었는데, 이때 국가는 사원의 혁파된 노비 8만여 명을 각 관청의 공장으로 충원하였다.<sup>259)</sup> 당시 관영수공업에 종사하는 장인들은 공노비와 일부 양인으로 구성되었는데, 15세기 초 방대한 규모의 사찰 정리 과정에서 발생한 사원노비 등이 관영수공업의 노동력으로 충당된 것이다.<sup>260)</sup> 이때의 사원노비에는 고려 말 사원으로 유입되어 제지활동을 하던 지장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었을 것이며,<sup>261)</sup> 이들이 조지소와 관영지소에 배속되어 경외지장체제를 완성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공장으로 편입되는 외에도 관영수공업장의 인력이 부족할 경우 국가는 승려들

258) 전영준, 앞의 논문, 2004, 560쪽.

259) 이혜옥, 앞의 논문, 1999, 26쪽.

260) 최양임, 앞의 논문, 2002, 18쪽.

261) 고려말 사원노비들 중에는 수공업 생산에 종사하는 자들이 상당히 많았으며, 이는 조선 건국 이후 官匠 중심의 수공업 조직을 정비할 때, 사원노비가 상당수 관공장으로 편성된 것과 일정한 관련성을 지닌 것으로 보인다(송성안, 앞의 논문, 1999(b), 112쪽).

로 노동력을 보충하였고, 대규모의 서적 간행이나 인경 과정에도 사원의 제지능력을 활용하였다.

- ㉔ 경기의 승려들은 築城하는 데에 역을 시키고 曳木軍과 조지서군으로는 역을 시키지 말아서 민폐가 없게 하라는 내용으로 비변사와 해조에 이르라.<sup>262)</sup>
- ㉕ 『자치통감』을 인쇄할 종이를 각처에 나누어 만들게 하되 … 경내의 僧人들을 시켜 종이 뜨는 일을 하게 하라.<sup>263)</sup>
- ㉖ 이때에 이르러 관찰사 김연지에게 유시하기를, “(『좌전』을) 승도와 한인들을 모집하여 처음으로 간행하게 하되, 절대로 백성들을 수고롭게 하지 말고, 또 수시로 인쇄하여 바치라.”고 하였다.<sup>264)</sup>
- ㉗ 『大藏經』을 해인사에서 印行하게 하였다. 풍해·경기·충청도 관찰사에게 전지하여, 그 도에서 만든 經紙 2백 60束을 경상도에 遞輸하게 하고, 또 경상도 관찰사에게 전지하기를, “지금 채수한 경지를 해인사로 轉輸하여 대장경을 인행함이 옳으나, 그 인쇄할 때에 諸緣과 僧 2백 명에게도 식료를 모두 지급토록 하라.”고 하였다.<sup>265)</sup>

사료 ㉔은 승려들의 역사 동원이 빈번하게 이루어져 원성이 크므로, 성을 쌓는 일 외에 예목군과 조지서군으로는 더 이상 역사시키지 말라는 내용이다. 조지서에는 경지장이 소속되어 있었지만 이들만으로 노동력이 부족할 경우 승려들이 동원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사료 ㉕과 ㉖는 『자치통감』과 『左傳』을 간행하는 과정에 대한 기록인데, 승려들을 동원하여 종이를 만들게 하거나 인쇄를 하도록 하고 있다. 사료 ㉗은 태종이 개경사에 안치할 목적으로 승려들로 하여금 해인사에서 대장경을 인경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사료들을 통해 대규모의 서적 간행이

262) 『명종실록』 권22, 12년 2월 27일, “京畿僧人 築城處則役之 曳木軍及造紙署軍則勿役 使無民弊事 言于備邊司及該曹.”

263) 『세종실록』 권65, 세종 16년 7월 17일, “命造印資治通鑑 紙五萬卷于造紙所 十萬五千卷于慶尙道 七萬八千卷于全羅道 三萬三千五百卷于忠清道 三萬三千五百卷于江原道 共三十萬卷 仍傳旨 “楮以國庫米換易 役境內僧人 … ”

264) 『단종실록』 권6, 1년 6월 5일, ‘至是諭觀察使金連枝曰 “募僧徒及閑人開刊 切勿煩民 且隨宜印進.”’

265) 『태종실록』 권25, 13년 3월 11일, ‘命大藏經于海印寺 傳旨于豐海京畿忠清道觀察使 遞輸其道所造經紙二百六十七束于慶尙道 又傳旨于慶尙道觀察使曰 “今遞輸經紙 宜轉輸于海印寺 印大藏經其印出時諸緣及僧二百朔料, 並皆給之.”’

나 불경 인경 과정에는 사원인력이 투입되거나 또는 국가의 주도하에 사원의 제지공업이 활용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사원은 조선전기에도 제지활동을 계속하고 있었고, 생산한 종이를 공물로써 국가에 납부하고 있었음이 『목재일기』의 기록을 통해서 확인된다. 『목재일기』는 이문건이 32년(1535년~1567년)간 신변에 일어났던 일들을 기록한 일기로 모두 10책으로 되어 있다. 이 중 3책에서 10책 까지가 성주에서 유배 생활을 하던 기록이다. 조광조의 문하생으로서 이조좌랑과 동부승지를 역임하다가 을사사화에 연루되어 성주에 유배된 이문건은 지방관과의 인적인 관계를 바탕으로 안봉사의 공물 및 요역의 감면을 중재하였다. 이러한 과정에서 안봉사의 제지활동 기록을 『목재일기』에 남겼다. 『목재일기』는 관찬 사서에 나타나지 않는 조선전기 사원의 제지 활동을 살펴볼 수 있는 사료로, 국가가 안봉사라는 한 지방 사찰의 제지 능력을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를 보여준다.

일기가 작성되던 16세기에는 토지 8결을 기준으로 하나의 戶를 구성하고 호구성원으로 하여금 공물 및 요역을 부담하게 하였는데,<sup>266)</sup> 부세의 기준이 되는 안봉사의 토지 소유가 일기에서 확인된다.

㉔ 性輪이 나물을 보내고, 겸하여 위전 1결을 坐第한 것을 알려주었다.<sup>267)</sup>

㉕ 절은 三寶의 소임이 중요한데, 승려 戒淡 때에 논 30마지기를 사서 지금까지 제사를 設行하는 데 사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삼보가 죽은 날 施食을 하지 않으면 덕에 보답할 방법이 없으니, 백미 2말로 시식할 것을 의논해 정하고, 성책하여 연이어 署押을 한 뒤에 삼보에게 주어 시행토록 했다.<sup>268)</sup>

안봉사는 세조와 연산군 대에 대장경을 珍藏하고,<sup>269)</sup> 중종 때에는 『신증동국여

266) 1471년(성종 2)에는 요역의 분정 기준으로 役民式이 새롭게 마련되었다. 그 내용은 收稅田에서 8結마다 1명의 役夫를 징발·사역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 역민식은 『경국대전』에 이르러 ‘田八結出一夫’로 하되 1년에 6일 이상은 사역시킬 수 없다는 규정으로 법문화 되었다. 요역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는 공물 분정 역시 역민식 이후로 8결 단위로 운영되고 있었으며, 이 공물 운영방식을 ‘八結作貢制’라 하기도 한다(이정철, 「조선시대 공물분정 방식의 변화와 대동의 語義」, 『한국문화보』 34, 2009, 113쪽-114쪽).

267) 『목재일기』, 1555년 7월 19일조, “性輪送菜物 兼示位田一結坐第.”

268) 『목재일기』, 1551년 2월 9일조, “議寺三寶所任之重 故僧戒淡時買畝三十斗落只 至今用是設祭 其死日不爲施食 無以報德 乃定議白米二斗死日施食事 成冊列署以付三寶 使施行焉.”

269) 1457년(세조 3) 6월 26일에 경상도 관찰사 이극배에게 명하여 다가올 2월에 대장경 50벌을 인

지승람』에 등재되었던<sup>270)</sup> 국가 공인 사찰이다. 사료 ⑤4에서 확인되는 바와 같이 국가로부터 寺位田을 지급받았다. 또한 사료 ⑤5는 승려 계담이 논 30마지기를 사서 영당제에 사용하도록 했으니 그의 뜻을 기리기 위해 불교식 제사를 지내주자는 내용인데, 계담이 매득한 논 30마지기는 사찰 소유의 토지에 해당될 것이다.

이와 같이 안봉사는 국가에서 지급한 사위전 1結과 사찰 사유 토지 30마지기 정도를 가지고 있었는데, 사원의 토지가 소재한 雲谷坊에 안산호가 설정된 것으로 보인다.<sup>271)</sup> 안봉사가 국가로부터 지급받은 수조지 1결은 면세지였지만, 사원 소유의 토지 30마지기는 일반 민전과 마찬가지로 전세·요역·공물 등을 부담해야 하는 토지였다.<sup>272)</sup> 안봉사는 이 토지를 근거로 안산호에 소속되어 해마다 국가에서 정한 물품을 공물로써 납부하고 있었다. 이 중 닥과 종이를 납부하였던 기록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⑤6 겁성이 일찍이 전임 판관에게 白楮를 줄여달라고 청했는데, 지금 다시 색출하여 바치라고 독촉했다고 한다. 다시 판관에게 아뢰니 줄여서 주었다.<sup>273)</sup>

⑤7 판관에게 편지로 문안하고 이어서 안산호의 공물인 白楮·은어·호두·松根 등의 물품을 줄여줄 것을 부탁했더니 바로 尺文을 보내 주었다.<sup>274)</sup>

⑤8 안봉사 승 석민이 종이를 만들어 관에 바치려고 왔는데, 관청이 비어있어 종이를 여기에 두고 갔다.<sup>275)</sup>

경하기 시작하여 6월에 끝내도록 명령이 내려졌다(『세조실록』 권8, 세조 3년 6월 26일 戊午). 이듬해인 1458년(세조 4)에 인경 경차관 정은이 비로소 대장경 3벌을 바치고(『세조실록』 권13, 세조 4년 7월 27일 壬子), 나머지 47부는 해인사를 비롯한 전국의 각 사찰에 나누어 진장하도록 하였는데, 이때에 성주 안봉사에도 1부를 진장하였다(『분류 오주연문장전산고』 경사편 3, 석전 총설 석교·범서·불경에 대한 변증설 부 석씨잡사). 하지만 1502년(연산군 8) 1월 19일에 일본 국 사신 朋中이 와서 대장경을 요청하므로 안봉사 진장본을 내려주었다(『연산군일기』 권42, 8년 1월 19일 壬辰).

270) 『신증동국여지승람』 성주목 불우조.

271) 이성임, 「16세기 지방 군현의 貢物分定과 수취」, 『역사와 현실』 72, 한국역사연구회, 2009, 51쪽.

272) 『성종실록』 권236, 21년 1월 17일.

273) 『목재일기』, 1547년 1월 5일, “刳成會於前判官請減白楮 今復抄出促納云 更告二道前減給.”

274) 『목재일기』, 1555년 7월 29일, “二道前問安簡 仍請安山戶貢物白楮銀魚胡桃松根等物減下事 卽爲尺文出送.”

275) 『목재일기』, 1548년 6월 27일, “安峯僧釋敏 將造紙納官事來到云 因空官置紙于此而去.”

⑤9 마침내 나가서 절 안을 건다가 지일의 방을 들러서 만났다. 희상이 감을 바쳤다. 또 서쪽 정원으로 나와 우물을 보았는데 승이 이곳에서 종이를 만들고 있었다.<sup>276)</sup>

사료 ⑤6과 ⑤7은 안봉사에 공물로 부과된 닥의 양이 많아 이를 줄여 줄 것을 이문건에게 부탁하자 그가 관아에 청탁하는 내용이며, 사료 ⑤8은 승려가 종이를 만들어 납부하려다 관청이 비어있어 이문건의 집에 두고 간다는 내용이다. 사료들을 통해 사원이 공물로 닥과 종이를 관청에 납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사료 ⑤9는 이문건이 절 안을 건다가 승려가 종이를 만드는 모습을 발견하는 내용으로 사료 ⑤8과 ⑤9를 통해 안봉사 내에서 제지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특이한 것은 사료 ⑤6과 ⑤7에서와 같이 닥을 공물로써 납부하고 있는데, 사원이 다시 관청으로부터 닥을 분정받아 종이를 만들고 있다는 것이다.

⑥0 안봉사 승려 성륜이 와서 말하기를 “성주 관아에서 종이를 만들기 위해 닥나무를 준다고 합니다. 기와를 만들기 전이니 그만두게 해 주십시오”라고 했다. 즉시 목사에게 아뢰었더니 허락했다.<sup>277)</sup>

⑥1 (도운암의) 승려 보명이 오이와 흰 신발을 가져와서 주면서 또 청하기를 “관아에서 쓸 종이를 나누어 만들 白楮를 분급 받지 않도록 힘써 주십시오”라고 했으나 어려울 것 같다.<sup>278)</sup>

사료 ⑥0과 ⑥1은 안봉사와 도운암의 승려들이 관청으로부터 닥을 분정받지 않게 해달라고 이문건에게 부탁하고 있는 내용이다. 본래 官備貢物이었던 종이는 관영지소에서 외지장의 公役으로 만들어져야 하는 것이었지만, 16세기 초부터 농민의 요역에 크게 의존하지 않으면 안될 상황에 이르렀다.<sup>279)</sup> 이와 같은 상황에서 관청은 거둬들인 닥을 다시 각 민호나 사원의 제지능력에 따라 차등 있게 배분한 후 종이를 만들게 함으로써 생산의 효율성을 높이려고 했던 것이 아니었을까 생각된다.

276) 『목재일기』, 1553년 10월 6일, “飢飽焉 遂出步寺內 歷見智一房 希尙供柿子 又出西庭 見井水 僧人造紙于此矣.”

277) 『목재일기』, 1546년 2월 24일, “安峯僧性輪來 言“州以造紙事 將付楮云 造瓦前請停” 云云 卽告城主 許之矣.”

278) 『목재일기』, 1552년 7월 16일, “普明僧持瓜及白鞋來遺 又請“官紙分造白楮勿頒事圖之”云 似難也.’  
279) 김삼기, 앞의 논문, 1997, 82쪽 참조.

안봉사의 승려들은 두 가지 방식으로 종이를 생산하고 있었는데, 하나는 닥을 분정받아 사원 내에서 종이를 만드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관영 지소에 동원되어 종이를 만드는 것이었다.

② 안봉사와 적산사 등의 승려가 종이 만드는 역에 차정되었는데, 곧 판관청에서 대나무 자리 만드는 일을 또 하게 되었으니 하나의 역은 면제해 주길 청한다고 했다. 이에 목사에게 편지로 이러한 뜻을 아뢰었더니, 종이 만드는 일은 그만 둘 수 없으니 판관청의 수리는 화원의 승려로 하여금 하게 할 것이라고 했다.<sup>280)</sup>

③ 안봉사의 승려 3명이 紙所로부터 와서 먹을 것을 청한 뒤 절로 돌아갔다.<sup>281)</sup>

사료 ②와 ③은 승려들이 관영지소에 동원되어 종이를 만들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기록이다. 당시 貢物은 품목에 따라서 수취 과정이 달랐는데 해당 물품을 그대로 징수하거나, 米布로 대납하게 하거나 또는 定役戶에 전담시키든지 아니면 물품의 생산을 위해 요역의 형태로 민호의 노동력을 징발하는 방식이 있었다.<sup>282)</sup> 사료에서 안봉사와 적산사의 승려들이 지소에 차출되는 것은 공물 납부의 한 형태로 종이 생산을 위한 요역이 부과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이 성주지역에 위치한 안봉사, 도운암, 적산사 등의 사원들은 닥을 분정 받아 사원 내에서 종이를 만들어 공납하거나, 또는 관영지소에 동원되어 종이를 만드는 두 가지 방식으로 관청에 필요한 종이를 공납하고 있었다.

안봉사는 거주승 20명 안팎의 사원으로 일반적 의미의 巨刹이나 大刹은 아니다.<sup>283)</sup> 『세종실록』에 언급된 경상도 사찰의 거주승 규모를 보면 진주 단속사가 100명, 경주 기림사가 70명, 거제 견암사가 70명, 합천 해인사가 100명이었다.<sup>284)</sup> 안봉사의 제지 활동은 16세기 한 지방 사찰의 사례에 불과하지만 조선전기의 어려워졌던 종이 수급 상황을 생각한다면, 국가가 이보다 더 큰 사원들의 제지수공업

280) 『목재일기』, 1551년 10월 4일, “安峯赤山等僧以造役差來 卽造簞于二衙 又有此事 請除一役云云 乃書陳此意于牧城主 則造紙不可廢也 二衙修理 使花園僧爲之云云.”

281) 『목재일기』, 1551년 10월 14일, “安峯僧人三名自紙所來 求食而還寺.”

282) 이성업, 앞의 논문, 2009, 63쪽.

283) 박정미, 「16세기 성주이씨 영당사찰 안봉사의 규모와 운영」, 『태동고전연구』 31, 한림대 태동고전연구소, 2017, 65쪽.

284) 『세종실록』 권24, 6년 4월 5일 경술.

을 활용하고자 하였음은 당연한 일일 것이다.

조선은 건국 후 고려 말 해체된 관영수공업 체제를 복구하고 급증하는 종이 수요에 대비하고자 하였다. 관영 제지수공업 체제가 정비되어 가는 과정 중에도 종이 부족 문제는 심각하였고, 조지소와 관영지소의 이원적 관제지체제가 완비되고 나서도 닥과 인력의 부족으로 종이의 수급은 원활하지 않았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가는 사원이 가진 제지능력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자 하였다. 사원에서 획득된 노비들을 관노로 경외지장에 흡수하는 한편, 서적 간행이나 불경 인경 등 많은 종이와 인력이 소모되는 대규모의 국가적 간행사업에 사원의 인력이나 제지수공업을 활용하였다. 이와 같이 국가가 사원의 제지능력을 활용하였던 것은 사원이 이전 시기부터 축적해온 제지술과 제지능력을 조선시기에도 여전히 보유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 V. 결론

이상으로 고려후기에 사원이 어떻게 제지수공업을 확대해 나가고, 왕조 교체 후 조선의 억불책 속에서 어떤 형태로 제지 활동을 계속하고 있었는지를 살펴보았다. 각각의 목적에 따라 이를 재정리하여 살펴보겠다. 먼저 II장에서는 관청과 지소로 나뉘는 고려시기 관영수공업장의 쇠퇴와 사원수공업의 발달 과정을 살펴보았다.

고려전기 국가의 운영상 필요한 종이를 생산하던 관영수공업장은 12세기 이후 서서히 그 기능을 상실해가기 시작하였다. 전시과의 붕괴로 인한 수조지의 감소와 백성들의 流亡에 따른 戶口의 부족으로 국가의 재정이 악화되었으며, 役에 대한 대가를 받을 수 없었던 工匠들이 관청을 이탈하여 관영수공업은 전반적으로 쇠퇴할 수밖에 없었다. 한편, 佛具類나 사원 내 생활용구 등 자체 내의 수요를 충당하기 위해 운영되던 사원수공업은, 고려후기 사원전을 기반으로 한 막대한 경제력의 확보와 관영수공업장에서 이탈한 전문인력의 흡수를 바탕으로 그 규모가 확대되었다. 사원은 특히 제지수공업에 큰 관심을 가졌다. 이는 사원 스스로가 불경의 간행이나 印經 등에 쓰일 많은 종이를 필요로 하였기 때문이다.

고려후기 관영수공업이 붕괴된 상황에서 국가와 민간의 종이 수요는 더욱 증가하였다. 사원은 독자적인 조직을 바탕으로 하는 僧匠制적인 성격과 아울러 準官匠制적인 생산 활동으로 관영수공업을 대신하여 활발히 종이를 생산하였다.

III장에서는 고려후기의 종이 수요처를 국가·사원·민간의 세 부문으로 나누어 수요의 규모를 살펴보았다.

국가의 종이 수요는 주로 元에 대한 공납지의 증가와 서적의 간행에 의해 이루어졌다. 중국에 대한 종이의 공납은 宋代에서 元代에 이르기까지 고려 전시기에 걸쳐 이루어졌는데, 고려후기에 들어서면서 막대한 양의 종이가 공물로 반출되었다. 국가의 서적 간행과 관련해서는 중앙의 秘書省과 각 지방 관서가 긴밀한

협조를 이루어 사서, 과학서, 교육서, 유교서 등의 서적을 활발히 간행하였다.

고려시대의 사원은 가장 뛰어난 인쇄술을 보유한 서적의 출판 장소였다. 전국에 분포한 사원은 자체적으로 판각 능력을 보유하고 다양한 경전을 간행하였으며, 간행 후에는 대규모로 유포가 이루어졌다. 특히 국가적 사업이었던 대장경의 조성과 관련해서는 판각 및 인출 과정에서 막대한 종이가 소요되었다.

민간에서는 문인과 학자들 간에 개인문집의 간행이 성행하였다. 문집은 저술된 후 저자의 사후에 후손들에 의해 간행이 이루어졌는데, 고려시기에 간행된 문집의 수도 적지 않았고 편찬의 규모도 컸음을 알 수 있었다.

국가의 전반적인 종이의 수요는 고려후기로 갈수록 더욱 증가하였는데, 이 시기의 종이 수요의 규모를 살펴봄으로써 사원 제지수공업의 생산력과 기술력을 가늠해볼 수 있었다.

IV장에서는 고려후기 확대된 사원의 제지수공업이 조선전기의 변화된 환경 속에서 어떤 형태로 제지수공업을 계속하고 있었는지 살펴보았다.

조선은 건국 후 강력한 억불책을 시행하여 사원의 토지와 노비를 몰수하는 한편, 급증하는 종이의 수요에 대비하기 위하여 고려 말 와해된 관영 제지수공업을 복구하고자 하였다. 그 결과 造紙所와 官營紙所로 이루어지는 京外紙匠體制를 확립하였고, 倭楮를 도입하고 官楮田을 운영하는 등 종이 원료의 생산에도 직접 관여하며 원활한 종이의 공급을 위해 노력하였다.

국가 주도의 관영수공업이 운영되는 가운데 사원의 제지수공업이 중단된 것은 아니었다. 먼저 국가는 수공업 관청의 정비 과정에서 사원의 뛰어난 제지 기술을 활용하고자 사원 인력을 官工匠으로 충원하였다. 또한 관영 제지수공업 체제가 완비된 후에도 종이 원료인 닥과 인력의 부족으로 종이의 수급은 원활하지 않아 대규모의 서적 간행이나 인쇄사업에 승려들을 동원하였으며, 사원 자체를 제지수공업장으로 활용하기도 하였다.

한편 『목재일기』를 통해 조선전기 사원의 제지수공업 실태를 파악할 수 있었다. 『목재일기』에는 안봉사의 승려들이 종이와 닥을 官에 공납하거나 관영지소에 동원되어 종이를 만드는 기록이 다수 보이는데, 일기를 통해 국가가 공물 부과와 노동력 동원 등의 방법으로 사원의 제지능력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었다.

사원의 제지전통은 오래전부터 이어져왔다. 신라 경덕왕대에 간행된 『大方廣佛華嚴經』序에는 한 승려가 寫經紙를 얻기 위해 향수를 뿌리며 닳나무를 키웠다는 기록이 전한다. 고려시대 사원의 제지실태에 대해서는 기록이 부족하지만 고려 초부터 전국에 분포한 사원들이 판각능력을 보유하고 스스로 경전을 간행하였던 사실이나, 대규모의 국가적 사업이었던 대장경의 조성 및 印經작업이 사원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던 사실을 통해 사원 제지수공업의 기술력과 생산력을 엿볼 수 있다. 사원에서 이루어진 빈번한 간행사업은 사원 자체 내의 제지수공업이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었다.

고려후기 수공업적 기능과 규모를 확대하고 활발히 종이를 생산하던 사원은 조선의 건국과 함께 새로운 변화의 시기를 맞게 되었다. 건국 초 태종은 국가의 체제를 정비하는 과정에서 고려 말 그 수가 확대된 사원들을 대대적으로 정리하여 242寺만을 남겨 두었다. 이후 세종은 다시 36寺로 사원을 통합하였는데, 이것은 인근 小寺를 末寺의 형태로 흡수한 것으로 명종 연간에 사원수는 다시 395寺로 증가하기도 하였다. 이와 같은 통폐합 과정에서 국가는 사원의 토지와 노비를 몰수하여 국가의 재정과 인력으로 활용하였다. 한편 유교를 통치이념으로 삼고 억불책을 단행하면서도 국가가 공인사찰들을 남겨놓은 것은 불교가 여전히 종교적인 이념으로 숭신되고 있었기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국가의 운영에 도움이 될 만한 사원들을 존속시킴으로써 사원이 가진 다양한 기술력을 활용하기 위해서였기도 할 것이다. 이와 같은 사정은 선초 궁궐의 조성이나 도로 건설 등 국가적인 토목공사와 기와·兵船의 제작 등 수공업적 기술이 필요한 役事に 승려들이 자주 동원되었던 사실에서 확인된다.

사원의 제지수공업에 있어서도 상황은 마찬가지였다. 국가는 관영 제지수공업 체제를 복구하고 급증하는 종이 수요에 대비하고자 하였지만 그 생산량은 관수용으로조차 부족한 상황이었다. 또한 조선시대에는 종이가 생활의 필수품으로 여겨질 만큼 賻儀用이나 창호지·우산·의복의 제작 등 다용도로 활용되어 민간의 수요도 크게 증가하였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사원은 종이를 생산하여 국가에 필요한 종이를 공납하였고, 인근 지소에 동원되어 관수용 종이를 만들기도 하였다. 또 사대부의 요청으로 종이를 만들고 있었음이 『목재일기』의 기록을 통해서 확인된다. 조선전기 사원의 제지능력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는 없지만, 아직 민영

제지수공업이 발달하지 않은 상황에서 국가와 민간의 급증한 종이 수요를 감안하면 그 생산량이 적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조선전기 사원의 제지 활동은 자체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자율적으로 이루어 졌다기보다는, 국가와 민간의 급증하는 종이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관영수공업의 조력자로서의 역할을 하였다고 보는 것이 더 적절할 것이라 생각된다. 고려시기에 비해 그 규모가 많이 축소되기는 하였겠지만 이전 시기에 이은 조선전기의 단절됨이 없는 사원의 제지활동은 전란 이후 대대적인 紙役 부과로 이어져 국가의 종이 수요를 감당하게 되었다.

그러므로 조선전기 『경국대전』 체제가 완성될 때까지 사원의 제지활동은 고려의 전통을 잘 계승하면서도 국가가 필요로 하는 수요를 감당하였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 또한 사원의 수공업 활동이 조선시대 공장체제를 완성하는 데 밑바탕이 되었다는 점과 수공업의 확대와 발전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다는 것에 보다 큰 역사적 의미를 갖는다고 하겠다.

## 참고문헌

### 1. 史料

『高麗史』 『高麗史節要』 『西河集』 『牧隱詩藁』 『朝鮮王朝實錄』 『經國大典』  
『東文選』 『新增東國輿地勝覽』 『默齋日記』

### 2. 단행본

국립중앙박물관, 『사경변상도의 세계, 부처 그리고 마음』, (주)지엔에이커뮤니케이션, 2007.

\_\_\_\_\_, 『발원, 간절한 바람을 담다』, (주)지엔에이커뮤니케이션, 2015.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14, 2003.

\_\_\_\_\_, 『한국사』19, 2003.

김갑주, 『조선시대 사원경제사 연구』, 경인문화사, 2007.

김윤곤, 『고려대장경의 새로운 이해』, 서울 불교시대사, 2002.

남권희, 『고려시대 기록문화 연구』, 청주고인쇄박물관, 2002.

민족문화추진회, 『한국문집총간 해제 1』, 민족문화추진회, 1990.

박용운, 『고려시대사』, 일지사, 2008.

안병우, 『고려전기의 재정구조』, 서울대출판부, 2002.

윤용출, 『조선후기의 요역제와 고용노동』, 서울대출판부, 1998.

이병희, 『고려시기 사원경제 연구』, 경인문화사, 2009.

이승철, 『(우리가 정말 알아야 할)우리 한지』, 현암사, 2012.

이정신, 『고려시대의 특수 행정구역 소 연구』, 혜안, 2013.

이정희, 『고려시대 세제의 연구』, 국학자료원, 2000.

재단법인 민족문화추진회, 『한국문집총간 해제1』, 원장문화사, 1981.

채상식, 『고려후기불교사연구』, 일조각, 1996.

천혜봉, 『한국전적인쇄사』, 범우사, 1990,

최연주, 『고려대장경 연구』, 경인문화사, 2011.

최영호, 『강화경판 고려대장경의 판각사업 연구』, 경인문화사, 2008.

\_\_\_\_\_, 『강화경판 고려대장경의 판각사업 연구 : 경전의 구성체제와 참여자의

출신성분』, 경인문화사, 2008.

한기문, 『고려사원의 구조와 기능』, 민족사, 1998.

허홍식 편저, 『한국금석전문(中世 上·下)』, 아세아문화사, 1984.

홍희유, 『조선중세 수공업사 연구』, 지양사, 1989.

### 3. 논문

고영성, 「여말선초 승려의 경제활동에 관한 연구」, 원광대 석사학위논문, 1988.

김난옥, 「고려시대 工匠의 신분」, 『사학연구』 58:59, 한국사학회, 1999.

김동철, 「수공업과 염업」, 『한국사』 19, 국사편찬위원회, 2003.

김문경, 「읍지로 본 조선후기 사찰 제지의 실상: 삼남지방을 중심으로」, 동국대 석사학위논문, 2003.

김영태, 「조선전기의 도승 및 부역승 문제」, 『불교학보』 32, 동국대 불교문화연구회, 1995.

김삼기, 「15-16세기 관영제지수공업 연구」, 공주대 석사학위 논문, 1998.

\_\_\_\_\_, 「朝鮮前期 종이 貢納制 研究」, 『역사민속학』 15, 한국역사민속학회, 2002.

\_\_\_\_\_, 「조선시기 제지기술의 도입과 지료(紙料) 가공기술」, 『생활문화연구』 4, 국립민속박물관, 2002.

김순규, 「조선후기 사찰紙役의 변화」, 『청람사학』 3, 한국교원대 청람사학회, 2000.

김인규, 「조선 명종대 성주지역 사찰의 제지활동」, 『한국전통문화연구』 1, 한국전통문화대 한국전통문화연구소, 2003

김현영, 「고려시기 소에 대한 재검토」, 『한국사론』 15, 서울대 국사학과, 1986.

김형수, 「고려시대 인물문집의 현황과 문집의 편찬 과정」, 『한국중세사연구』 40, 한국중세사학회, 2014.

김형우, 「고려전기 국가적 불교행사의 전개양상」, 『가산이지관스님 화갑기념논총』(上), 한국불교문화사상사, 1992.

나광동, 「소에 관한 일연구-명학소를 중심으로」, 강원대 석사학위논문, 1995.

남권희, 「12세기 간행의 불교자료에 관한 연구」, 『서지학 연구』 17, 한국서지학회, 1999.

남재우, 「대장경, 천년의 이야기」, 『경남발전』 116, 경남발전연구원, 2011.

- 박도식, 「16세기 國家財政과 貢納制 운영」, 『國史館論叢』 80, 국사편찬위원회, 1998.
- 박문열, 「고려시대 서적정책에 관한 연구」, 중앙대 박사학위논문, 1992.
- \_\_\_\_\_, 「고려시대의 서적수입에 관한 연구」, 『인문과학논집』 11, 청주대 인문과학연구소, 1992.
- \_\_\_\_\_, 「고려시대 서적의 반포와 금훼에 관한 연구」, 『인문과학논집』 12, 청주대 인문과학연구소, 1993.
- \_\_\_\_\_, 「고려시대의 과학서적정책에 관한 연구」, 『창립10주년 기념논문집』 1993, 청주대 대학원 도서관학과, 1993.
- \_\_\_\_\_, 「麗末鮮初의 書籍의 刊行에 관한 研究」, 『인문과학논집』 18, 청주대 인문과학연구소, 1998.
- 박정미, 「16세기 星州 李氏 影堂寺刹 安峯寺의 규모와 운영」, 『태동고전연구』 31, 한림대 태동고전연구소, 2017.
- 박준호, 「조선 전기 紙料와 配合紙 생산」, 『東洋學』 66, 단국대 동양학연구원, 2017.
- 배명애, 「조선전기의 승려 통제책과 僧役」, 부산대 석사학위논문, 2005.
- 서성호, 「고려전기 수공업연구」, 서울대 박사학위논문, 1997.
- \_\_\_\_\_, 「고려전기 지배체제와 工匠」, 『역사와 세계』 30, 효원사학회, 2006.
- 송성안, 「고려전기 자기수공업에 관한 연구-자기소를 중심으로」, 영남대 석사학위논문, 1994.
- \_\_\_\_\_, 「고려시기 관청수공업의 존재양상과 사원수공업」, 『경대사론』 11, 경남대사학회, 1999.
- \_\_\_\_\_, 「고려후기의 사원수공업 연구」, 영남대 박사학위논문, 1999.
- \_\_\_\_\_, 「고려후기 사원수공업의 성격」, 『경대사론』12-13, 경남대 사학회, 2002.
- \_\_\_\_\_, 「고려시대 사원 제지수공업과 그 운영」, 『석당논총』 65, 동아대부설 석당전통문화연구원, 2016.
- 송일기, 「고려 재조대장경의 조성과정 연구」, 『서지학연구』 49, 서지학회, 2011.
- 오용섭, 「倭楮의 傳來와 抄造」, 『서지학연구』 10, 서지학회, 1994.
- 육영정, 「여말선초 문인들의 개인문집 간행」, 『포은학연구』 19, 포은학회, 2017.
- 윤봉택, 「13세기 제주 묘련사판 <金光明經文句>의 사실조명」, 『탐라문화』 29,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2006.
- 이병희, 「고려후기 사원경제 연구」, 서울대 박사학위논문, 1992.



- 이성임, 「16세기 지방 군현의 貢物分定과 수취」, 『역사와 현실』 72, 한국역사연구회, 2009.
- \_\_\_\_\_, 「16세기 지방군현의 立役體制와 승려의 賦役 -경상도 성주의 안봉사를 중심으로」, 『한국불교사연구』 8, 한국불교사연구소, 2015.
- 이시찬, 「宋元시기 고려의 서적 수입과 그 역사적 의미」, 『동방한문학』 39, 동방한문학회, 2009.
- 이정신, 「고려시대 종이의 생산실태와 지소」, 『한국사학보』 5, 고려사학회, 1998.
- \_\_\_\_\_, 「고려시대 차 생산과 차소」, 『한국중세사연구』 6, 한국중세사학회, 1999.
- 이혜옥, 「조선전기 수공업체제의 정비」, 『역사와 현실』 33, 한국역사연구회, 1999.
- 전영준, 「여말선초 도첩제의 운용과 승도의 성격」, 『백산학보』 70, 백산학회, 2004.
- \_\_\_\_\_, 「고려시대 供役僧 연구」, 동국대 박사학위논문, 2005.
- \_\_\_\_\_, 「고려시대 사원불사와 조력자」, 『역사민속학』 20, 민속원, 2005.
- \_\_\_\_\_, 「고려후기 공역승과 사원의 조영조직」, 『한국사학보』 20, 고려사학회, 2005.
- \_\_\_\_\_, 「고려 江都時代 사원의 기능과 역할」, 『역사민속학』 32, 한국역사민속학회, 2010.
- \_\_\_\_\_, 「조선전기 관찬지리지로 본 楮紙産地의 변화와 寺刹 製紙」, 『지방사와 지방문화』 14, 역사문화학회, 2011.
- \_\_\_\_\_, 「조선 전기 제주지역의 제지수공업 존재 확인을 위한 試論」, 『인문학연구』 12, 제주대 인문과학연구소, 2012.
- \_\_\_\_\_, 「龍潭寺紙役變通節目'으로 본 안동지역의 寺刹 製紙」, 『역사민속학』 42, 한국역사민속학회, 2013.
- 전혜인, 「고려시대 사원의 서적간행과 그 기반」, 한국교원대 석사학위논문, 2016.
- 정선화, 「전통한지의 제조 기술 및 우수성에 관한 논고」, 『문화재』 48, 국립문화재연구소, 2015.
- 최양임, 「조선시대 한지 제조에 대한 고찰」, 원광대 석사학위논문, 2002.
- 최연주, 「12.3세기 典籍 간행의 유형과 그 성격」, 『고고역사학지』 17·18, 동아대학교 박물관, 2002.
- \_\_\_\_\_, 「고려후기 경상도 지방의 서적 간행 체계와 운영 형태」, 『석당논총』 45,

- 동아대 석당학술원, 2009.
- \_\_\_\_\_, 「조선시대 『고려대장경』의 印經과 해인사」, 『동아시아불교문화』 10, 동아시아불교문화학회, 2012.
- 최영호, 「고려시대 사원수공업의 발전 기반과 그 운영」, 『국사관논총』 95, 국사편찬위원회, 2001.
- \_\_\_\_\_, 「강화경판 고려대장경의 판각공간과 해인사의 역할」, 『문물연구』 21, 동아시아문물연구학술재단, 2012.
- 최태호, 「한지 제조기술의 독창성」, 『2016 한-이탈리아 한지 학술 심포지엄 자료집』, 국립문화재연구소외, 2016.
- 한기문, 「고려시대 사원의 운영기반과 원당의 존재양상」, 경북대 박사학위논문, 1994.
- \_\_\_\_\_, 「고려시대 사원내의 관리조직과 소속승의 구성」, 『한국중세사연구』 2, 한국중세사학회, 1995.
- \_\_\_\_\_, 「고려시대 사원의 출판 인쇄 배경과 성격」, 『석당논총』 61, 동아대 석당학술원, 2015.
- 한정수, 「조선전기 제지수공업의 생산체제」, 『역사와 현실』 33, 한국역사연구회, 1999.